



2011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201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인 쇄 2011년 6월

발 행 2011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7,500원

기획디자인·인쇄 두일디자인

전화 2285-0936

ISBN 978-89-8479-600-3 9334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북한인권백서

2011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2011

김 국 신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 순 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홍 우 택 (통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국제사회는 북한이 1995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공개 요청한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핵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된 장마당마저 통제하여 빈곤의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11월 30일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북한당국은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쌀과 생필품 가격마저 폭등하여 심한 생활난을 겪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북한은 9월 28일 당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그 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여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전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하여 남북관계는 탈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남북한 긴장을 조성하여 이를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유엔총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해 ‘체제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인간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3대 세습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자가 지속적인

로 발생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2011년 5월 현재 2만 1천4백 명을 넘어 섰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 및 도발적 행태가 잠복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개방화를 유도하며 이와 함께 인권개선을 촉구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북한당국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는데 밑받침이 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면접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1996년부터 매년 국·영문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2011 북한인권백서』는 실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와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비교·검증하여 작성되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백서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1년 6월

통일연구원장 서재진

목차

요약	10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37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38
2. 북한의 인권개념	44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48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7
1. 생명권	58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86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34
4. 평등권	167
5. 자유권	190
6. 종교의 자유	235
7. 참정권	257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263
1. 식량권	264
2. 사회보장권	274
3. 근로권	288
4. 직업선택의 자유	292
IV. 소수자 인권 실태	301
1. 여성권	302
2. 아동권	322
3. 장애인	342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355
1. 납북억류자 실태	356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77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382
2010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416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423
부록 2. 최근 5년간 공개처형된 주요인물	424

표·그림 목차

〈표 II-1〉 2009년 개정 북한 형법의 사형 구성 요건	59
〈표 II-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60
〈표 II-3〉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공개처형 사례	78
〈표 II-4〉 북한의 구금형태	90
〈표 II-5〉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91
〈표 II-6〉 해체된 수용소	120
〈표 II-7〉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125
〈표 II-8〉 북한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164
〈표 II-9〉 주민성분 조사사업 및 주민통제 조치	170
〈표 II-10〉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172
〈표 II-11〉 성분 분류표	173
〈표 II-12〉 복잡군중 분류표	173
〈표 II-13〉 해외여행 기각 실태	202
〈표 II-14〉 북한의 종교 실태	238
〈표 III-1〉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266
〈표 IV-1〉 연령별 장애아동	343
〈표 V-1〉 전쟁시기 납북자 규모	357
〈표 V-2〉 전시 납북자 연령분포	358
〈표 V-3〉 납북 및 억류자 현황	363
〈표 V-4〉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363
〈표 V-5〉 귀환 납북자 현황	364
〈표 V-6〉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368
〈표 V-7〉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371
〈표 V-8〉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375
〈표 V-9〉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376
〈표 V-10〉 국군포로 현황	377
〈표 V-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378
〈표 V-12〉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 본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402
〈표 V-13〉 탈북자 처벌 사례	407
〈표 V-14〉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 강제추방 사례	410
〈표 V-15〉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411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령	65
〈그림 II-2〉 정치범 수용소 위치	119
〈그림 II-3〉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122
〈그림 V-1〉 납북자 사진	367
〈그림 V-2〉 납북자 사진	367

요약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체제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체주의적 병영국가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 정권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당·국가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북한경제가 만성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잘못된 자원 배분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체제위기 상황에서 핵개발을 통해 정권 안보를 추구해 온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대외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해 쌀 가격 등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이 남한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2010년 9월 28일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그 후 북한은 11월 23일 다시 연평도를 포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안보태세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함으로써 북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불만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은 부자세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은 기존 형법상의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 외에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였다. 이는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시효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한편,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였는데 동 부칙은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는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을 통해 사형을 확대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개정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고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이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처형이 늘었거나 공개처형을 실시하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의하면 다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개정 및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고문이나 강압적인 방법의 진술 유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과 강압적 심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집행 일꾼 양성 기관들은 강압적 진술과 진술 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찰기관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류장, 집결

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 내 각종 구금시설 및 교정시설에서의 구타,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 형법상 노동단련형은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우도 많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구타, 고문 및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구금시설 내의 열악한 식사와 영양상태 및 의료 실태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내에는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15만~20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시 반국가범죄의 하나인 파괴암해죄에 대해 사형의 부과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고,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만을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바꿔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범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인권 측면에서는 후퇴로 평가된다. 2005년 이후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기도, 남한 녹화물 유통 등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이는 북한이 2004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정보유입 차단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개정형법에서도 외부정보유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은 2004년 5월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판절차를 보완하고, 2005년 7월과 2006년 10월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지만 형사재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제상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사 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형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반면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북한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북한은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공개재판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개처형이라고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재판절차가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공개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 인민참심원의 참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북한주민들도 상당수 있으며, 판결은 현지공개재판 이전에 다 내려져 있고 현지에서는 단지 선포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개재판은 그 자체로 비인권적 절차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개재판에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변호를 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오히려 재판당사자의 죄를 더 강조하거나 폭로하기도 한다. 현지공개재판의 빈도에 대한 증언은 엇갈린다. 2001년 이후에 현지공개재판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증언이 있는 반면 2007년 9월 말경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충소리를 울려야겠다는 내용의 특수기밀

문서를 내려보낸 이후 공개처형이 늘어난 것 같다는 증언도 있다.

상소나 신소가 더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북한에서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는 등 상소자와 신소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헌법과 변호사법에서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진행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써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해임, 강직, 무보수노동, 벌금 등의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핸드폰 사용, 녹화물 유통, 장마당 단속 등과 관련하여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4. 평등권

북한 헌법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대보다는 경제력이 중요하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분이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언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출신성분에 따른 입당이나 간부등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히 심하지만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승진에 있어 차별은 심하지 않다는 증언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입당이나 간부등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히 심한 반면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및 승진에 있어 북한주민들 간에 평등이 구현되고 있다기보다는 경제력과 뇌물이 우선시되는 사회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도강)행위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 같은 전과(前科)행위,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월남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하는 차별도 자행되고 있으며,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주민과 귀국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이나 탈북 후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이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도 심하며,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남자 가족들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며 이밖에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당이나 대학진학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귀국자(북송재일교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입당과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귀국자들은 당간부, 행정간부를 비롯하여 간부에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행정간부는 될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 화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당 외에 별다른 법제도적인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교들의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5. 자유권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은 통행증 없이 무단으로 여행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요인이거나 내부 동요요인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스민 혁명’이 북한에서도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당국은 이동의 자유를 더욱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 이동에 대한 통제도 약화되고 있다. 여행증 발급은 본래 무료이지만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뇌물로 바친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여행증명서가 공공연히 매매되고 있다. 아울러 여행증의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되면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 이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열차 이외에는 마땅한 공공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돈벌이 수단으로써 기관 소속의 트럭이나 자동차가 이용된다. 이러한 차는 일명 ‘씨비차(씨비스차의 줄임말)’라고 하며, 영업용으로 공인된 차가 아니라 각 직장 단위에 소속된 차량들이다.

여행객들은 이동 도중의 신분 단속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숙박검열도 받게 된다. 숙박검열은 군 보안원들이 대기숙박(민박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민증 혹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숙박등록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불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해진다.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 없이 주민이 자

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민이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거주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가 추방지역이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들이 발생하면서 강제추방의 사유도 복잡해지고 있다.

탈북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중에 남한에 간 것이 발각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추방하기도 한다. 북한은 CD 유통 및 시청행위, 핸드폰 사용 등 정보유통에 대해서도 강제추방을 실시하고 있고, 밀수,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다. 물론 이산가족 찾기, 도강 주선 행위 등 남한과 연계된 일탈행위도 강제추방의 요인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불법행위, 종교행위 등에 대해서도 종종 강제추방을 한다고 증언한다.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불가능하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가장 무서운 검열단은 '보위부111'이라는 조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밀리에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몰래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남한

의 드라마와 뉴스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만 있으면 전화 가설도 가능하지만 정보 유통 통제 차원에서 도청이 이루어진다. 2001년부터는 핸드폰 보급이 시작되었고, 오라스콤텔레콤의 2010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북한주민은 2010년 말 현재 약 300,000명이다. 원칙적으로 중국 핸드폰 사용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교화소에 가지만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보위부원이나 국경경비대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이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 통화자들을 봐주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4년 형법 개정시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제193조)와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94조)를 신설하여,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롬 등을 허가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한 행위와 이러한 매체를 여러번 시청, 청취 또는 매체상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대, 교양소, 교화소 등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고 있다.

‘109소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탈북자들은 남한의 CD를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는 분주소장이나 보위부 사람들과 함께 한국 비디오를 본다는 증언도 있다.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써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한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

되지 않는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모든 주민들이 직장을 포함한 각종 조직에 속해야 하고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 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조직생활에 자주 빠지는 경우 추궁을 받고 심하면 지방으로 추방되는 등 조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다만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돈을 주고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경우나 전화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오는 편지는 철저히 검열되고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상위조직부터 하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생활총화는 주 1회 정도 실시되며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형식적으로 생활총화는 하지만 상호비판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에 더 정신을 쏟아붓고 있어서 더욱 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며 상호비판 같은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15~25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인민반장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인민반장은 주민 사상동향이나 가정 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감시는 인민반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인민반장은 보위부와 보안원의 스파이(spy)인 것이다.

6. 종교의 자유

북한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북한은 종교를 미신으로 마약과 같다고 교육하여 왔다. 종교활동이 발각되면 종교인은 관리소를 가게 된다.

북한에서 종교가 성행할 수 없는 이유는 김일성의 신격화외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10대원칙)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어떤 이탈주민은 ‘10대원칙’이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다고 주장한다. 다만,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10대원칙을 어기지는 않지만 크게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개정, 종교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 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중앙에 종교단체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어느 집에 가면 짐을 잘 봐준다는 소문이 도는 등 북한사회에

서 미신행위가 성행·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간부들은 직접 점을 보지 않지만 간부의 부인들이 가서 점을 보고 이야기하여 준다고 한다.

7. 참정권

북한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은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 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된다. 따라서 투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만일 선거를 거부할 경우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주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도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

북한당국은 투표율을 높여 당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로 하거나 질병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을 위하여 이동투표 함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는 항상 유권자 99.9%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으로 나타난다.

〈종합 평가〉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상황은 2010년에도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 시기에 형법을 개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체제보위 및 외부정보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정되었다.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의 2009년 형법 개정은 2010년 9월 공식 등장한 김정은 후계체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당국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질서위반자들에 대한 공개처형과 현지공개재판, 노동단련형과 노동교화형 등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가 전반적으로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2000년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영향을 미쳐 공개처형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2009년과 2010년 이후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고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및 체제보위를 강화한 조치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외부정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녹화물 유통, 핸드폰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 무보수노동이나 벌금 등의 행정처벌 또는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 등의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셋째,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시설 및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타, 고문 및 가혹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구금 및 교정시설 내에서의 인권실태는 북한의 경제사정, 의료 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과 의료 실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금 및 교정시설의 열악한 영양상태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

첫째, 형사재판절차에 있어 북한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 또는 예심기간이 준수되는 사례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은 재판 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판을 거쳐 부과된다는 증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소자 또는 피심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었다는 증언도 있다. 상소나 신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도 증언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형사재판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변호사도 형식적인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소 또는 신소를 하는 경우 일종의 패שמ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례들만 가지고 북한의 법치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일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북한주민들의 법규정 준수 의식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북한이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 출신성분에 따르는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입당이나 간부등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출신성분이 중요하지만 그 외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승진, 결혼 등에 있어 출신성분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평등권이 구현되고 있다기보다는 뇌물이 우선시되고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해 있는 사회현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자유권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은 여전히 수령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만일 주민들이나 관료들이 당국의 허가없이 여행, 이주, 집회, 출판 등을 하였을 때 매우 가혹한 처벌이 가해진다. 다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하위관료들의 부패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나마 여행, 통신, 이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목할 것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의 거래가 증대되고 이를 계기로 중국 휴대폰 사용을 통한 불법적인 외부정보유입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발각될 경우 처벌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남한의 CD를 통해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 내로 유입되어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물론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

보(북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 소식 등) 유입도 증대되고 있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봉쇄되고 있다. 주민들도 극히 일부의 평양시민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존재 자체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은 허용되고 있지만 철저한 통제하의 선거이고 주민들은 감시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다. 이러한 행태가 단기간 내에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1990년대 이래 지속된 북한의 식량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생산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기근현상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근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양호한 기상, 그리고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국내생산량은 여전히 정상적인 수요량의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말에 실시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또다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의 식량위기 내지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농업체제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석탄생산의 감소와 과거 중국과 구소련 그리고 동구권에서 제공되던 에너지 지원의 중단은 농업생산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을 국가로부터 배급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1996년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 전면적인 배

급중단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공식 배급망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며, 많은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시장통제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0년 2월 초 부분적으로 시장거래를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에서 지원하는 식량의 상당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 주민은 UN기구에서 보낸 소고기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배급받는 장면을 UN기구가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은 다시 배급소(상점)에 고기를 바쳤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외국에서 지원하는 쌀은 일반 주민에게 가지 않고 대부분이 군부로 흘러들어 가며, 그 중 일부분이 장마당으로 유출된다고 한다.

2. 사회보장권

북한 헌법은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정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는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경제난으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제도와 실제운영 간의 괴리는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공식적으

로는 기존의 제도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7·1조치로 인해 복지 시스템의 운영원리와 복지급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7·1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식·주 공급이 포기되다시피 되어버렸으며, 국가사회 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일반 개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국가사회 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근로권

북한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회주의로 동법 제2장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해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장사에 나서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개인노동 현상을 없애고 집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단위 등에 출근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노동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4. 직업선택의 자유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능력은 부차적이다. 당의 직장배치에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 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일단 직장에 배치된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조동)도 능력보다는 성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환송행사도 크게 열어 축하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라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배치조차도 최근 식량난으로 배급이 보장되지 않고 부패현상이 만연한 까닭에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예전에는 제대군인들을 탄광, 광산 등지에 몇백 명씩 배치하였지만 이런 곳에 배치하면 많이 달아나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자기집 근처나 고향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직장배치의 또 다른 일탈행위는 직장배치와 직장이동을 위해 뇌물이 오가는 것이다. 뇌물 배치의 예로는 전공과 무관하게 안면관계나 뇌물수수에 따라 외화벌이

를 할 수 있는 무역기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안면배치, 뇌물배치와 같은 간부사업 때문에 북한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IV.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북한 헌법이나 제도가 표방하는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고정된 성역할 분담은 거의 제거되었으나 관습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2. 아동권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등 경제난으로 인해 최근에도 대다수의 북한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마약(얼음)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하였다(제61항).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꽃제비’ 아동들도 적지 않다.

북한 청소년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실천의 결합 원칙 구현, 노동애 호정신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법제화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그와 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된다. 아동권위원회는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헌법상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북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일부로써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동임을 지적하였다(제59항).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 이후로는 보급은 물론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다.

3. 장애인

2009년 북한당국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5년에 수행된 선별조사에 따르면 3,639명의 아동들이 기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2,176명은 소년들이고 1,463명은 소녀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들이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장애인들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장애인 차별대우는 다음의 두 가지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난쟁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정관수술의 시행과 격리시설의 운영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북한당국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54개조)’을 채택하였으며, 이로써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와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모색,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아동권협약 제2조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이 실제에 있어 완전하게 존중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19항).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010년 3월 2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2월 13일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 장관 등 정부위원(6명)과 전시납북자가족(3명), 민간위원(6

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4년간 전국 시군구단위에서 남북피해 신청을 접수하여 정부차원에서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어 6·25전쟁 납북억류자 가족의 5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최근 탈북하여 귀환한 8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517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11월 출범한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존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길용호 선원 14명(1966.01.22)과 남풍호 선원 6명(1967.12.21), 파월장병 2명, 무동력선 3명(1967.08.05), 육군 2사단 4명(1962.07.14), 대한호 6명(1968.01.11), 안흥호(1967.06.04), 진북호(1992.08.27), 덕성호(1968.07.12), 육군제3정비창(1967.10.12), 오대양 61호(1972.12.28) 각 1명을 포함 총 40명이 남북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전후 납북자 11명의 생사확인이 북측에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4만 1,971명이며, 이 중 유가족 신고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2만 2,562명, 이들을 제외한 1만 9,409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기준 국군포로 본인 80명, 가족이 211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2~18차 남북적십자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126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9명 생존확인, 14명 사망확인, 93명 확인불가, 17명 상봉이 성사되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관련 26가족(남북 총 119명)이 상봉에 참여하였다.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006년 이후 탈북자 체류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의 한족 마을 혹은 대도시 지역 체류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존스 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 코트랜드 로빈슨교수는 2009년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여성,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각각 5,688명(최소 3,305~최대 9,109명), 4,737명(최소 2,741~최대 7,599명), 6,913명(최소 3,606~최대 11,063명) 선으로 추정하였다.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 증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이래 국가보위부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2010년에도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과약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 국경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 탈북현상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기존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자들의 주요 한국 입국경로인 중국 윈난성 및 산둥성에 탈북자 체포조를 대거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도된다. 2010년 6월 4일 압록강에서 중국 단둥시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

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방북하여 북한 인민보안부와 ‘경찰물자 기증서’에 서명(2010.08.12)하고 국경지역 범죄 및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6월 자살로 위장하여 탈북한 여성이 강제송환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래 자살을 위장하여 탈북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경경비대에 ‘행불자 수색전담반’이 등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탈북을 도와주는 군인 등 중개인들이 금품을 받고 사후 밀고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국경지역 경비상황 등을 숙지한 후 단독으로 탈북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단속될 위험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소개로 만나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 강제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남성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일부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들은 중국 호구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는 중국 체류과정에서 마련한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등 나름대로 체류방식을 체득하게 되었다. 조선족과 동거하던 탈북여성 중 일부는 조선족 남성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혜택을 받고자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족 동거남성과 중국여권으로 한국 취업비자를 받아 동시에 입국하였다가 정착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 장기 체류자들이 중국 출산 자녀

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내 북한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서 거래되게 된다. 일부에서는 도강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강을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여성들이 국경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소개되는 과정에서 중국 중개인들의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업주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명분하에 착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소지한 돈으로 조사과정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노동단련대 등에서의 생활을 견디내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담당 보위원을 설득하여 국경지역으로 동반이동하여 중국에서 동거하던 남성과 전화연락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련 법일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조사문건을 조작하여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106조)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도에도 인신매매자의 공개처형, 탈북자의 가족을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하여 강제추방하는 등의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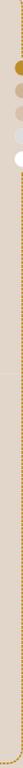
북한인권백서 2011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유린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1945년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한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주요 산업시설 및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사회주의정권은 계획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사회를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조직하였다.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¹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당·국가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² 즉, 북한주민들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받

1. Harold Lasswell, “The Garrison State and Specialists on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January 1941).

2. 전체주의체제는 ① 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 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 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 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 중앙집권적 통제·지시 경제체제 등의 특징을 가진 체제를 의미한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으며 직장배치도 당에서 결정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 중국과 소련의 이념분쟁이 격화되자 김일성 정권은 주체사상을 제시하고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인 당의 지도이념으로 격상시켜 개인 숭배와 부자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주체사상은 그 후 점차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4년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하여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 모순으로 인해 성장이 거의 중단되었다. 이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을 격감하고 하루에 두끼 먹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선군정치로 불리는 새로운 군사주의적 통치 방식을 내세웠다. 선군사상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군대가 정치·경제·사상·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면 인민들의 창조적 활동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체사상을 보완한 것이다.³ 선군정치는 북한의 체제위기 원인을 제국주의 침략정책 탓으로 돌리며 국가재정을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북한경제가 만성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잘못된 자원 배분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전락하였다. *Foreign Policy*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3.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 83.

을 올해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 북한을 ‘실패한 국가’ 19위로 선정하였다.⁴

체제위기 상황에서 핵개발을 통해 정권 안보를 추구해 온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북한은 세습 후계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세습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대외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009년 4월 5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⁵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이 남한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개최된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11월 23일 다시 연평도를 포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안보태세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불만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27세 나이에 불과한 김정은의 후계 세습을 무리하게 강행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일탈행위를 억압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인민보안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4. *Foreign Policy* (July/August 2010), pp. 76~90.

5. 1874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확대 보강한 것으로서 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2009),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141st meeting, June 12, 2009.

나.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회주의국가들은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보장권을 중시한다는 사회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한편,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가기구를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데 있다.

1990년대 초반 북한경제는 외화난·에너지난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였다.⁶ 북한당국의 계획경제체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1995~1997년 잇따른 수해로 이미 부족하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굶주린 주민들은 북한 각지로 이동하며 생존을 위해 식량을 절취하고 공장 설비를 뜯어다 장마당에 팔아먹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이 아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고,⁷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이 급증하였다. 이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여 유엔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식량난을 완화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분적이지만 시장경제 요소

6. 북한경제는 1990년 -3.7%, 1991년 -5.2%를 기록하였다.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 결과』 (1995.6.19).

7. 통계청은 1996~2000년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3만 6천 명, 출생 손실은 9만 9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2005년 11년간 정상적인 사망률을 넘는 초과 사망은 48만 2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 『1993~2005 북한 인구추계』 (보도자료, 2010.11.22), pp. 12~13.

를 도입한 경제개혁을 모색하였다. 2002년 7월 1일 발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가격 보조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소비품과 중간재 가격을 현실화하였다.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한 7·1조치로 인해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증대하고 상업·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7·1조치는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일부 시장 공간을 허용하여 공식 계획경제 부문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⁸ 2005년 북한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려한 북한당국은 일부 지역에 배급을 재개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식량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배급제는 곧바로 다시 중단되었다.

북한경제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과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대부분 단절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축소되었다. 대외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⁹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해 쌀 가격 등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남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을 대부분 중단하였는데 그 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재발하자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대북 인도지원 사업마저 전면 중단하였다.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단행하고 대남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경제난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8.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p. 164~165.

9.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4월 북한의 치안기구인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승격하여 개편하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등 정보기관 요원들을 중국 각지에 대규모로 파견하여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북한에 송환된 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탈북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양강도 등으로 추방하여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부자세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



북한의 인권개념

가. 집단주의원칙과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인권인식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북한체제는 인권을 계급적 시각을 반영한 집단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2조는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 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조선노동당 규약은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은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계급노선과 인민독재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표현의 자

10.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 (2010.9.28. 당대표자회에서 개정).

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의 자유권은 북한에서 원칙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북한은 인권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를 생존권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주의원칙을 강조한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생존권의 실질적인 의미는 개인의 생존권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북한이라는 집단의 자주적 생존권이다. 북한은 생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즉,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¹¹ 미국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권외교를 제국주의적 개입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북한은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² 따라서 ‘인권은 국권이며 국권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근대적인 주권의 평등원칙을 내세워 소중한 가치로서 지키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념의 실체는 사회주의적인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통치자의 절대 권력에 종속되는 봉건적 논리이다.

11. 리경수,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 『로동신문』, 2010년 10월 7일.

1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2), 『김정일 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53.

나.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인권개념

북한체제의 이념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주적 존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자주성은 개인의 창조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라고 주장하여 개인의 자주성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에 종속시키고 있다.¹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공언하는 주체사상이 제시한 ‘인간중심의 세계관’은 실질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세계관이며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통치이론이다.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로 규정된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은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④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등을 명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1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2.

1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p. 160.

주체사상을 반영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시작하였다.¹⁵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 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를 베풀어 나라 전체가 화목한 대가정을 형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인 봉건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인권개념은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인권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15.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4.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가. 대북 인권압력 강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으로 굶주린 북한주민들이 대량으로 북한을 탈출함으로써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가 국제사회에 크게 노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레짐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2005년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2004년 4월 제6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의 인권협약 이행실태를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에 매년 각각 1번씩 보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태국 출신 비티 문타폰(Vitit Muntarbhorn) 교수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¹⁶ 한편,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2006년 3월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

16. 문타폰은 2010년 6월까지 6년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인도네시아 출신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이 새로 임명되었다.

(Human Rights Council)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4월부터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를 통해 1년에 48개국, 4년간 192개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자국 내 인권상황을 보고하여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2월 7일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대상국이 되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점검받았다.¹⁷ 2010년 3월 1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당시 북한은 지난해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항목 가운데 공개처형 금지, 강제수용소 폐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등 50개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실질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이지 않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2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 개선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10년 11월 18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¹⁸ 유엔총회에서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먼저 북한이 최근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보건·교육·개발 영역에서 인권개선 움직임을 보였으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도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독립적인 사법제도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사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거주·이

17.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에서 진행되는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옵서버로 참여하여 발언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9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 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3), pp. 129~157.

18. UN General Assembly Sixty-fifth session Third Committee, "Draft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C.3/65/L.47 (October 28, 2010).

전의 자유 부재, 탈북 송환자에 대한 가혹한 법집행, 표현·사상·종교의 자유 탄압, 인신매매·매춘·강제낙태,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박해, 노동 단결권 불인정 등 심각하고 조직화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불허하고,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외국인을 강제 납치한 후 이 문제에 관해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북한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의 범세계적인 인권증진 활동은 지역기구, 개별 국가 및 국제비정부기구(NGO)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엔·유럽연합·미국·국제NGO는 세계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권침해국에 대해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공동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1년 6월 북한과 처음 인권대화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자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2005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유럽연합과 대화를 단절하였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2007년 다시 외교적 접촉을 확대하였다.¹⁹ 하지만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럽연합과 북한 관계는 또 다시 냉각되었다. 유럽연합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에 관해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대화를 통해 개방으로 이끈다는 대북정책 기초를 유지

19_ 2007년 10월 제3차 EU-북한 경제워킹숍이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6월 제9차 정치대화 및 2009년 3월 제10차 정치대화가 연속적으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주재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EU-북한," <www.delkor.ec.europa.eu/home/kr_relations/dprkrelations/dprkrelations.html>.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국제NGO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8년 9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²⁰ 2009년 1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인권외교는 자유권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빈곤타파 등 생존권 문제 해결에도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제2차 핵실험 등 도발적 공세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북 인권정책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10년 1월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인권실태가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2010년 3월 발표한 「2009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¹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비정부(NGO)기구들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는 2010년 인권보고서에서 9백만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2차 핵실험 이후 국제지원도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도 2010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롭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감시 및 인권개선을 위한 주창활동(advocacy

20. U.S. House of Representative, H.R. 5834,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September 25, 2008).

21. U.S. Department of State, 2009 Human Right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ww.state.gov/g/drl/rls/hrrpt/2009/eap/135995.htm>.

campaign)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민간단체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NGO들이다. 특히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은 2004년부터 매년 4월 워싱턴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리고 7회째를 맞는 2010년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북한자유연합이 처음으로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한·미 양국의 인권단체들은 4월 25일~5월 1일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전시회·강연회·집회들을 개최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나. 북한의 대응

북한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인권 개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압력을 가하는 상대방의 국제적 위상과 제기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국제인권NGO들의 인권 주창활동은 전적으로 무시하며 이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²² 미국·일본·한국 등 개별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을 대표하는 유럽연합과는 인권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접촉을 단절하는 불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인권회의에 출석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체제위협으로 간주하여 전면 거부하고 있다.

²² 북한은 1991년과 1995년 두 차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방문을 허용하여 감옥 시설을 공개한 바 있으나 그 후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 설립될 당시 북한은 일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결의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³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회원국들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제도를 실시하자 북한은 더 이상 ‘공정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제8조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²⁴ 즉,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압력에 제한적으로 적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10년 11월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유엔이 세계평화와 인권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보편적 목적의 기구라면, 유럽연합은 유럽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그렇지만 평화와 인권보호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입장은 유엔의 보편적 논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기구이다. 북한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개최했음을 지적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였고, 광범위한 대화와 협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

23. “실패한 <인권외교>,” 『로동신문』, 2006년 5월 24일.

24. UN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11 December 2009,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6/PRK/1 (August 27, 2009).

이사회와 총회에서 유럽연합의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들이 채택되어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중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어적’인 태도로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의 인권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단순한 방어적 성격을 넘어 이들 국가의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인권외교’ 개념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들고 나온 침략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⁵ 북한은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인권정책의 전형적인 본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국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북한은 관타나모 미군기지에서 이라크 수감자 인권침해 사례 등을 폭로하며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인권유린 행위로 비난하고 있다.²⁶ 인권문제에 관련하여 북한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도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들추어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대표가 ‘납치문제의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딛 데로 돌려보려는 잔꾀”라고 평가하고 있다.²⁷ 오히려 위안부·강제징용 등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쟁범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외교에 대해 북한은 체제전복 위협으로 간주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2007년까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 정부는 북

25.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593.

26.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범죄행위,” 『로동신문』, 2010년 11월 13일.

27. “파렴치성의 극치,” 『로동신문』, 2010년 10월 6일.

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적극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²⁸ 한국은 2008년 11월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51개국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그 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참여하며 인권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한 데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모략소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²⁹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8.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3), p. 16.

29.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권> 모략소동,” 『로동신문』, 2010년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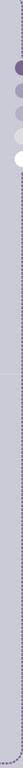
북한인권백서 2011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 



1



생명권

가. 북한의 사형규정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국제인권규약 B규약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2005년 4월 19일과 7월 26일, 2006년 4월 4일과 10월 18일, 2007년 6월 26일과 10월 16일 각각 형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은 기존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

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성요건 역시 기존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였다(제64조). 그리고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형사소추시효기간 규정을 개정하였다(제56조). 사형에 있어 2009년 형법은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반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형법에 규정된 사형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2009년 개정 북한 형법의 사형 구성 요건

국가전복 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테러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파괴암해죄	반국가목적 파괴, 암해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고의적 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한편,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비록 ‘부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고 북한 형법의 규정을 보충·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법체계상 주요 법

령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형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중살인죄 등 제한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 해당 범죄를 확대한 것은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라고 평가된다. 또한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제23조).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관련 규정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국가재산약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1. 박정원, “북한의 최근 형법개정과 평가-2007년 북한형법 부칙 채택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회 제144회 월례발표회, 2009년 8월 24일).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자원밀수죄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비법적인 영업죄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

그런데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²에서 사형은 오직 다섯 가지 범주의 극도로 중대한 형사적 범죄들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하고 있다(보고서 제34항). 이를 볼 때 북한이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제출할 시점에는 2009년 형법이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당국이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의

2. UN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11 December 2009,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6/PRK/1 (August 27, 2009).

제정을 통해 사형을 확대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북한 형법 제6조). 그러나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5일, 중앙당 조직부에서 올해를 인신매매가 없는 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문을 국경연선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이 문건에서 인신매매자를 무조건 엄벌하도록 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인신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했다.³

나. 공개처형

북한에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개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국제사면위원회(AI)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2조). 이에 따라 처형방법으로 보통 총살형이 집행되며 교수형도 집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총살을 통해 처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9발을 발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즉각

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1.30).

처형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 절차는 뒤편에 공화국 휘장을 걸어놓고 검찰소, 보안서, 보위부, 재판소 등에서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재판한다. 재판소에서 죄목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한다고 한다.⁴

이러한 공개처형은 먼저 북한 국내 법률을 위반하여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공개처형은 북한 형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이 사실이다. 공개처형의 피해자는 북한 형법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형당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따른 사회이탈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여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기존 형법의 5가지 조항 이외에 사형이 가능한 일반범죄의 조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확대함으로써 공개처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둘째, 사형집행 절차에서도 북한당국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⁵에 따르면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 하에 집행하되(제421조, 제4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제419조). 그리고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3일 안으로 담당 재판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423조). 또한 판결판정집행법에는 사형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기관이 하도록 규정

4.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5.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4년 5월 6일 전면 개정 이후 2005년 7월 27일과 2006년 10월 18일 각각 부분 개정되었다. 이하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6년 규정을 따랐다.

되어 있다(제24조). 공개처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한 1건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시인한 바 있다. 1992년 10월 함흥에서 폭력행위 상습자로 자신의 친조부모 주중은(84)과 최연옥(72)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죄로 주수만에 대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한 경우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시인한 이 처형도 그 지역주민들의 균중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대표단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다. 동 검토시 북한대표단은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흉악범의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한두 건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답변하였다. 공개처형의 사실이 있음을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공론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포고형태로 공개처형을 통해 생명권을 유린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그림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한 포고령에서 외화유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공개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포고령은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가 2009년 12월 28일 포고한 것이다.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령

포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국가의 유일적인 화폐류통질서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법적의무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의 경제적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가의 화폐류통질서를 략복하게 위반하여 사람 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커다란 후과르 미치게 하고있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 를 형클어놓고있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저해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 도를 좀먹는 매우 위험한 해독행위이다.

인민보안성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화폐류통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내에서 외화를 류통시키 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내에서 외화현금을 류통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1)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진행하던 봉사를 일체 중지하고 우리돈으로 봉사하라
비행장, 국제서관을 비롯한 전문대외봉사단위들은 외국인들이 외화를 화폐교환소에서 우리돈으로 바꾸어 쓸 때에만 봉사하라.
 - 2) 국가기관들이 외화로 받아들이던 각종 수수료와 운임, 료금 등을 우리돈으로 받으라.
 - 3) 모든 무역기관함영, 합작단위 포함들은 수입한 상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와 공민들에게 수입상품을 넘겨주어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조장시키는 모리간상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4) 모든 공민들은 외화를 반드시 화폐교환소를 통하여 우리돈과 바꾸어 쓰는 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외화를 가지고 암거래, 지판 장사, 고리대, 사기협잡, 거간, 밀수, 꾀물, 락취 등의 범죄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5)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필요한 외화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보장받으라.
2. 국가가 승인해준 단위들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단위들의 국내수출지표를 모두 없애며 국내 기관, 기 업소, 사회협동단체상호간 비법적인 외화무현금거래를 일체 하지 말라.
3. 해당 은행기관들은 외화와 우리돈의 교환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라.
4.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단속통제하는 감독통제기관과 일군 들의 사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며 국내에서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보면 즉시 법기관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영활동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고 거래한 돈과 물건은 몰수하며 외화로 물건을 팔고사는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간, 꾀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 화를 류통하거나 락취한자,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조장시킨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 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6. 이 포고는 국가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무력 및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 외국인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제 98(2009)년 12월 28일

2009년 개정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⁶ 파괴암해죄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제64조), 불신고죄의 처벌대상으로 반국가범죄 외에 반민족범죄도 추가하였다(제71조).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면서 새로운 처벌유형을 많이 신설하고 처벌도 강화하였다. 명령·결정·지시집행태만죄의 대상에 국방위원회 위원회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결정·지시를 추가하였고(제73조), 무기, 탄약의 파손행위 및 약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75조, 제76조, 제78조). 군수품생산 관련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거나 처벌내용을 세분화하였으며(제80조, 제81조), 국방비밀누설죄에서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제88조).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33조). 또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퇴폐물의 반입 및 유포만을 처벌하던 데서 보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고(제193조), 마약사용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7조). 이 밖에 집단적 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 날조·유포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9조, 제220조, 제222조). 이와 같이 북한이 2009년 4월 이후 미상 시기에 형법을 개정하여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존중 및 보호를 명시하기는 하였지만 형법 개정을 통한 통제 강화에 따라 공개처형,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6.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북한법연구회 제157회 월례발표회, 2010년 9월 16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반체제 행위와 관련된 공개처형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 행위〉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반역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을 결성하여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형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도에 국방위원회 검열을 했는데, 해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증개혐의로 8명을 공개처형했다고 증언. 그 중 30살 정도의 호패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함.⁷
- 북한이탈주민 ○○○은 아는 사람이 스파이 활동 혐의로 2004년도 비사그루빠의 검열 때 적발되어 2005년 1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4월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던 ○○○이 가족의 도강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회령시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연사군에서 군이 당과 보안서를 끼고 개인을 내세워 북한에서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까지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검열이 나와 발각되어 남녀 2명이 수남 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¹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7월 남강회사 사장 41살 ○○○

7. NKHR2009000056 2009-09-22.

8. NKHR2010000010 2010-09-14.

9. NKHR2011000013 2010-06-08.

10.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13 2008-08-19; NKHR2008000027 2008-12-02. 이 사건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유사한 증언은 2009년에도 이어졌다. NKHR2009000011 2009-03-03.

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앙당 검열 이후 원산 신평 경
기장에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¹¹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은 비사그루빠나 국방위원회 검열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일탈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종교 전파행위에 대
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탈북 후
남한사람과 접촉하였을 경우 일부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북한이탈주민
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중재 등 남북한 접촉행위, 도
강증개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정보 유통과 연관된 행위〉

2000년 이후 남한 뼈라, 비디오 판매 등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핸드폰 사용 등 정보 유통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형하는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핸드폰 사용에 대해 반공화국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경지역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왔다. 핸드폰 사
용적발 시 보통 10만 원 정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핸드폰 몰수
또는 추방의 처벌을 해왔다. 많은 경우 핸드폰 몰수와 고액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추방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소식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주민들 사
이에 정보유통이 커지면서 내부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주민들의 핸드폰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1월경 재탈북을 위해 회령에 있
는 북한인 브로커를 찾아갔을 때 그로부터 중국 핸드폰을 이용하

11_ NKHR2009000070 2009-11-18.

였다는 죄목으로 회령시 모처에서 11명이 공개처형된 것을 들었다고 증언.¹²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 때문에 공개처형 되지는 않는다고 증언. 한국과 통화하였다고 모두 처형되지는 않는데 전화기를 통해 국군포로 귀환이나 국가간첩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처형당한다고 함.¹³

그렇지만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모두 처형당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는 통화내용에 따라 다르며, 남한과 통화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어 압수 및 벌금형을 받았는데 통화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증언.¹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어 단련형을 받았지만 자수자로 처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¹⁵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면 교화형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증언.¹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의 경우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면 강제추방 및 무기교화형에 처한다고 증언.¹⁷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과 연락하다 발각되는 경우가 가장 처벌이 심하다고 증언.¹⁸

12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13_ NKHR2008000012 2008-08-14.

14_ NKHR2010000007 2010-03-16.

15_ NKHR2010000007 2010-03-16.

16_ NKHR2010000035 2010-11-09.

17_ NKHR2010000044 2010-11-02.

18_ NKHR2010000045 2010-09-07.

빠라,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1월 32세가량의 남성 피해자가 한국방송을 듣고 한국노래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청진시 라남구역 라남시장 앞마당에서 공개처형 되었다고 증언. 증언자는 청진시 라남시장 인근에서 인민보안부 방송차의 공개처형 고지 및 주민 집결을 독려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함.¹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2월 탈북하였는데, 누님으로부터 중국에서 음란 녹화물을 복사해서 유통시킨 죄로 온성에서 공개 총살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²⁰

전단이나 영상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하였다고 해서 모두 공개처형 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1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교화소 이외에 단련대를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²¹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보통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²² 그러나,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 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퇴폐물 보관행위, 퇴폐행위에 대한 처벌 등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통해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²³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 영상물이 북한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의 기독교 방송과 한민족 방송을 청취하였는데 청취 이후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⁴ 북한당국은 최근 주민 감시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⁵ 이는 김정

19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20_ NKHR2008000027 2008-12-02.

21_ NKHR2010000018 2010-10-05.

22_ NKHR2010000020 2010-06-01.

23_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24_ NKHR2011000022 2010-06-24.

은 후계구도 안정화 차원에서 자본주의 문화 특히 남한의 실상이 북한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

〈정보통신선, 구리 절취, 개인착복행위〉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통신선, 전선 등의 국가기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한다는 증언이 지속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연사군의 ○○○이 통나무가 공공장(서경회사)을 차려 통나무를 중국에 밀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연사군읍 공설운동장에서 2007년 여름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²⁶ 북한이탈주민 ○○○도 동일 인물이 전적지 나무를 베어 팔았다는 죄목으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²⁷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주민 ○○○이 공장기계(발전기)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2007년 10월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²⁸
- 북한이탈주민 ○○○은 동을 밀수하였다는 죄목으로 북한주민 ○○○이 2008년 여름 함경북도 은덕군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²⁹
- 북한이탈주민 ○○○은 레루뭇(철길의 뭇)을 절도한 혐의로 양강

25_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1월 18일 방침으로 비사회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단속조직인 '118상무'를 새로 조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www.rfa.org/korean), "불안한 북, 주민 감시 조직 또 신설" (보도일: 2011년 3월 2일).

26_ NKHR2010000035 2010-11-09.

27_ NKHR2010000035 2010-11-09. 북한이탈주민 ○○○은 동일 인물이 나무를 밀수한 죄목으로 연사군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2009년 6월 들었다고 증언. NKHR2011000003 2010-03-16.

28_ NKHR2010000093 2010-03-30.

29_ NKHR2011000022 2010-06-24.

도 혜산시 금산동에 사는 ○○○이 2009년 1월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³⁰

〈마약 밀수·밀매행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밀수행위가 증가하면서 밀수행위와 빙두 밀매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에서 보듯이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7월 빙두 5kg 판매 혐의로 ○○○이 회령경기장에서 처형당하였다고 증언.³¹
- 북한이탈주민 ○○○은 40kg에 달하는 빙두를 중국에 밀매한 죄목으로 ○○○이 2007년 7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²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9월 회령에서 50세가량의 남자가 마약 밀매 혐의로 총살당했음. “마약 밀수로 잡혔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 보안원 5명이 옷을 벗게 되었는데 법일꾼들이 제대로 켜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공개총살하였다”고 증언.³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12월 25일 함흥 평수 장마당 마흔 다섯 살 미만의 함흥 화학공대 졸업생 남자를 포함한 남자 3명과 청진에서 마약을 중개해준 여성 1명이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³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30일 함흥 회상구역 호랑천

30_NKHR2010000018 2010-10-05.

31_NKHR2009000067 2009-11-12.

32_NKHR2011000016 2010-06-03.

33_NKHR2009000021 2009-04-13.

34_NKHR2009000054 2009-09-17.

에서 91훈련소 외화벌이 기지장 ○○○ 외 6명이 빙두라는 마약을 제조해서 중국에 팔아 왔는데, 보위사령부 검열에서 발각되어 처형당했다고 증언.³⁵

- 북한이탈주민 ○○○은 함흥시 도 검찰과장인 ○○○이 빙두거래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2008년 여름 함흥시 헤산구역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⁶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던 ○○○이 빙두거래를 비롯, 자동차 밀수, 인신매매 등의 죄목으로 2009년 7월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 (예전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⁷

〈소, 염소 등 절도행위〉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소나 염소 등을 절도하다 발각되어 공개처형을 당한 사례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한 공개처형은 다른 사례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기타 절도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2000년 이후 절도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증언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9월 무산군 무산 미강뺨에서 돼지 절도 혐의로 19세가량의 남자가 처형되었다고 증언.³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 도둑질을 하였는데,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³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도에 어떤 남자가 소를 잡아 먹은

35_NKHR2009000016 2009-03-19.

36_NKHR2010000036 2010-11-02.

37_NKHR2010000069 2010-10-26.

38_NKHR2009000042 2009-06-25.

39_NKHR2008000025 2008-11-20.

것이 적발되어 해주 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됐다고 증언.⁴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쌀과 기름을 팔아 밀매했다는 혐의로 본인이 근무한 군단 후방사령부에서 양식과장, 피복과장 등 7명을 공개처형했다고 증언.⁴¹

● 사회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고난의 행군 시기 인육 판매에 대한 증언들이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이러한 증언들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 살인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신매매>

국제사회가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당국은 2000년 이후에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신매매는 점차 조직화·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유선 교도대 경비분대장을 하였던 ○○○이 많은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냈는데, 잡혀온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보냈다고 증언하여 2005년 4월 유선 푸른 다리 아래에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⁴²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회령 장마당에서 동명동에 사는 26살가량의 남자가 인신매매하고 금을 수집했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⁴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3월 혜산에서 21살 남자가 인신매매 죄목으로 처형당하였다고 증언.⁴⁴

40_ NKHR2008000021 2008-09-23.

41_ NKHR2009000017 2009-03-24.

42_ NKHR2008000027 2008-12-02.

43_ NKHR2009000058 2009-09-24.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5월 같은 동네에 사는 26세인 ○○○이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 총살되었다고 증언.⁴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6월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던 120명 정도의 북한주민들이 인신매매하였다는 죄목으로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예전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그들은 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인신매매를 하였다고 함.⁴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7월 청진 수성천에서 인신매매 죄목으로 남자 3명이 처형당하였다고 증언.⁴⁷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여름 양강도 혜산시에 사는 학생 신분의 ○○○이 10명 이상을 인신매매하였다는 죄목으로 혜산시 봉흥동 봉흥중학교 뒷산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⁴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7월 ○○○이 인신매매 죄목으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처형당한 ○○○은 12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8명을 12,000위엔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함.⁴⁹

〈살인〉

폭행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북한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형법에 고의 적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경제난으로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살인죄에 대해 공개처형이 시행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44_ NKHR2009000066 2009-11-11.

45_ NKHR2009000023 2009-04-16.

46_ NKHR2010000069 2010-10-26.

47_ NKHR2009000063 2009-11-03; NKHR2009000064 2009-11-04.

48_ NKHR2010000097 2010-06-15.

49_ NKHR2010000044 2010-11-02.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도 9월경 5군단 뒷산에서 하전사 1명이 배가 고파 개인집에 들어가 강냉이를 훔쳐 나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끼로 살해, 공개총살 당하였다고 증언. 민간인과 달리 가까이서 보게 하고 선군정치라는 김정일의 방침을 어겼다고 총살이 끝난 뒤 침을 뱉으라고 했다고 함.⁵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청진에서 자신에게 시집 온 여자가 데리고 온 4살 아이를 시끄럽다고 죽인 죄로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⁵¹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여름 ○○○이 살인하였다는 죄목으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그의 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⁵²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3월 동거녀를 살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함경북도 무산군 강선구 양어장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⁵³

〈기타 일탈행위〉

도박과 강간에 대한 처벌로 공개처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8월 막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50세가량의 원산 남성이 도박 혐의로 검열에 걸렸는데, 검열관이 막콩에게 약감정을 갖고 있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범케이스로 원산 신흥경기장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증언.⁵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가을 도박을 죄목으로 ○○○이

50_NKHR2009000020 2009-04-07.

51_NKHR2008000023 2008-11-11.

52_NKHR2010000041 2010-10-26.

53_NKHR2010000024 2010-10-19.

54_NKHR2008000025 2008-11-20.

강원도 원산시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모두 90발 사격했으며 전국 외화벌이 사장들을 모아서 총살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하였다고 함.⁵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가을 함경북도 무산군 강변 쓰레기장에서 강간을 죄목으로 총살형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⁵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 살인 및 강간 3회를 죄목으로 당시 43세의 ○○○이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장마당 미강벌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⁵⁷

● 교화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교화소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사리원시의 경우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리원 담배공장 뒤에 7교화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비밀리에 한다.⁵⁸ 특히 도주 행위에 대해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3년 라흥 철도 기업소 노동자 동료 ○○○(51세가람)이 경제사범으로 함경남도 대흥교화소 수감 중 도주하다 총살당하였다고 한다.⁵⁹ 또한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7년 4월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자가 도주하다 총을 맞아 다리를 관통 당했다. 부소장이 “이제부터는 도주하면 무조건 죽인다”고 말하면서 2~3일 안으로 공개총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살리라고 하였는데 출혈이 심해 공개총살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⁶⁰

55_NKHR2010000019 2010-10-12.

56_NKHR2010000011 2010-09-14.

57_NKHR2010000044 2010-11-02.

58_NKHR2009000012 2009-03-05.

59_NKHR2009000045 2009-07-14.

60_NKHR2009000059 2009-09-29.

● 정치범수용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⁶¹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봄 함경북도 회령 공심이라는 곳으로 발갈이를 하러 갔었는데, 회령 제22호 관리소 안에서 어떤 여자가 탈출하기 위해 철조망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는 경비대가 그 여자를 잡아가서 처형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⁶²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봄 평안남도 개천관리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이 도주 기도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개천 관리소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⁶³

〈표 II-3〉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공개처형 사례

시기	장소	내 용	증언
2007.	수남 장마당	북한의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 나무를 중국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남녀 2명 공개처형	NKHR2008000007 2008.7.30
2003.	해산시	이산가족 상봉 중개혐의로 8명 공개처형	NKHR2009000056 2009.9.22
2007.7.	원산 신평 경기장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강회사 사장(41세) 공개처형	NKHR2009000070 2009.11.18
2005.1.	회령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총살	NKHR2010000010 2010.9.14

61_ 북한이탈주민 ○○○,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면접.

62_ NKHR2010000069 2010-10-26.

63_ NKHR2010000045 2010-09-07. 그는 개천교화소라고 하였으나 이는 개천 관리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	장소	내 용	증언
2007.4.	회령시 장마당	가족의 도강을 도운 죄목으로 총살	NKHR2011000013 2010.6.8
2005.1.	청진시 라남시장 앞마당	한국방송을 듣고 한국노래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	2007.2.28
2009.1.	장소 불명	레루뭇(철길의 뭇) 절도 혐의로 총살	NKHR2010000018 2010.10.5
2007.여름	연사군·읍 공설운동장	통나무 가공공장을 차려 통나무를 중국에 밀매한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35 2010.11.9
2007.10.	평남 순천시	공장기계(발전기) 절도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93 2010.3.30
2008.여름	함북 은덕군	동 밀수 죄목으로 총살	NKHR2011000022 2010.6.24
2008.1.30	함흥 회상구역 호랑천	91훈련소 외화별이 기지장 외 6명, 빙두(마약) 제조해 중국에 매매한 혐의로 처형	NKHR2009000016 2009.3.19
2007.9.	함북 회령	마약 밀매 혐의로 총살	NKHR2009000021 2009.4.13
2007.12.25	함남 함흥 평수 장마당	45세 미만의 함흥 화학공대 졸업생 포함한 남자 3명과 여성 1명, 마약 중개혐의로 공개처형	NKHR2009000054 2009.9.17
2007.7.	함북 회령경기장	빙두 5Kg 판매 혐의로 처형	NKHR2009000067 2009.11.12
2007.7	함북 회령시	빙두 40Kg 중국에 밀매한 죄목으로 총살	NKHR2011000016 2010.6.3
2008.여름	함흥시 혜산구역 장마당	빙두거래한 죄목으로 함흥시 도 검찰과장 총살	NKHR2010000036 2010.11.2
2009.7.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	빙두거래, 자동차 밀수 및 인신매매 등의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69 2010.10.26
2005.	황해남도 해주 장마당	소를 잡아먹은 것이 적발되어 공개처형	NKHR2008000021 2008.9.23
2004.9.	함북 무산군 무산 미강뺨	돼지절도 혐의로 처형	NKHR2009000042 2009.6.25
2004.	장소 불명	노동단련대에서 강냉이 도둑질한 수감자 공개처형	NKHR2008000025 2008.11.20

시기	장소	내 용	증언
2007.	장소 불명	쌀, 기름 밀매혐의로 군단 후방사령부 양식과장, 피복과장 등 7명 공개처형	NKHR2009000017 2009.3.24
2005.4.	유선 푸른 다리 밑	중국에서 잡혀온 20여 명이 자신들을 보낸 자라고 증언하여 유선 교도대 경비분대장 공개처형	NKHR2008000027 2008.12.2
2008.5.	장소 불명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 총살	NKHR2009000023 2009.4.16
2006.	함북 회령 정미당	인신매매 및 금 수집 죄목으로 공개처형	NKHR2009000058 2009.9.24
2008.7.	청진 수성천	인신매매 죄목으로 남자 3명 처형	NKHR2009000063 2009.11.3
2008.3.	해산	인신매매 죄목으로 처형	2009.11.11
2009.7.	무산군	인신매매(8명을 12,000 위엔에 매매) 죄목으로 처형	NKHR2009000066 NKHR2010000044 2010.11.2
2008.6.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	8명씩 한 조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죄목으로 약 120명 총살	NKHR2010000069 2010.10.26
2008.여름	해산시 봉흥중학교 뒷산	10명 이상 인신매매했다는 죄목으로 학생 총살	NKHR2010000097 2010.6.15
2008.1.	청진	시집 온 여자가 데리고 온 4살 아이를 시끄럽다고 죽인 죄로 공개처형	NKHR2008000023 2008.11.11
2007.9.	5군단 뒷산	하전사 1명이 개인집에서 강냉이를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끼로 살해한 죄목으로 공개총살	NKHR2009000020 2009.4.7
2010.3.	무산군 강서구 양여장	동거녀 살인하여 총살	NKHR2010000024 2010.10.19
2009.여름	무산군	살인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41 2010.10.26
2007.8.	원산 신흥경기장	50세가량의 남성이 도박혐의로 검열에 걸렸는데 검열관이 이 남성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어서 시범케이스로 공개처형	NKHR2008000025 2008.11.20
2009.가을	무산군 강변 쓰레기장	강간 죄목으로 총살형	NKHR2010000011 2010.9.14

시기	장소	내용	증언
2008.가을	강원도 원산시	도박을 죄목으로 총살. 모두 90발 사격했으며 전국 외화벌이 사장들을 모아 총살하는 광경 목격하게 함	NKHR2010000019 2010.10.12
2009.5.	무산 장마당 미강별	살인 및 강간 3회를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44 2010.11.2
2003.	함남 대흥교회소	경제사범으로 함경남도 대흥교회소에 수감 중이던 라흥 철도 기업소 노동자(51세기랑)가 도주하다 총살당함	NKHR2009000045 2009.7.14
2007.4.	전거리교회소	수감자(남성)가 도주하다 총을 맞아 다리 관통상 입음. 출혈이 심해 공개총살하기 전에 사망	NKHR2009000059 2009.9.29
2006.봄	함경북도 회령 공심	회령 22호 관리소 수감 중인 여성이 도주 기도하다 경비대에 잡힘.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	NKHR2010000069 2010.10.26
2006.봄	평남 개천관리소	도주 기도 죄목으로 개천관리소 수감자 총살	NKHR2010000045 2010.9.7

● 공개처형 변화 양태

첫째, 2005년 이후에도 계속 공개처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6년에서 2008년 말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하반기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보다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공개처형이 줄어들든 것은 비공개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 이후 평양에서 총살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고 증언.⁶⁴

64_NKHR2009000013 2009-03-11.

- 북한이탈주민 ○○○은 라진·선봉지역에서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⁶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대 들어 본인이 살던 지방에서는 공개처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⁶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도 이전에는 공개처형을 많이 하고 추방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침이 내려와 공개처형 자체를 거의 볼 수 없다고 증언.⁶⁷
- 2008년 1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이후 공개처형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⁶⁸
-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요즘에는 공개처형은 안 하고 조용히 데리고 가서 처형한다고 증언.⁶⁹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으로 전환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2월 무산군 보안서에 수감되어 있을 때 24건의 인신매매로 붙잡힌 40대 무산 남성을 비밀리에 처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 이 사람은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공개적으로 처형하지는 않았다고 함.⁷⁰
- 북한이탈주민 ○○○은 김정일이 총소리를 울리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 죽어야 할 사람은 공개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처형한다고 증언.⁷¹

65_ NKHR2009000025 2009-03-30.

66_ NKHR2009000030 2009-05-07.

67_ NKHR2009000010 2009-02-26.

68_ NKHR2011000002 2010-03-16.

69_ NKHR2010000020 2009-06-01.

70_ NKHR2008000022 2008-11-05.

71_ NKHR2009000035 2009-06-02.

- 북한이탈주민 ○○○은 최근에는 국제적 비난에 의해 공개처형보다는 감옥 안에서 비밀리에 처형한다고 증언.⁷²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국경연선 일대에서는 공개처형을 내부처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국가안전보위부들한테서 많이 들었다고 증언.⁷³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공개처형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 2007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공개처형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⁷⁴
- 2008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유선 지역에서도 2004년 이후 공개총살이 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⁷⁵

반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처형이 늘었거나 공개처형을 실시하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면접조사에 의하면 다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부록 1 참조). 이는 북한의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 개정 및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1월 원산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원산에서 공개처형이 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1건 이외에 사례를 증언하지

72_ NKHR2009000037 2009-06-09.

73_ NKHR2009000040 2009-06-18.

74_ NKHR2008000011 2008-08-12.

75_ NKHR2008000016 2008-09-02.

는 못함.⁷⁶

- 2008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이전에는 총살이 줄었는데, 2007년 11월 다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 마약거래, 유색금속 밀매 등 국가중시 사안, 인신매매 등에 처형을 한다고 함. 2007년 9월 말경 인민군대 쪽으로 특수 기밀에 속하는 김정일의 문건이 내려 왔는데,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총소리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이에 따라 2007년 10월 초부터 함경북도에 대한 집중 지도검열이 있었고, 함흥에서 4명 총살하였다고 함. 2007년 ○○○은 사람이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⁷⁷
-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총살 횟수가 줄어들었다가 2007년도부터 늘어났는데, 시작은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부터 90발씩 쏘게 하였다고 증언.⁷⁸
- 2010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대에 공개처형의 빈도가 오히려 더 많다고 증언.⁷⁹
- 2010년 7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도 2010년에 공개처형이 더 심하다고 증언.⁸⁰

둘째, 지역별 공개처형 빈도에 편차가 있으나 정확한 편차 실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이후 개성지역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⁸¹ 탈북 전 원산과 신의주에서 살았던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 비해 공개처형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거주지역을 볼 때 국경지역

76_ NKHR2008000026 2008-11-25.

77_ NKHR2008000017 2008-09-04.

78_ NKHR2009000021 2009-04-13.

79_ NKHR2010000043 2010-11-02.

80_ NKHR2011000018 2011-01-18.

81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이 아닌 경우 공개처형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⁸²

셋째,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범죄행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살인죄, 인신매매, 정보 유통, 밀수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중개 등 남북 접촉행위에 대해서도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최근 대규모 군중이 집결된 가운데 간부 등의 일탈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록 2 참조).

다섯째,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일탈행위를 예방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비인륜적 행위에 대해 주민들은 점차 외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공개처형이 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죽여라’라고 소리쳤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다고 함. 공개처형이 있는 날은 강제로 장마당을 폐쇄하고, 공장기업소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간다고 증언.⁸³

82.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83. NKHR2008000007 2008-07-30.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가. 북한 형사법제와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제5조)과 국제인권규약 B규약(제7조, 제9조, 제10조)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도 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s)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동 조약에 대한 조속한 가입이 요청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북한주민의 구속과 체포를 금지해 오고 있다.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개정된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79조). 특히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전까지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 하위법에 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북한은 ‘수사와 예심(제4장)’이라는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1999년 형사소송법과 달리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제6장)’, ‘예심(제7장)’으로 독립하여 규정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보완하였다. 또한 예심의 임무와 기간(제1절), 피의자의 심문(제3절), 체포와 구속처분(제4절)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과 예심과정에서 범죄혐의자의 인신 구속과 그 기간을 엄밀하게 하는 조치를 보완하였다. 특히 2004년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절차를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하였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다(제177조). 그리고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180조). 구체적으로 예심원이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 할 경우 체포영장승인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조문화하고 있다(제181조). 특히 북한은 그동안 구금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제183조)”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항이 그동안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정치

범의 실종과 관련해 그 가족에게의 통지에도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처분(제184조)은 구류구속처분(제185조~제188조), 자택구속처분(제189조), 지역구속처분(제190조) 등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수색과 압수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수색, 압수를 실시하려는 예심원은 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7조). 그리고 실제로 수색과 압수를 시작할 경우에는 압수결정서를 제시하고(제218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1조).

이와 같이 북한은 적법절차에 의한 구금과 수사를 실시하도록 2004년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여러 조항에 걸쳐 고문과 다른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7조). 또한 “증인은 심문하는 경우에도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9조). 한편,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심문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제253조). 또한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체포, 구인, 압수, 수색 시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제252조).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그 이후 수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

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규정들은 현행 법령들인 2006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2009년 개정 형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 처분 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범죄 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구금 및 교정시설

●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구분에 따른 구금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일반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당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부는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한편, 상호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으로 세분화된다(제28조).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이상,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되어 있다. 무기 및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화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통하여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제30

조). 이와 같이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중 교화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인민보안부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교화소에 수감된다.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시설 이외에도 북한에는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있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인민보안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은 ‘관리소’라고도 불린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표 II-4〉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인민보안부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관리소

● 교화소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⁸⁴

84_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에는 사포구역에 여자교화소, 회산구역에 남자교화소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에 북한을 방문한 국제사면위원회(AI)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이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약 240명의 반국가사범(정치범)은 ‘형제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⁸⁵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국제인권기구의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하여 답하기를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공화국에 반대하는 불순한 의도에 악용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방문요청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2009년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구금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16개 범죄)	무기, 탄약, 전자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1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6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0가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104가지)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83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76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6가지)	역사유물 밀수·밀매죄, 마약 밀수·밀매죄 등 (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25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1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9가지)	-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85.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외국인 참관 전용으로 정치범교화소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2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20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8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26가지)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4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등(13가지)

북한이탈주민 중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인물이 많았다는 점에서 별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거리교화소는 본소와 별도의 수감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소에는 1과와 3과가 있다. 1과는 목공, 차 수리 등을 담당하고 3과는 농장에서 농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축산과가 있다. 본소와 1시간 걷는 거리에 2과와 5과가 있는데, 구리를 캐는 광산이다. 거기서 2시간 더 걸어가면 4과가 있는데 감자농사를 짓는다. 본인은 4과에 있었는데 400명 정도 수용되어 있었다. 2007년 말부터 여자들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하기 시작하였다.⁸⁶ 2003년 갔을 때 수용능력이 전거리가 800명이었는데 2005년 나올 때 1,600명이 되었다고 한다. 2006년도 7월경 여자 수용 교화소가 완공되어 수감되기 시작하였다.⁸⁷ 이상에서 보듯이 전거리교화소는 남성 전용 교화소에서 여성도 수감되는 교화소로 변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 ○○○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전거리교화소의 면회는 규정상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⁸⁸ 그리고 2004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을 때 교화소 준칙에 3인 공개감시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내가 세 명을 감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어찌겠나? 그 사람도 나를 포함한 3명을 또 감시한다. 서로서로가 또 감시하게 만들어 놨다. 우리 반 60명 중에 한 명이 도망치면 나

86_NKHR2009000021 2009-04-13.

87_NKHR2009000059 2009-09-26.

88_NKHR2009000059 2009-09-26.

도 역시 처벌 받는다. 그리고 준칙 10개를 암송해야 한다. 준칙 10개도 1조에 1항, 2항 등이 있어 30개까지 암송해야 한다. 또 보안원에 대한 준칙이 6가지가 있고 해당 준칙마다 조항이 있어 20개 이상을 암송해야 한다”고 한다.⁸⁹

● 노동단련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교화소 이외에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형벌과 구금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화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경미한 범법자들을 교화소보다는 노동단련대로 보내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1990년경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방침에 따라 시·군마다 ‘노동단련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는 500~2,500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의 시·군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처음에는 ‘교양대’라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노동단련대’라는 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노동단련대’는 군 인민보안서 감찰과 안전원 1명, 군당 3대혁명소조부 지도원 1명, 군 청년동맹 불량청소년 지도원 1명, 노동단련대 대장, 대열지도원 1명, 후방일꾼 1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형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는 노동단련이 ‘처벌’의 하나로 들어 있다. 판결판정집행법 제18조 집행중지·정지 판정 사유 제1호는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 집행을 중지한다고 규정

89_NKHR2009000067 2009-11-12.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대로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형벌의 하나로 신설하였다. 현행 2009년 형법에도 노동단련형은 형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31조), 집결소 혹은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장소'는 노동단련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기존처럼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여 들어온 일반적 수감자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의 증언에서 보듯이 노동단련형을 언도받은 수감자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일도 따로 시킨다고 한다. 즉, 노동단련대에서도 형기를 받은 사람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단련대에는 노동단련형을 언도받은 수감자와 일반 수감자가 동시에 수감되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형벌로 노동단련형을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⁹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였는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제로 노동단련형이 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2일 연길시에서 체포되어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90_NKHR2008000022 2008-11-05.

온성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5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동 도집결소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산군 인민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다. 9월 8일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았다.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증산교화소 3과에 수용되어 노동단련형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노동단련형 1년형이었으나 무산군 출신의 경우 단련대 수용기간 1일당 형기 2일로 계산하고 강제송환일로부터 형기를 계산하여 증산교화소에서 4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무산군 재판소에서 단련형이 고되고 힘들어 오래 형을 받고 나오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수감자가 거의 죽게 되므로 무산군 사람을 살리려면 빨리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후 판사가 이야기했다고 한다. 판사 1명, 변호사 1명, 형선고에 참여한 나이 지긋한 남성 4명(○○○은 무슨 위원회 사람이라고 증언), 피고자 2인(○○○과 다른 대기자 1명), 보증인 1명, 계호원 2명(보안원 1명, 하전사 계급 1명) 등이 재판에 참여하였다. 재판장과 나이 지긋한 노인 4명 중 3명이 퇴장했다가 약 2~3분 지나 다시 입장하였다. 이후 재판장이 “피고 ○○○을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형 1년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무산사람을 살리기 위해 교화소 수용기간 1일을 형량 2일로 간주하겠다고 판사가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도 2005년에 예심받고 증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기 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⁹¹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이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도록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단련대는 공민증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재판이

91_ NKHR2009000018 2009-03-26.

없다. 안전부 개인기록에는 ‘어느 동 몇 반 누구 단련대 몇 개월 갔다 왔다’고 기록되지만 사회에 적용하는 문건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⁹²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을 받지않고 단련대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⁹³ 북한이탈주민 ○○○도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4개월간 있었는데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⁹⁴

이상의 증언에서 보듯이 노동단련형에 대해서도 형법에 규정된 대로 재판절차를 거쳤으며, 노동교화형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였다. 판사가 노동교화 2일로 계산하는 것을 거주주민에 대한 특혜로 설명한다면 법률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개정형법이 실제 하부법률 단위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총 245개의 범죄 조항 중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 165개조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정상이 무거운 경우 노동교화형(일반교화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범죄에는 노동단련형이 없지만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과반수가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관리질서, 국토관리, 환경보호, 노동행정질서, 사회주의 문화 침해에 관련된 범죄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2001년부터 급속히 설치되었는 바 국제사회가 북한에 노동교화소가 많다는 지적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단련대와 노동단련형으로 범법자를 교화한 것으로 보인다.⁹⁵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미한 범죄의 대다수에 노동단련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설된 구성요건에도 대폭 적용되고 있다. 특히 39개 범죄조항은 전적으로 노동단련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단

92_NKHR2009000058 2009-09-24.

93_NKHR2009000065 2009-11-10.

94_NKHR2010000069 2010-10-26.

95_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련형으로 규정된 범죄 조항은 2004년 형법 개정 이전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던 일탈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한 달 정도 직장에 무단으로 결근하면 노동단련대에 한 달간 수용된다고 증언.⁹⁶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결근자(무직자)는 깡판(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함.⁹⁷
- 북한이탈주민 ○○○은 가까운 친구 중에 무직으로 3개월 청진 신암구역에 있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⁹⁸
- 북한이탈주민 ○○○은 동생이 핸드폰을 연결하여 주다가 적발되어 도집결소에서 1개월 수감되었다가 노동단련대 6개월 수감되었다고 증언.⁹⁹
- 2007년 말 북한이탈주민 ○○○의 딸 친구가 한국 테이프를 보다 발각되어 6개월 원산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¹⁰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12월 친구 3명과 빙두를 한 것이 발각되어 6개월 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¹⁰¹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2008년 6월에 한달 동안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¹⁰²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7월 헤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있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이 미신행위를 이유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⁰³

구체적으로 노동단련대의 현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함흥의 55호 노동단련대는 22호 교양소였는데, 2000년도에 바뀌

96_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97_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98_NKHR2008000030 2008-12-23.

99_NKHR2008000004 2008-07-17.

100_NKHR2008000025 2008-11-20.

101_NKHR2008000029 2008-12-16.

102_NKHR2010000069 2010-10-26.

103_NKHR2010000089 2010-06-08.

었다고 한다. 함흥 단련대는 1과, 2과, 3과로 편제되어 있는데, 1과는 본과이고 2과는 농사과, 3과는 광석과라고 한다.¹⁰⁴ 노동단련대에는 보안소속 보안원, 단련대장 1명, 시 인민위원회 노동과 직원 1명, 식량 통계 관리 여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¹⁰⁵ 또한 소년교양단련대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2003년 7월 학생 000이 남한 CD-R 시청으로 남포 소년교양단련대에 구금되었다고 한다.¹⁰⁶ 그리고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단천과 평안남도 해창에 군단련대가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⁷

● 집결소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곳은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및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재판과정 없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수용한다. 도 집결소에서는 사건계류자로부터 범행을 시인받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다고 한다.¹⁰⁸ 증명서 없이 다니다 붙잡히면 여행자 집결소로 보내진다.¹⁰⁹ 직장에서의 사고(무단결근 또는 총화학습에서 빠지는 등 도덕적 해이 사건), 의사나 운전기사 등의 업무 수행 중 과실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교화소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경미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 집결소로 보내진다.¹¹⁰ 도마다 도안전국 관할의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고, 탈주하다 잡히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104_ NKHR2009000011 2009-03-03.

105_ NKHR2009000030 2009-05-07.

106_ NKHR2009000036 2009-06-03.

107_ NKHR2009000017 2009-03-24.

108_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109_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110_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 자의적 구금·고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실제로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 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정, 사법, 검찰 기관 일꾼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상설조직이 있어 각 지역에 나가 국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들의 검열에 제기되면 돈이나 배경이 없이는 빠지기 힘들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노동교화까지 이르기 때문이다.¹¹¹

노동단련대,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니라는데 인권유린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 구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인민보안부 차원에서 결정하여 왔다. 또한 노동단련대의 경우 북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재판절차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인권유린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7년부터 노동단련대가 최장 2년까지 수감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²

북한은 교화소와 구류장에서 고문과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고문이나 강압적인 방법의 진술 유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과 강압적 심문으로 인한 피해자

111.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전.

112. NKHR2008000004 2008-07-17.

들은 응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집행 일꾼 양성 기관들은 강압적 진술과 진술 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찰기관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각종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총회는 2010년 11월 18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¹¹³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및 처벌의 존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 구금 및 교정시설 내 인권유린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 내에서 강제노동, 고문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다.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구금 및 교정시설 내의 열악한 영양 및 위생상태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상황으로 구금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화소 내 고문과 구타 등 반인간적 처우가 일상화되어 있어 인권유린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113. UN General Assembly Sixty-fifth session Third Committee, "Draft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C.3/65/L.47 (October 28, 2010).

● 강제노동 실태

북한 노동법상 일반노동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이다(사회주의노동법 제16조, 노동보호법 제36조). 반면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이라고 한다.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1일 10시간의 작업 시간은 엄격히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가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아침 5시 기상, 5시 30분 식사, 6시 30분 인원 점검, 7시부터 작업 시작, 1시에서 6시까지 오후 작업(영농기간 9시)을 하며, 15일마다 1회 휴식을 취하지만, 봄·가을 농번기에는 휴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3월 15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오전 5시 기상, 오후 10시 취침, 오전 8~12시, 오후 1시 30분~7시 30분까지 작업한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작업량이 많을 경우 작업시간을 초과한다고 한다.¹¹⁴ 교화소는 노동단련대에 비해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지만 규율이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있었는데 노동의 강도는 보통이었지만 규율이 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⁵

북한당국은 노동단련대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노동교화형 이외의 강제노동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재판에 의한 노동교화형을 제외하고는 법·질서의 위반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강제 또는 사회, 종교적 처벌수단으로 부과되는 노동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4년 개정 형법에서 노동단련형의 형벌을 신설한 것은 판정판결집행법에 노동단련이라는 처벌규정이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한 대로 강제노동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노동단련대

114.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115. NKHR2010000015 2010-10-05.

에서의 강제노동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 증은 유지되지만 단기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교양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수감기간이 짧은 노동단련대가 교화소보다 노동강도가 훨씬 높아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차라리 교화소에 가서 형을 받고 몇 년 있는 것이 낫다. 교화소는 급하게 단련하지 않는데 집결소와 단련대는 조금 있다가 나갈 사람이니까 무자비하게 개처럼 취급한다”고 한다.¹¹⁶ 이 같은 증언은 2010년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4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평안남도 증산 노동단련대에 있었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증산 노동단련대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증언.¹¹⁷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8년 4월과 5월에 양강도 백암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는데 백암군 시내 산을 깎아 수원지를 만드는 일을 하였으며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증언.¹¹⁸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8년 5월 회령시 성단련대에 있었는데 하루 11~12시간, 많게는 14시간 일할 때도 있었다고 증언.¹¹⁹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함경북도 경원(새별)군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못자게 하고 일을 계속 시켰다고 증언.¹²⁰
- 북한이탈주민 000도 2009년 2월 양강도 김형직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는데 노동할 때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며, 점심시간도 10분에 불과하였다고 증언.¹²¹

116. NKHR2009000015 2009-03-17.

117. NKHR2010000019 2010-10-12.

118. NKHR2011000018 2011-01-18.

119. NKHR2010000092 2010-06-22.

120. NKHR2010000034 2010-11-02.

121. NKHR2010000017 2010-10-05.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에 양강도 김형직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밤 11시까지 노동을 하고 이후 사상교양을 받았다고 증언.¹²²

일부 보안원들은 외화벌이 단위와 결탁하여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강제노동 대가를 챙긴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건설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서 인민보안서에 요청하고 인민보안서는 집결소에 있는 사람을 보내 일을 시킴. 그러면 회사에서 인민보안서에 대가로 돈을 준다고 증언.¹²³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대에서의 주요 노동은 북한 내 일부 기업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감찰과가 중개하여 단련대에 노동을 강제한다고 증언.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어린이 영양을 위해 ‘콩우유 설비’ 공장 건설 작업을 위한 노동에도 동원되었다고 증언.¹²⁴

● 가혹행위 실태

교화소 내에서 구타 등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월 회령시 노동교화소에 있었는데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증언. 취침시간에 4시간 정도 심하면 6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함.¹²⁵

122. NKHR2010000014 2010-10-05.

123. NKHR2009000024 2009-04-20.

124. NKHR2009000031 2009-05-12.

125. NKHR2010000010 2010-09-14.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12월 전거리교화소에서 원목하러 갔을 때 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병이 무릎 꿇게 한 채 견어차고 총판으로 내리 쳤음. 이로 인해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었다고 증언.¹²⁶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노동단련대에서의 구타행위도 우려할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10년 면접조사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3월 회령시 노동단련대에서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30kg 물 들고 있기, 돌메고 산에 오르내리기, 한 여름에 벌세우고 모기 물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해 만성통증과 각혈이 생기게 되었다고 증언.¹²⁷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성단련대에서 ○○○이 구타로 인해 다리가 상해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증언.¹²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4월 무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족쇄를 채우고, 무릎꿇게 한 뒤 발로 밟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증언.¹²⁹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로서 집결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도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구타,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청진시 도집결소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126. NKHR2009000059 2009-09-29.

127. NKHR2011000006 2010-03-23.

128. NKHR2010000095 2010-03-23.

129. NKHR2010000044 2010-11-02.

함경북도 청진시 도집결소에는 국경을 넘었다가 잡혀들어 온 도강자들만 모인다. 이곳에는 상시적으로 약 1,5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있다. 이들은 출신 지역의 담당 주재원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이곳에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 청진이나 회령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평안도, 황해도 등 먼 거리 지역 출신자들은 1년 가까이 지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평안도, 황해도 등에서는 도강자 인원수도 적고 교통사정도 열악하여 담당 주재원들이 연락을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³⁰ 집결소에서의 구체적인 가혹행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2월 청진 농포 집결소에 있을 때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서 부검을 실시함. 집결소에서 죽으면 해당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설사로 나왔다고 증언.¹³¹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3월 혜산 집결소 수감시 동료수감자가 부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총으로 머리를 맞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출혈이 심했으나 치료받지 못했다고 함.¹³²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8월 청진시 청암구역 농포집결소 수감시 인민폐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보안원 ○○○(당시 40세)으로부터 주먹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¹³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청진시 도집결소 수감시 노동을 하다 힘들어 잠서 쉬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여 귀가 잘 안 들리고 귀에서 고름이 나왔다고 증언.¹³⁴

13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호 (2005.12.12).

131. NKHR2008000019 2008-09-16.

132. NKHR2011000018 2011-01-18.

133. NKHR2010000007 2010-03-16.

134. NKHR2010000067 2010-04-27.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처벌 수단으로 구타와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1월 술 먹은 계호원이 좁은 구류장에서 콧방귀를 끼었다는 이유로 동료수감자를 구타하였는데 동료수감자가 반항하자 계호원이 계호책임자 ○○○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계호책임자 ○○○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심하게 구타하였다고 증언.¹³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1월 온성군의 보안소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 그는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10분 정도 서 있기를 하루 종일 반복하였다고 함. 또한 2007년 5월에는 온성군 보안소 구류장에서 동료수감자가 식사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에게 음식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¹³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 수감시 지나가다가 구류장 간수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후유증이 생기게 되었다고 증언.¹³⁷
- 2008년 3월 혜산시 시보안서 구류장 수감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계호원 ○○○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친구의 손을 철창에 얹게 하고 구두발로 손을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³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 혜산시 시안전부 구류장 수감시 집단처벌을 받을 때 동료수감자들과 같이 벌을 받았는데 고정자세 강요, 주먹질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¹³⁹

135_ NKHR2010000045 2010-09-07.

136_ NKHR2011000020 2010-05-19.

137_ NKHR2010000089 2010-06-08.

138_ NKHR2011000017 2010-06-08.

139_ NKHR2010000018 2010-10-05.

온성군 등 보위부 구류장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경지역 등의 보위부 구류장이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른 질서 유지 명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양강도 혜산시 도보위부 구류장에서 증언자의 아버지가 계호원에게 심하게 맞았는데, 심지어 발톱이 빠졌다고 증언.¹⁴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7월 자강도 만포시 보위부 구류장 수감시 중국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질과 몽둥이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건수가 생길 때마다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¹⁴¹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월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감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¹⁴²

보위부 구류장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보안서 구류장과 비교하여 가혹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보위부 구류장은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인민보안부에서는 세계 때린다. 이 새끼 대라 안대면 발로 걷어차고 청소 시킨다. 반면 보위부에서는 요만한 방에 앉혀 놓고 꺼떡꺼떡 졸지도 못하게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쓰라 이런 것만 한다”고 증언하였다.¹⁴³

● 열악한 영양·의료 상황과 사망 실태

교화소 내에서 사망 등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인권 인식 조차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

140. NKHR2009000033 2009-05-26.

141. NKHR2010000054 2010-06-22.

142. NKHR2010000031 2010-11-09.

143. NKHR2009000016 2009-03-19.

면 2007년 김정일이 법이 무르다고 발언한 이후 교화소 보안원들이 “죽어라! 일 없다! 열이 죽어도 일 없고 스물이 죽어도 일 없다!”라고 공공연히 발언하였다고 한다.¹⁴⁴ 실제로 교화소 내에서 사망하는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여름 개천교화소에 할머니와 같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위생실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증언.¹⁴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5월 전거리교화소에서 열병으로 ‘병반’이라는 의무실에 40일 있을 때 한 주 평균 14명 정도 죽어 나갔다고 증언.¹⁴⁶
- 북한이탈주민 ○○○도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서 가혹행위, 질병, 허약 및 자살 등을 이유로 300명 정도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위생관에게 들었다고 증언.¹⁴⁷

식사량, 위생, 의료 등 교화소 내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 북한이탈주민은 ○○○은 강냉이 밥에 콩을 섞어 덩어리로 하루 세끼를 제공하는데 문건 상 599g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00g 정도 먹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¹⁴⁸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2005년 4월 경 영농기에 작업강도는 세고, 영양상태는 부실하여 ○○○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 한끼당 덩이밥 150g 정도, 말풀 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식사량이 부족하였으며 풀이나 개

144_ NKHR2009000059 2009-09-29.

145_ NKHR2010000045 2010-09-07.

146_ NKHR2009000059 2009-09-29.

147_ NKHR2010000067 2010-09-14.

148_ NKHR2009000067 2009-11-12.

구리 등을 먹고 설사 증세가 나타나 사망했다고 함.¹⁴⁹

-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화소는 2006년 말부터 수용인원을 초과하는데 다 식량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굶어 죽는 재소자들이 증가했다고 증언.¹⁵⁰

노동단련대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영양부족, 강도 높은 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포항 구역 노동단련대에서 25세 남성 ○○○이 아사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⁵¹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1월 함경북도 무산군 노동단련대에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¹⁵²
- 2005년 10월 회령단련대에 수감되었을 때 유선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허약증에 걸려 퇴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⁵³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굶주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을 때 아이 2명이 허약과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증언. 병에 걸렸는데, 2번 달아나다 잡혔다는 이유로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서 죽었으며 이렇게 죽어나가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함.¹⁵⁴

149.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15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61호 (2007.2.2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63호 (2007.3.14).

151. 위의 증언.

152. NKHR2010000028 2010-11-16.

153. NKHR2008000010 2008-08-08.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단련대에서 여성 1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는데, 단련대 내 염소가축장에 유기하였다고 증언.¹⁵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5월 평남 평성시 증산단련대에서 동료수감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⁵⁶
- 북한이탈주민 ○○○은 동생 남편 ○○○이 2008년 1월 노동단련대에서 매 맞아서 죽었다고 증언.¹⁵⁷

집결소도 다른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수감자들은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때로는 체력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한다. 이렇듯 함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일 자체도 힘들지만, 잡혀서 돌아올 경우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¹⁵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2월 집결소에서 결핵 앓는 거 뻔히 알면서 방치하였다가 죽은 사람을 병원에 업고 가서 병원에 가서 죽은 것으로 하였다고 증언.¹⁵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4월 청진 도집결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름을 모르는 여자 3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¹⁶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 청진시 농포집결소 수감시 영양실조로 어떤 남자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⁶¹

154_ NKHR2009000028 2009-04-28.

155_ NKHR2009000041 2009-06-23.

156_ NKHR2010000102 2010-07-13.

157_ NKHR2009000065 2009-11-10.

158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호 (2005.12.12).

159_ NKHR2009000032 2009-05-19.

160_ NKHR2008000004 2008-07-17.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3월 청진의 송평집결소 수감시 ○○○이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동료수감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¹⁶²

북한이탈주민들은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경호원의 구타나 굶주림, 기아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피해자를 다수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5월 18일 형이 연사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맞아 죽었다. “우리 형 친구가 거의 죽은 거를 업고 나와서 병원까지 오니까 병원에서 죽었다”고 증언.¹⁶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라흥 철도 기업소 노동자 동료인 ○○○(45세)이 함흥 철도국 보안서 구류장에서 동선 절도죄로 예심 중 심한 구타로 사망하였다고 증언.¹⁶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월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보안서 구류장 수감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⁶⁵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가혹행위나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봄 황해남도 강령군의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어떤 여성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⁶⁶

161_ NKHR2010000086 2010-06-22.

162_ NKHR2010000031 2010-11-09.

163_ NKHR2009000011 2009-03-03.

164_ NKHR2009000045 2009-07-14.

165_ NKHR2010000017 2010-10-05.

166_ NKHR2010000091 2010-06-15.

온성보위부 구류장 등 보위부 구류장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월 함경북도 경흥군(은덕군) 보위부 구류장 수감시 경원군(새별군)에 살던 ○○○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소식을 경원군 고건원 노동자구 신흥동에 살던 ○○○(당시 43세 여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¹⁶⁷

라. 부패와 인권

북한 형법은 뇌물수수를 법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다.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대량의 뇌물수수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관리일군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관리일군이 뇌물을 대량으로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2009년 개정 형법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42조, 제257조). 또한 행정처벌법은 뇌물 수수 및 중계행위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시킬 수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그러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보안서 구류장에서 예심을 하는 과정 중 면회 등에서 또 다른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국경연선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예심기간 동안 가족들은 구류장에 갇힌 가족에게 도시락이라도 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 보안원, 아니면 최소한 보안서에 끈이 닿아 있는 아는 친구의 친구라도 찾아내 돈과 각종 뇌물을 바쳐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

167. NKHR2010000038 2010-11-02.

에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보위부의 구류장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뇌물로 바쳐야하는 돈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보위부 내의 각 계층에 뇌물을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¹⁶⁸

또 부패와 인권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가 이혼문제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남편의 폭력, 먹고 살기 위한 여성의 장사 활동 증가, 부부 불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청구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판사 앞에서 예비재판을 한다. 가급적 예비재판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예비재판이 끝난 다음 재판소 소장을 만나게 된다.¹⁶⁹ 그런데 이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뇌물을 받쳐야 하며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늘고 있다.¹⁷⁰ 북한이탈주민 ○○○도 이혼재판을 할 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재판소 판사에게 돈을 바쳤다고 한다. 2008년 4월 재판소 판사가 조건은 되는데 좌우간 생각은 해 보자고 말하였다고 한다. 증언자는 이 발언을 돈을 바치라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당시 북한돈 10만 원을 줬다고 한다.¹⁷¹

뇌물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빙두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교화형에 처할 범죄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뇌물을 바치면 교화소를 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형의 경우에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⁷²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을 받지 않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¹⁷³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소장에게

168. NKHR2009000006 2009-02-05.

169.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170. NKHR2009000060 2009-10-06; NKHR2009000062 2009-10-20; NKHR2009000063 2009-11-03.

171. NKHR2009000054 2009-09-17.

172. NKHR2008000023 2008-11-11.

3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줘서 경한 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⁷⁴ 2009년 8월 도강을 죄목으로 해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받은 북한이탈주민 〇〇〇도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⁷⁵

여행증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 차원에서 주택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손전화를 사용하다 들켜도 한국과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면 교화소에 가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바쳐야 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¹⁷⁶ 특히 비디오 시청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단속될 경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려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비사회주의 현상의 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당국이 규정하는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일탈행위의 양태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며 법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73_ NKHR2010000018 2010-10-05.

174_ NKHR2011000020 2010-05-19.

175_ NKHR2011000018 2010-10-05.

176_ NKHR2009000064 2009-11-04.

마.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 정치범수용소 설치 경과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에는 약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 김일성 음모)’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이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이곳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 김일성 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19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으로 수용시켜 특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반당·반 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반 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고, 처형에서 제외된 1만 5,000여 세대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반 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¹⁷⁷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범의 친척들은 산간벽지나 농촌지역으로 쫓겨나 거주를 제한받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수용소관리자 및 그 가족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1982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여 탈출한 ○○○·○○(1992년 입국),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1994년 입국),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원이었던 ○○○(1995년 입국) 등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었다. 1995년부터 1999년 1월까지 요덕수용소 대숙

177. 오가와 교수는 지금의 정치범수용소는 1960년대 후반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체계 확립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가와 하루히사, “북한 정치범수용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조선일보사·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고려대국제대학원 공동주최, 1999년 12월 2일).

리 8호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 ○○○, ○○○, ○○○ 등이 정치범수용소의 생활상을 공개하였다. 2002년 4월에 *Digital Globe*가 촬영한 제22호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이 2002년 12월 5일 국내외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으며,¹⁷⁸ 2003년 10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 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탈북자의 증언과 인공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⁷⁹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불러 왔고,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정치범수용소’나 ‘형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호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범만을 수용하는 교화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⁸⁰ 각 관리소마다 체제유지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 번호나 지역고유번호를 붙인 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는 ‘15호 관리소’로 불린다. 또한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예하 부대처럼 위장해 놓고 있다. 예컨대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로 위장되어 있다.

●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용인원은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

178. 2003년 1월 15일에는 미국 NBC 방송이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http://www.msnbc.com/news/859191.asp?0sp=v3z2&0cb=-114130475#BODY>>.

179. David Haw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prisoner's testimonies and satellite photo* (U.S. Committee for Human Right in North Korea, 2003).

180. 1958년 군사분계선을 통해 남한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은 ○○○은 1960년부터 청진 수성교화소에서 12년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 ○○○과 ○○○은 19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현재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2010년 3월에 발표한 『2009년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15~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보고서는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 4천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소 위치와 수용인원은 평남 개천 14호 관리소 1만 5,000명, 함남 요덕 15호 관리소 5만 명, 함북 명간 16호 관리소 1만 5,000명, 평남 북창 18호 관리소 1만 9,000명, 함북 회령 22호 관리소 5만 명, 함북 청진 25호 관리소 5,000명 등이다.¹⁸¹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⁸² 2011년 1월 정부 소식통은 15만 4천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¹⁸³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위치는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¹⁸⁴ 또한 엄격한 의미의 정치범 혹은 양심수로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전체 수용인원과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¹⁸⁵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

181. 『동아일보』, 2009년 10월 17일.

182.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와 북한법·국제법적 평가』 (2009.11.24), p. 23.

183.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北정치범수용소 6개, 15만여 명 수감” (검색일: 2011. 1.25).

184. 북한이탈주민 ○○○은 요덕수용소의 인공위성사진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주목하자, 북한 당국이 요덕수용소의 수감자를 함남 덕천수용소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185. 북한이탈주민 ○○○,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면접.

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온성군 2개소¹⁸⁶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명간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 명도 이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안명철은 정치범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 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그는 '승호리수용소'와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림 II-2〉 정치범 수용소 위치



186.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온성의 12호 관리소는 1987년 해체되고 4·25 담배농장이 건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표 II-6〉 해체된 수용소

명칭	위 치	해산일시	해 산 이 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1989년 10월	김일성 별장건설
12호	함북 온성 창평로동지구	19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온성 종성로동지구	19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19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1990년 11월	이유 불명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²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천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¹⁸⁷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187. 인민보안부 소속 경비대 산하에 제18호 관리소(평양 북창군 득장리 소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 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치참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 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¹⁸⁸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¹⁸⁹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 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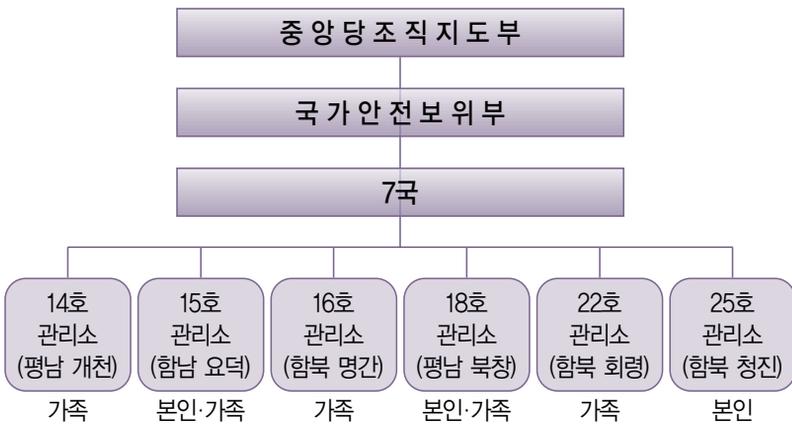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188. 북한이탈주민 000에 따르면, 인민무력부 외신국 통역관이던 000은 1989년 러시아 유학생 사상검토과정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1989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요덕수용소에서 수감 후 청진제강소 노동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2년 11월 30일,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189.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는 『감춰진 수용소』에서 평남 북창리 소재 18호 관리소에도 소규모의 ‘혁명화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들의 경우에는 혁명화구역에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정일 체제에 순응하게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따르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이영국은 출신성분에 따라 그 수용 기간과 출소 가능성 등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⁹⁰ 또한 극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에서 언급된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일반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는 경우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1-3〉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190. 북한이탈주민 000, 2001년 10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 정치범수용소 운영실태

정치범수용소에 근무했거나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수용소 운영실태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령 22호 관리소〉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2호 관리소 주변에는 가 보았는데, 22호 관리소는 한 개 군보다 작지만 함경북도 농사의 10%를 거기서 생산한다는 소리를 들었다.¹⁹² 또한 회령 22호 관리소는 궁심방향과 세천 쪽으로 해서 산 하나를 막았다고 한다. 애들은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함께 수감하지만 부인은 이혼하라고 한다.¹⁹³ 그리고 22호 관리소는 수감자들이 된장을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한다. 국가에서 주는 장은 강냉이로 만들어서 맛이 없는데, 22호 관리소에서 생산된 장은 맛이 있다고 한다.¹⁹⁴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2호 관리소에도 소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4학년까지 오후에 나가서 김을 맨다고 한다. 오전에 공부하고 아이들이 찢통을 매고 김매서 풀을 담는다고 한다.¹⁹⁵

〈청진 25호 관리소〉

청진 관리소는 ‘수성교회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¹⁹⁶ 또한 관리감독도 보위부가 아닌 인민보안부이 관할한다고 한다. 수성교회소는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소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

191.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워크숍, 2006년 1월 20일.

192. NKHR2009000021 2009-04-13.

193. NKHR2009000024 2009-04-20.

194. NKHR2009000057 2009-09-22.

195. NKHR2009000067 2009-11-12.

196.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다. 그렇지만 수성교화소에 일반 경제범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치범만 수감된다. 수성교화소는 기계를 가지고 수공업적으로 자전거를 생산한다.

〈개천 14호 관리소〉

개천 관리소에는 유치원은 없고 인민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있다. 인민학교는 5학년까지 있는데, 한반에 30~40명 정도 있었고 학년별로 3~4개 반이 있었다. 고등중학교는 6년 과정이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관리소 내에 있었다. 인민학교에는 학급당 1명의 담임선생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고등중학교는 한 학년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고등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 명씩만 담임선생을 배치하는 것이다. 고등중학교 담임선생은 가르치는 수업은 없고 작업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인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나갈 때 학생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한다.

개천 관리소 실상은 이곳에서 태어난 신동혁이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 씨는 개천 관리소에 10대 법과 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신 씨가 적고 있는 10대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주할 수 없다. 둘째,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셋째,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 자를 보았을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여섯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일곱째,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여덟째,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간에 접촉할 수 없다. 아홉째,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 열 번째,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10대 규정을 어길 경우 총살에 처하도

록 되어 있다. 197 신 씨의 수기를 통해 본 개천 관리소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198

〈표 II-7〉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개천 14호 관리소는 1965년경에 생겨났다. 개천교회소에는 대동강과 철조망을 경계로 학교, 마을, 5개 골안,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소는 본 마을, 1, 2, 3, 4, 5호 골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4호와 5호 골안은 가족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별적으로 생활하며 결혼도 안되고 가족단위 생활도 안된다. 따라서 관리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본 마을과 1, 2, 3호 골안 아이들이다. 1, 2, 3호 골안 사람들도 4, 5호 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으며, 4, 5호 골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신 씨는 외동리 8작업반에서 태어났으며, 40채 정도로 구성된 작업반이 있었다. 집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 부엌이 붙은 방이 네 칸씩 있어서 각 가구마다 한 칸씩 사용하며 4세대가 생활한다. 관리소는 연로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들만 모여서 일하는 작업반에서 일해야 한다.

수용소 집은 시멘트로 지은 것으로 방바닥과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바닥엔 장판이 없으며 시멘트 위에서 그대로 잔다. 난방은 석탄을 사용해서 불을 댈다. 관리소 내에서 석탄을 생산하므로 매일 그날 쓸 수 있는 양을 배급한다.

관리소에서 작업반은 작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관리소 내 공장은 탄광, 공무직장, 건설작업반, 식료공장, 시멘트공장, 도자기공장, 고무공장, 종이공장, 피복공장, 농장이 있으며 각 공장은 여러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별 담당 보위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다. 14호 관리소 내 보위원 마을은 100세대 정도 되는데, 1세대에 2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보위원 200가구가 관리소 내에서 생활한다. 작업반 담당 보위원은 3개 작업반에 1명씩 있다.

신 씨가 있던 피복공장은 12~13개 정도 작업반이 있는데, 2,000~3,000명 정도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작업반은 보통 4~5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당 20~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작업반에 100~150명이 배치되어 있다. 작업반장 위에 총 반장이 있는데, 각 지역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선출한다. 하루 작업 생산량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지 않고 보위지도원의 지시를 받은 총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 작업반장을 무섭고 포악한 존재로 생각하며 어떤 때는 보위지도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느낀다. 작업반장은 담당지도원보다 더 독하다.

수용소 내에서는 비밀감옥이 운영되고 있다. 신 씨는 1996년 4월 어머니와 형이 탈출한 사건으로 인해 비밀감옥에 수감되었다. 방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하나 있을 뿐이며 크기는 사방 1m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당시 다리를 펴고 누우면 딱 맞을 만큼 좁았다. 감방 선반에 있던 쇠사슬로 연결된 족쇄를 발목에 채우고 밧줄로 끌어당겨서 거꾸로 매달았다. 별도의 고문실이 있는데 여기서 불고문도 당한다.

197.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온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p. 60~62.

198. 위의 책, pp. 21~185.

● 정치범의 수용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¹⁹⁹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과 000에 의하면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 쪽이 정치범으로 처벌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여 자

199. 2006년 4월 법원행정처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범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사건심사위원회에서 정치범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증언도 있었고, 보위부에 판사가 배치되어 정치범 재판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을 보위부에서 다룰 지의 여부는 법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위부장이 법무위원회의 구성원이므로 사건이 정치적 색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위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사건심사위원회는 보위부장, 보위부 자료분석실 실무자, 보위부 소속의 검사와 예심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결정은 보위부장이 내린다고 한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판결 과정에 변호사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 31.

기 집으로 가고 여자 쪽 집안이 정치범으로 걸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²⁰⁰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1995년 친구의 남편이 도강하였다가 붙잡혀 정치범으로 몰렸는데, 보위부장이 친구에게 “이혼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다 같이 가겠냐?” 하여 결국 이혼하였고 남편만 어디 수용소인지는 모르지만 수용소에 보냈다고 한다.²⁰¹

2005년 이후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도 본인이 온성 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을 때 중국에서 성경책을 갖고 와서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전도하다 발각되어 보위부에 9개월 수감되어 있었다고 증언. 또한 구류장에 오래 가두어 두면 반드시 수용소에 가야할 대상들이며, 한국행을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머리 뺨뺨 깎고 졸업한다고 하던데 졸업이란 수용소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증언.²⁰²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도 회령 사람 ○○○(당시 42세)이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혔는데 막내 동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갔다고 증언.²⁰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무산에 거주하는 외삼촌(○○○)이 국정원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로 갔다고 증언.²⁰⁴
- 북한이탈주민 ○○○은 증언자의 처남이 22호 관리소 보안과장인데, ○○○이라는 친구가 2005년도에 국정원과 선이 닿았다는

200. 북한이탈주민 ○○○·○○○,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01. NKHR2009000065 2009-11-10.

202. NKHR2009000018 2009-03-26.

203. NKHR2009000018 2009-03-26.

204. NKHR2009000047 2009-07-30.

혐의로 보위부에 체포되어 22호 관리소에 갔다고 증언.²⁰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31살가량의 중국에서 알게 되었던 남자 ○○○이 비밀 문건을 유출하여 판 혐의로 요덕수용소로 갔다고 증언. 본인이 아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함.²⁰⁶

최근에는 탈북기도, 남한 녹화물 유통 등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이는 북한이 2004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정보유입 차단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개정 형법에서도 외부정보유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월 친구 ○○○이 남한 CD를 시청한 죄목으로 요덕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²⁰⁷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에 있는 누나와 전화를 하고 탈북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이 회령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소식을 2008년 1월 이웃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증언.²⁰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 이모 ○○○이 이산가족찾기 행사에서 남한사람과 돈거래를 했다는 죄목으로 요덕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증언.²⁰⁹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는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며,

205_ NKHR2009000067 2009-11-12.

206_ NKHR2009000010 2009-02-26.

207_ NKHR2010000010 2010-09-14.

208_ NKHR2010000053 2010-06-29.

209_ NKHR2010000068 2010-04-27.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수용이 결정된다. 평양의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가 대표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이다. 주로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가한 자들은 체제 위해분자로,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출 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복송교포 등이 색출대상자에 포함된다.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게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유포한 자가 색출대상에 많이 포함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할아버지가 외국방송을 청취하고 말실수를 하여 1970년 청진 수성수용소에 수감된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증언. 가족들은 수감되지 않았다고 함.²¹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신의 고등중 동창인 〇〇〇의 부친이 온성군 주원리에 거주하였는데, 김일성 사진을 태웠다는 죄명으로 1978년 경 보위부에 잡혀갔고, 장소는 모른다고 증언. 가족은 같이 가지 않았지만 직장, 결혼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함.²¹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신의 동생 〇〇〇이 큰오빠가 수감된 일로 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하여 말반동으로 체포되어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리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가 탈출하였다고 증언.²¹²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1995년 김일성 초상화 훼손으로 아버지가 수감됨. 가족이 동시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평북 선천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²¹³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아버지가 일본귀국자였는데 일본에 가겠

210.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3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211.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12.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13.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다고 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²¹⁴

최근에는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남한사람 및 기독교인과 접촉하거나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인신매매에 가담한 자들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²¹⁵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재판절차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척 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²¹⁶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를 두려워하여 당국에 항의하지도 않고 보다 더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어느 날 이웃이 야간에 없어지게 되면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측만 할뿐 더 이상 이들의 행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 수용자 생활실상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²¹⁷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일상적으로 작업반의 수용자들은 동트기 전에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인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해질 때

214.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15.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2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216. 북한이탈주민 000은 남편이 1970년 정치범으로 관리소로 이감되었으나, 소재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217.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에 대한 증언도 제시되어 있다.

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작업 종료 전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 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 된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리소의 정치범들이 지형을 파악하여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일정한 숫자를 이동하여 수감시킨다고 한다.

관리소 사람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5시에 출근한다. 일하러 가면 6시 정도 된다.²¹⁸ 관리소는 특별히 요일별 차이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소에도 보통 매월 초 한 달에 한 번씩 쉰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날, 설날에도 쉰다.²¹⁹

탄광과 농장의 1일 배급량은 원래 1인당 옥수수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g은 절약미라고 해서 떼어놓고 700g만 주었다. 부

218.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온다』, p. 56.

219. 위의 책, p. 45.

식으로는 엽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았다. 노동 강도는 세고 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파서 힘들다고 한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은 쥐를 잡아서 구워먹는 것인데, 농촌지원을 나가면 쥐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일주일 내내 쥐를 잡아먹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인민학교를 다니는 경우 1일 학생 배급량은 300g, 고등중학교 1~4학년은 1일 400g, 5~6학년은 1일 500g을 받는다.²²⁰

관리소에서의 결혼 생활은 죄수 입장에서 보면 평생소원이다. 보위지도원이 결혼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며, 관리소 규정을 잘 지키고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표창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¹

수용소 인민학교의 하루 일과는 수업 후 노력동원을 제외하면 일반 인민학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업과목과 수업내용,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는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있다. 인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체육 세 과목이 전부이다. 김일성과 관련된 것이나, 당 혁명, 북한 역사, 그리고 북한의 지리와 과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²²²

중학교 기간에는 매일 공장이나 농장,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수용소에서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업은 없고 노동만 하게 된다. 고등중학교 때에는 책은 없고 생활총화 노트만 있다.²²³

220_ 위의 책, pp. 46~48.

221_ 위의 책, pp. 63~65.

222_ 위의 책, pp. 80~98.

223_ 위의 책, pp. 115~128.

●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국제사면위원회(AI)의 보고서와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이외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일본 내 북송교포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수용자가 매년 약 100~200세대씩 증가되어 1987년에는 요덕군 ‘구읍 및 입석지구’의 북송교포 마을에만 일가족 약 800여 세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한편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일본 조총련 간부나 상공인 등은 가족과 분리되어 다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강철환은 1977년 실종된 할아버지 강태휴(전 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장)의 행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한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 온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들은 자신의 죄명을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발이’라고 냉대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한다. 북송교포들은 북한주민 출신보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따르면, 1999년 중국 연길에서 일본에 사는 언니와 접촉하였다는 죄목으로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1년간 수감되었으며 귀국자이며 노령이라는 이유로 구타는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²²⁴

224. 북한이탈주민 000,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가. 북한 형법과 인권의 상관성

북한은 1950년 3월 3일 형법을 채택한 후 인권에 반하는 내용의 형법 규정에 대한 외부 비판과 북한사회질서 변화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형법을 개정해 오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인 형법 개정을 통하여 체제방위를 위한 형법에서 범죄통제를 위한 형법으로 순화시키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99년 개정 형법 제1조에서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2004년 개정 형법 제1조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라고 수정하고 있다. 2004년 형법 제1조는 현행 2009년 형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형법은 계급투쟁적 본질과 임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형법의 정치적 성격과 계급적 본질은 범죄관에서 반영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수호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정치범죄와 일반범죄가 발생하

는 원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기본인식이다. 정치범죄는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²⁵ 이러한 점에서 북한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형법의 사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또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에 대한 관용을 규정(제4조)하고 있으나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일반규정에 이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데(제3장) 이는 북한당국이 정치범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범죄자의 처리에 대해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재판소의 임무와 관련하여 2010년 헌법 제162조 제2호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의 처리원칙에 대하여 “국가는 범죄자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형법 제2조)”고 규정하여 여전히 계급투쟁원칙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급투쟁노선의 관철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범죄를 저지른 계급적 원수를 찾아내 핵심인물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계급노선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225. 김근식, 『형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형법은 공소시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계급적 속성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북한도 형법에서 시간적 효력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행위가 개정 형법에서는 범죄행위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개정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리고 노동단련형,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등의 형벌에 대한 형사소추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제56조). 그러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제57조)”고 규정하여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는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19조 제2항), “단순 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되어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제22조 제1항). 다만,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범죄의 준비는 미수보다,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9조).

또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2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의 경우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파괴암해죄에 대한 사형 부과(제64조), 불신고죄에 반민족범죄를 포함(제71조)하는 등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에 역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4년에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사실상 유추해석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동시에 조문 내에서 자의적인 법률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 등의 표현을 없애고 행위양태의 열거를 통해 법률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법률 조문도 종전 161개 조에서 총 303개 조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범죄 조항도 118개 조항에서 245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규정요건을 보다 세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유추해석을 지양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북한은 기존의 형법이 갖고 있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노동단련형의 경우 구금시설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치적 범죄가 유지되고 형사소추기간이 해당되지 않으며 연좌제적 성격이 남아 있는 등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7년 이후 북한 형법의 개정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두 차례 부분적으로 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였는데 상당수 범죄에 사형을 부과하고 있고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2009년에는 북한 헌법상 최초로 인권 존중을 명시하여(제8조) 북한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게 하였으나 2009년 형법 개정시에는 오히려 내부 통제와 외부정보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탈북자의 처벌규정인 비법국경출입죄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는 2009년 헌법 개정시 통치이념으로 명시한 선군사상(제3조)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국경통제 및 외부정보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형법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반국가범죄 등 형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에 따라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법 규정보다는 최고지도자의 방침이 더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장군님, 지금 청년들이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이건 미국에서 들어온 수정주의, 자본주의 풍인데 이걸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인받으면 처벌한다.²²⁶

● 형사재판절차

주민들은 법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재판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공개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소자와 피심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불공정한 재판절차와 판결에 대해서는 신소와 청원제도를 두어 법 적용이 공정하게 심의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기 어려우며, 변호인은 피소자의 권익보다 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와 정치범에 대한 처벌 절차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은 2004년 5월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여 재판절차를 보완하고, 2005년 7월과 2006년 10월 부분적인 개정을

226.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한다고 법에 의한 수사, 예심, 기소, 재판관을 강조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재판관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북한당국은 1976년 1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 1998년 7월 1일, 1998년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또한 1997년 1월 23일 ‘판결판정집행법’을 제정, 1997년 9월 5일과 1998년 11월 19일 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 헌법은 2009년 4월 9일 개정된 이래 2010년 4월 9일 다시 부분 개정되었는데 재판관과 관련하여 종전 헌법의 중앙재판소를 최고재판소로 명칭을 바꾸었다.²²⁷ 재판소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가 있다(헌법 제159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판결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조). 제1심 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되며(제9조), 제2심 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제14조). 그리고 판결 및 판정은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실제로 재판소에서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함흥시 해안구역 인민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해안구역 검찰소에서 검사 1명, 해안구역 재판소에서 판사, 변호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²²⁸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하부에 위치하여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헌법 제168조는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

227. 현행 헌법은 최고재판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판소구성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들은 아직도 중앙재판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들도 헌법 규정에 맞게 곧 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관련 법령 인용시에는 현행 헌법 규정에 맞게 최고재판소라고 한다.

228. NKHR2009000016 2009-03-19.

민회의와 그 후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판사가 판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독립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감시법 제11조는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소는 사건 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재판과 중재 사건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독립과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사법체계를 가지게 된다.²²⁹

북한의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은 대학의 법학과 출신 중에서 국가가 지명하고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²³⁰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서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모든 수준에서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2조). 그리고 재판일군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55조).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계급노선의 관철을 명시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유린의 소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하게 가려 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 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뿐만 아니라 북한 형사소송법은

229.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230.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하여 균중노선을 견지하고 있다(제3조).

재판의 공개원칙과 관련, 일반 주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재판의 공개원칙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간부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²³¹ 곧 일반주민들에게는 재판의 공개가 적용되고 간부들의 재판은 비공개로 집행되고 있는 바,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 간부들은 당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중처벌을 못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재판의 공개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71조 제1항). 그러나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제271조 제2항).

그러나 재판을 경험했거나 재판에 대해서 들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재판과정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 현지공개재판제도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제도적 장치로 현지 공개재판제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운영해 왔다. 북한의 예전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공개재판을 조직·진행한다. 이 경우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범죄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

231.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000은 평양기계대학을 졸업했고, 000은 김일성대학 4년 중퇴자이다. 이들은 공개재판의 원칙의 의미를 실내 또는 실외에서 집행되는 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99년 형사소송법 제179조).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처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²³²

김정일의 지침에서 보듯이 현지공개재판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6조). 다만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로 변경되었고,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로, 규탄 조항은 여전히 반인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공개재판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개처형이다. 법원행정처가 2006년 4월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따르면, 현지공개재판은 판사와 검사, 인민참심원도 참가하고 재판의 형식도 갖춘다고 한다. 대상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²³³ 그러나 판사와 검사, 인민참심원의 참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북한주민들도 상당수 있으며, 판결은 현지공개재판 이전에 다 내려져 있고 현지에서는 단지 선포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232.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16.

233.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0.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현지공개재판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남청진 중학교 운동장에서 남청진 중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함경북도 수재학교인 '도 1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및 금품을 빼앗은 죄로 재판받는 것을 증언자의 집(아파트)에서 목격하였다고 증언.²³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3월 말경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무산군 재판소 소장, 검찰소 소장, 인민위원장 (또는 인민부위원장), 보안소 정치부장이 나왔다고 증언. 그는 “아 무개는 사형에 처한다!”, “나머지 누구누구는 15년 징역,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였는데 판결은 재판소 소장이 읽은 것 같다고 증언.²³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6월 12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경기장에 주민들을 불러모아놓고 1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실시함. 마약 밀수, 유색금속(연, 아연, 동 등) 밀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2명 중 3명은 무기징역형, 4명은 10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았다고 증언. 같은 달 17일에도 함흥시 사포구역 시장에서 마약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고 함.²³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공개처형 되었다고 증언. 당국은 각 기관, 기업소, 인민 반들에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한 데 이어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하였다고 함. 이때 처형된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 친척들과 연계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강하였거나, 도강하겠다는 이웃을 도와주거

234. NKHR2009000040 2009-06-18.

235. NKHR2008000022 2008-11-05.

23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57호 (2008.7.1).

나, 아니면 다른 도강자들을 알선해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함.²³⁷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3월 31일 오후 3시, 함경북도 온성읍 기계전문학교 운동장에서 마약밀매, 불법 녹화물 유통, 인신매매, 비법월경 등의 혐의로 17명이 처분을 받았다고 증언.²³⁸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초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탄광회관에서 비법월경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십여 명을 모아 놓고 재판을 하였다고 증언.²³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2월 무산광산회관에서 빙두 밀매, 남한 비디오 시청, 중국도강 안내 혐의 등으로 공개재판을 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²⁴⁰

이러한 공개재판은 그 자체로서 비인권적 절차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에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있지만 변호할 것이 크게 없으며, 변호할 필요도 없다고 증언.²⁴¹
- 2005년 함경북도 경원(새별)군 고건원 장마장에서 이웃 사람이 공개재판받는 것을 참관한 북한이탈주민 ○○○은 변호사가 재판당사자의 죄를 더 강조하거나 폭로하였다고 증언.²⁴²

한편, 현지공개재판의 횡수와 총살이 줄었다는 증언이 있다. 아직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 특히 2001년 이후에 현지공개재판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증언하였으

237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4호 (2008.3.5).

238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21호 (2008.4.23).

239_ NKHR2008000010 2008-08-08.

240_ NKHR2009000009 2009-02-19.

241_ NKHR2009000015 2009-03-17.

242_ NKHR2010000037 2010-11-16.

며,²⁴³ 북한이탈주민 ○○○과 ○○○은 공개적인 총살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⁴⁴ 그러나 2007년 9월 말경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총소리를 올려야겠다는 내용의 특수 기밀문서를 내려보냈고, 함경남북도에 대한 집중지도검열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²⁴⁵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공개처형이 늘어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²⁴⁶

● 동지심판제도

북한은 한국전쟁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군중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난 뒤 1972년경부터 각 지역단위별로 동지심판(회)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0조 제3호는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에 검사가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으로 동지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 탐오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제도, 행정적 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降職)처분, 자아비 판처분, 엄중경고, 경고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⁴⁷ 한다. 법원행정처의 2006년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따르면, 동지심판은 주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243. NKHR2008000009 2008-08-07; NKHR2008000013 2008-08-19; NKHR2008000016 2008-09-02; NKHR2008000016 2008-09-02; NKHR2008000027 2008-12-02.

244.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8000012 2008-08-14.

245. NKHR2008000017 2008-09-04.

246. NKHR2008000023 2008-11-11.

247.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동료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서 심판결과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²⁴⁸ 동지심판제도는 군대에서도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1997년 6월 황해북도 개성시 9사단 87연대 연대회관에서 동지심판이 있었다고 한다. 3명의 남자가 탈영을 이유로 동지심판을 받았는데 동지심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동지심판 이후 구류장에 보내어졌다고 한다.²⁴⁹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군 복무할 때 ○○○이라는 부대장이 텔레비전 도둑 행위가 제기되어 부대에서 동지심판으로 군 교양소에 1년 동안 있었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당 보위지도원, 검찰소 담당검사가 공개재판을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⁵⁰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에서 동지심판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의 보복타격으로 부상당한 소대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3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소대장을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많이 난 김정은이 도주병들을 동지심판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²⁵¹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공개재판과 동지심판을 혼동하고 있으며, 동지심판을 여전히 군중심판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현지공개재판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동지재판’이라고 부른다는 증언이 있다.²⁵²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개재판을 목격하였다고 한 증언도 실제로는 동지심판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0.

249. NKHR2010000024 2010-10-19.

250. NKHR2009000014 2009-03-12.

251. 자유아시아방송(www.rfa.org/korean), “북한군 소대장 부상·일부 병사 도주” (2010.11.25).

252.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 인민참심원제도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163조와 재판소구성법 제9조 및 형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재판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급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은 헌법 제116조 제13호, 제140조 제5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지방(도, 직할시, 시, 군, 구)인민회의가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인민참심원은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최고-도/직할시-지구로 구성된 재판 체계의 각급 재판과정에서 심문권을 갖는 등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에 1명의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참심원제도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인민참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북한주민은 인민참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재판소구성법 제6조) 구체적인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인민참심원은 죄목만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²⁵³ 북한이탈주민 000은 당 간부를 구타한 후 3일 만에 당시 함흥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 체포되었는데, 군당에서 인민참심원 2명을 임명하여 재판에서 죄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재판시 임명된 인민참심원들이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김일성을 보필하는 간부를 때렸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판사나 검사는 이러한 인민참심원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²⁵⁴ 물론 인민참심

253.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원들은 범죄자들의 감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인민참심원이 판사와 검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알고 있어 그들의 역할과 인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²⁵⁵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인민참심원을 선발하며 이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명색이 인민참심원일 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²⁵⁶ 한편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등은 공개재판인 경우에는 대부분 판사와 인민보안원 등이 참가하여 정확한 죄목이나 증인없이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하였다.²⁵⁷

● 형사재판 실태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재판절차의 실행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절차에 대해 상이하게 증언하고 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형벌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신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예심단계에서 검찰소 검사와 예심원 2명이 교화를 결정하였다고 한다.²⁵⁸ 반면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07년 5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두 달간 예심을 받았으며, 재판소 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

254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1년 5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255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256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257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11월 3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58_ NKHR2010000089 2010-06-08.

사 1명, 검사 1명 등 5명이 자신을 재판하였는데,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재판소 부소장과 인민참심원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⁵⁹

그러나 재판소에서 재판을 거친다고 증언한 경우에도 증언자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성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1998년 1월 청진 포항구역 단련대 구금 중 탈출하다가 체포되어 예심 받고 재판에서 3년형을 언도받았다.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진 포항구역 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구타는 없었으며, 포항구역 재판소에서 검사, 재판장이 있는 곳에 혼자 세워놓고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었다.²⁶⁰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 진입 실패로 2004년 3월 1일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북창군 인민보안서에서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교화소에서 2년형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였다. 서류상 재판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 등은 없었다고 한다.²⁶¹ 또한 북한이탈주민 000은 비법월경죄 및 한국행 시도로 증산교화소에 2003년 7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4일까지 수감되었는데,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교화소 측으로부터 안전원들이 “너는 1년인데 나쁜 물이 든 사람들은 더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1년 5개월 12일이 지난 후 출소하였다.²⁶²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000은 도강하려다 잡혀서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고 시보안서로 넘겨졌다. 증산교화소로 보내지기로 결정되었는데, 탈북자 문제는 재판을 하지 않고 문건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²⁶³

259. NKHR2008000022 2008-11-05.

260.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61.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262.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다수 증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그녀의 오빠가 도강하여 남한사람을 만났다는 죄로 2005년부터 1년 동안 함북 도보위 부 구류장에서 예심을 받았다고 한다.²⁶⁴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기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²⁶⁵ 북한이탈주민 ○○○도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예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⁶⁶

반면 북한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북한의 법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수사기간은 준수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에서의 추가예심환송기간과 제1심 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⁶⁷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는 경우 최장 1개월로 되어있는 예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⁶⁸
- 북한이탈주민 ○○○도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⁶⁹
- 북한이탈주민 ○○○도 노동단련형을 받는 동안 수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⁷⁰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형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간과

263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264_ NKHR2009000066 2009-11-11.

265_ NKHR2010000053 2010-06-29.

266_ NKHR2010000102 2010-07-13.

267_ NKHR2010000015 2010-10-05.

268_ NKHR2010000030 2010-11-23.

269_ NKHR2010000043 2010-11-02.

270_ NKHR2010000053 2010-06-29.

- 예심기간은 준수되지 않은 반면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⁷¹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기소기간,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⁷²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수사기간은 준수되지 않았지만 반면 예심기간과 기소기간,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증언.²⁷³

위의 증언 사례를 보면 수사기간과 예심기간은 준수되지 않는 반면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된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의 준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북한에서 형사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의 준수도 북한 형사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 결과라기보다는 수사과 예심을 거치는 동안 범죄와 형벌을 대부분 확정짓고 기소와 제1심 재판은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정치범재판과 군사재판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과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4조). 그리고 정치범죄의 경우 도·직할시 재

271. NKHR2011000020 2010-05-19.

272. NKHR2010000059 2010-11-30.

273. NKHR2011000021 2010-06-07.

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27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사와 예심상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인민보안부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치범의 경우 수사·예심은 보위부가 관할하지만 재판은 재판소가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도 보위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도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한다. 그리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한다. 보위부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수감 여부도 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²⁷⁴ 마찬가지로 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 000은 예심이 끝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남포시의 경우 남포 시보위부에서, 일반 시군의 경우도 보위부로 이관하고 도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내려와 판결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²⁷⁵

군사재판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호위총국 근무 탈영으로 체포되어 호위총국 내 보위

274.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275.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부 구류장에서 예심 4개월을 받던 중 탈출하다 총알이 다리에 관통하였고 잡힌 후 고문을 당하였다. 호위총국 부대에서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와 검찰관이 동석하였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평양시 강동군 형제산 구역 제4교화소 분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증언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동교화소에는 1년에서 18년형을 언도받은 수감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형법 개정으로 최고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어 모두 5년씩 줄어들었다. 그래서 10년형을 채우고 출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⁷⁶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지역에 따라 개정법률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법률 적용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상소 및 신소·청원 실태

북한 형사소송법에도 판결서에 상소절차를 명시(제353조)하고 있으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경우 비상상소를 규정하고 있다(제384조). 그러나 최고재판소 제1심 재판의 판결, 판정, 제2심 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에 대해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9조). 그리고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로 재심제도를 두고 있다(제403조).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에도 상소제도가 존재하지만 상소할 경우에 오히려 형을 더 받는 현실 때문에 주민들은 이를 기피한다고 한다. 상소할 경우에 예심기간이 길어지는데, 예심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워 차라리 빨리 교화소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⁷⁷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소에 대해 알려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본인이 재판을 받고 단련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예심기간을 빼고 형기를 산정하였으며, 10일간의 상소 기간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²⁷⁸

276.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77.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당국은 신소와 청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법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신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 북한은 신소 및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98년 신소청원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2000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관리일군이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행정처벌법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9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신소와 청원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기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북한대표는 “신소와 청원의 제기는 사회의 최말단 개별적 기관, 기업소로부터 최고 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직접 혹은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구두 혹은 서면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상소나 신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1994년에 000이 재판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여 교화 3년 6개월에서 2년형으로 감형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⁷⁹ 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북한에서 상소나 신소는 역으로 상소자와 신소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신소는 헌법에 명기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제도이나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신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며, 신소한 자에 대해서는

278. NKHR2009000018 2009-03-26; NKHR2009000067 2009-11-12.

279. NKHR2010000096 2010-06-22.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중국에는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된다 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⁸⁰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²⁸¹ 이와 관련 행정처벌법은 부당 신소행위에 대해서는 노동교양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0조). 최근 신소가 효력을 보려면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그저 맨 입에 신소하면 그거는 휴지장이 된다. 신소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며, 자신도 북한 돈으로 대략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²⁸²

● 사면, 집행유예, 형집행정지, 보석 실태

북한에도 사면제도가 존재하는데 특사(特赦)와 대사(大赦)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사란 개별 범죄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개별 범죄자들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²⁸³ 특사와 대사를 실시하는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9년 헌법 개정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절을 신설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특사권을 행사하고 대사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헌법 제103조 제5호, 제116조 제17호, 형법 제53조).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나 당창건일 등의 기념일에 대사가 실시된다고 한다.²⁸⁴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대사는 공화국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그리고 당창건, 공화

280.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1998년 9월 9일, 서울에서 면접.

281. NKHR2011000021 2010-06-07.

282. NKHR2009000021 2009-04-13.

283. 김근식, 『형법학1』, p. 181.

284. NKHR2008000029 2008-12-16.

국 창건일 등의 일정 주년마다 대사가 실시된다.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큰 대사인 경우는 절대 다수가 못 받고 한명이나 두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한다.²⁸⁵

북한은 200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60주년과 10월 10일 조선노동당창건 60주년을 기념해 죄인들의 교화형을 감소하거나 특별 석방하는 대사령을 예고하였으나 비법월경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와 달리 사면규모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범죄자들에 한해 형기를 1년 정도 감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²⁸⁶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특사 또는 대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모친 ○○○이 중국과의 동 밀수로 7년형을 선고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2년의 대사령을 받았다고 증언.²⁸⁷
- 북한이탈주민 ○○○은 1998년 8월 대사에서 2년을 감형받았는데 경제범은 대사를 많이 해주고 있으나 살인죄, 인신매매는 대사가 적다고 증언.²⁸⁸
- 북한이탈주민 ○○○은 1999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 3년형을 선고받아 함흥교화소에 있었는데 특사를 받아서 7개월 만에 조기 출소하였다고 증언.²⁸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대사령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 때 300명(남자 200명, 여자 100명) 정

285_ NKHR2009000067 2009-11-12.

286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39호 (2008.6.5), 152호 (2008.6.24), 200호 (2008.8.29).

287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288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89_ NKHR2010000059 2010-11-30.

도가 함께 나왔다고 증언.²⁹⁰

북한에도 집행유예의 제도가 있다(형법 제51조, 제52조). 그런데 판결정집행법 제37조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1조).

우리의 보석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도는 의료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중병에 걸린 자에 대한 의료처분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제46조).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한다(제47조).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의료처분이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회령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몸이 아파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그는 병보석을 받으면 병원에서 직접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역 내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대신 안전부가 감시를 한다고 증언하였다.²⁹¹

290. NKHR2008000025 2008-11-20.

291.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이와 같은 변호인 선임권이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판의 공정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북한도 헌법 제164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106조). 또한 형사소송법은 “변론은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목적, 위험성 정도, 피소자의 개준성 정도를 근거 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변호를 위한 논고를 규정하고 있다(제327조). 그리고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121조).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옹게 분석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변호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당 정책의 선전자로서 재판심리과정에 당 사법정책의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옹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 정책을 옹호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지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피소자가 범한 죄의 엄중성과 함께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을 깊이 분석론증함으로써 피소자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앞에 진 죄과의 엄중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⁹² 그리고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6조는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8조는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각급 변호사회는 하급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30조 제4호). 또한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심자, 피소자는 스스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재판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9월 전기선을 절도한 죄목으로 처조카가 함경북도 경원(새별)군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

29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p. 76, 207.

데 변호사는 변호를 하지 않고 처조카의 죄행을 폭로하였다고 증언.²⁹³

-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2005년 10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변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교화 가서 성실하게 해서 죄를 깨끗이 씻고 오라”고 하였다고 증언.²⁹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2월 ○○○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한마디도 없었으며, 당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변호가 불필요하다고 증언.²⁹⁵
-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 유통 때문에 2007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²⁹⁶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의 직책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증언도 제기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본인이 증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형기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 “전처가 여기서 생활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생활 한 사람인데 좀 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나?”고 변호해 주었다고 함.²⁹⁷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도강을 죄목으로 헤산시 인

293_ NKHR2010000034 2010-11-02.

294_ NKHR2010000045 2010-09-07.

295_ NKHR20090000410 2009-02-26.

296_ NKHR2010000074 2010-04-20.

297_ NKHR2009000018 2009-03-26.

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피소자는 학생(당시 17세)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변호하였다고 증언.²⁹⁸

다. 행정처벌

북한에서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2심은 판사 3명) 구성된 재판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163조, 재판소구성법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74조). 그러나 실제에 있어 재판소 이외의 다른 기관이, 그것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²⁹⁹ 노동단련, 무보수노동, 강직, 철직, 경고, 벌금 등의 제재를 취해 왔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검열기관과 검찰기관 등을 동원하여 법의 준수 여부와 집행상황을 검열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의 행위를 심사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 방침을 결정하여 왔다. 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강직, 면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무보수노동에 처하는 처분 등이 있으며,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은 검찰에 이송하여 왔다.³⁰⁰ 이와 관련, 북한은 1992년 12월 28일 인민보안단속법을 제정하여 행정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인민보안단속법은 2005년 7월 26일 최종 개정되었다.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단속대상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는 단속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종류로는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의 행정처벌을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제57조). 또한 판결판정집행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벌금, 무보수노동의 부과에 대하여 규정

298. NKHR2011000018 2010-10-05.

299. 북한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8가지가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7조).

300.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646~647.

하고 있다(제9조, 제40조, 제43조).

인민보안단속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다. 우선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주목된다(제6조). 둘째,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할 경우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다(제49조). 셋째, 법질서 위반자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에서는 3일, 시(구역)·군 인민보안소에서는 10일까지로 하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 전염성질환환자는 억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다(제50조). 넷째, 인민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을 검신할 수 있되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다(제52조). 다섯째, 단속처리에 대한 이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단속 처리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단속처리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급 인민보안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기받은 인민보안기관은 15일 안으로 조사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62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은 단속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민보안단속법은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할 경우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억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민보안단속법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앞으로 이 규정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은 2004년 7월 14일 행정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현행 행정처벌법은 2008년 5월 20일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처벌의 종류, 구성요건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부과하는 행정제재이다(제7조). 이 법을 통해 북한에 광범위한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법은 행

정치벌의 종류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둘째, 이 법은 제3장 위법행위에서 행정처벌 대상 행위를 크게 경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제1절),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제2절),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제3절),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제4절)로 구분하고 총 146개 조문을 두고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행정처벌 기관이 다양하다. 행정처벌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 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이 부과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제175조). 반면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행정처벌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은 북한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첫째, 국가는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둘째, 제15조부터 제23조에서 행정처벌의 적용대상과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셋째,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처벌만을 적용하고 있다(제27조). 넷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수 없으며, 권한 밖의 행정처벌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넘기도록 함으로써(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제186조부터 제193조에서 행정처벌의 제기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행정처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일 내에 신소할 수 있다(제198조). 일곱째, 불법적인 체포·구속·구인·억류, 진술 강요, 사건의 과장·날조, 몸 또는 주택의 수색, 재산의 압수·몰수, 공민증과 신분증명서 등의 회수를 ‘인권 유린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제137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무보수노동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다. 전체 146개 대상행위 가운데 31개를 제외한 125개 행위에 대해 무보수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공동생활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노동교양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동생활질서 33개 대상행위 가운데 24개 행위에 대해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II-8〉 북한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행정처벌	대상행위
경고, 엄중경고	계획수행미달·거짓보고행위를 비롯하여 104개
무보수노동	인민경제계획작성 질서위반행위를 비롯하여 125개
노동교양	전력낭비행위를 비롯하여 68개
강직, 해임	불법적인 경영활동행위를 비롯하여 77개
철직	예비물자관리질서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24개
벌금	상표권침해행위를 비롯하여 26개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위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 해임, 강직, 무보수노동, 벌금 등의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핸드폰 사용, 녹화물 유통, 장마당 단속 등과 관련하여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사례들이 상당수 증언되고 있다.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감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7년 9월부터 6개월간 양강도 풍서군의 자신이 일하던 기업소에서 무보수로 근무를 하였다고 증언. 노동의 강도나 분량은 가혹하지 않았다고 함.³⁰¹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6월 중앙당은 함경북도 청진시 교육부 사업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불량 녹화물이 유포되고 있는데 반해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에게 엄중한 경고처벌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증언.³⁰²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8월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 화소에 대한 검열 결과 간부들의 직급이 한 등급씩 떨어지는 강직(降職)처벌이 내려졌다고 증언. 검열 결과 그동안 전거리교 화소 간부들은 상당한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식으로 직위를 이용한 비리를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증언.³⁰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9월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에서는 이혼하려는 부부에게서 50만 원을 받고 이혼을 승인해 준 인민재판소 일꾼이 해임 철직되었다고 증언. 이혼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하려는 부부들은 대체로 40~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바친다고 함.³⁰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가족과 연락을 하다 발각되었지만 자수로 처리하여 북한돈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증언. 인민보안부가 처벌했다고 함.³⁰⁵
- 북한이탈주민 ○○○은 장마당단속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찰대가 식량이나 담배 또는 중국산 물품을 1주일에 1회 정도 단속하며, 발각시 압수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증언.³⁰⁶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당국이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301. NKHR2010000036 2010-11-02.

30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40호 (2008.6.6).

30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98호 (2008.8.27).

30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14호 (2008.9.19).

305. NKHR2010000014 2010-10-05.

306. NKHR2010000093 2010-03-30.

남한 물품을 많이 단속하는데 음식 장사로 단속되면 500원 또는 1,000원 정도 벌금을 낸다고 증언.³⁰⁷

- 북한이탈주민 ○○○은 여행증 발급과 관련하여 허락된 체류기간은 보통 10일이며, 연장을 할 경우 현장에서 해야 하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증언.³⁰⁸
- 북한이탈주민 ○○○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심하면 단련대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라고 증언.³⁰⁹

307_ NKHR2010000089 2010-06-08.

308_ NKHR2010000061 2010-05-18.

309_ NKHR2011000017 2010-06-08.



4



평등권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6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며,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와 제26조).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전국가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도덕적인 자율권과 안전(security)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제반 사회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출신성분 구분 작업

북한 헌법은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제65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당사국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규정된 대로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 다른 주장,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 평등은 완전히 보장되며, 어떠한 인민도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교육, 직업 및 지위, 재산에 기초하여 차별당하지 않고, 모든 인민이 국가와 대중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보고서 제32항).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 주민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을

출신 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 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4월~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1981년 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9〉 주민성분 조사사업 및 주민통제 조치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직계 3대·처가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복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복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작업	1998.2~1998.10	수첩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공민증교체 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22.

●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교육·직업·결혼 등의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6~27%의 중·하위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군중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회사에 편제되어 있지만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개인 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 구독과 외국방송 청취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승진·배급·거주·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식량난 이후 김정일과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³¹⁰ 또한 북한에서 의사였던 ○○○은 성분과 지위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차별에 대해서, 북한의 큰 종합병원의 경우 당 간부들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진료부가 별도로 있다고 증언하였다.³¹¹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장사 등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하고 차별이 심한 보건의 혜택 속에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

310. 북한이탈주민 ○○○,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11. 북한이탈주민 ○○○,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승하기도 한다.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 치하 때의 공직자 가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 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주거·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II-10〉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3 계층	51개 부류	대 우
핵심계층 (전체인구의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텔리, 6·25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당·정·군간부 등용 타계층과 분리 특혜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등에서 특혜조치)
동요계층 (45%)	중·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월남자 가족(제 2·3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8·15 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자, 접대부 및 미신 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3 계층	5개 부류	대 우
적대계층 (27%)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월남자가족(제1부류) 등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제재·감시·포섭대상으로 분류 - 제재: 강제이주, 격리수용 - 감시: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집중적 교양 극소수 계층으로 재분류(자녀)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 420.

〈표 II-11〉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혁명열사유가족·애국열사유가족(1~2%)
핵심군중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기본군중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공군입대자), 신인테리
복잡군중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피난민),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소상인·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미신송배자 가족, 유학자·지방유지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감시대상	과거 지주·중소기업가·부농 가족, 과거 친일·친미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 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투옥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표 II-12〉 복잡군중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 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임.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친구 아버지가 직장 세포비서였는데, 2000년 직장 세포비서가 관리하는 개인 문건에서 국군포로 아들이라는 문건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친구가 저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³¹²

●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의 세습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 관련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처벌과 수직적인 후세대들에 대한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유지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³¹³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 등을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족이 6·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이 있거나 국군포로인 경우에 오지로 추방되거나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확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이다.³¹⁴

북한당국은 성분정책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대외

312. NKHR2009000024 2009-04-20.

313.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nuary 10, 2005), p. 11.

314. 북한이탈주민 000, 2000년 5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성분정책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제도적 차별: 입당과 간부 등용, 교육

북한당국은 그동안 “체제에 한을 품고 있는 자는 3대가 내려가도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당이나 사법기관 근무자 선발 시 출신성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왔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황장엽이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황장엽 망명 직후에 출신성분을 간부 등용과 각종 선발 등에 철저히 적용하였다고 한다.

당이나 사법기관 및 군관(장교) 임용 등에서 당국이 제시하는 출신성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임시키거나 다른 자리로 전보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당·사법기관의 운전수까지도 출신성분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하전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군관의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술부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6·25전쟁 시 한국 편에 가담한 사람들도 등용하는 등 출신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은 북한에서 직업은 태어나면서 이미 다 분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본인은 핵심계층으로 대학 졸업 후 보위부 군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¹⁵ 북한에서 성분과 인맥은 교육과 직업을 배정받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당일꾼과 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구이다. 특히 공안부서에 근무할 경우 성분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직업상의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이 인민보안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6촌

315. 북한이탈주민 ○○○, 2004년 9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촌 이내의 친인척 중 반역자, 교화소에서 복역한 자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경우 인민보안부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본인은 열사가족 할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잘 났다고 한다. 대체로 당일꾼 등도 좋은 직업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교원이었지만 책임비서 못지않게 좋은 집을 주고, 전화를 놓아 주었다고 한다.³¹⁶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할아버지가 반일 애국열사여서 본인은 할아버지 덕으로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주기적으로 유자녀대회를 하는 도당 책임비서가 “부모들이 이런 것을 잊지 말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³¹⁷

당일꾼이나 보위부원은 여전히 문건을 중요시 한다. 능력이 떨어져도 문건이 좋으면 선발된다고 한다.³¹⁸ 그런데 중앙당, 보위부, 호위총국 등은 문건을 중요시하지만 보안부에 대해서는 점차 완화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³¹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지금은 토대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남한과 연관이 되어 토대에 걸리는 사람은 당 기관에 갈 수 없다고 증언.³²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일류급 대학들은 여전히 성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증언.³²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부친이 노병이어서 공산대학에 갈 수 있

316_ NKHR2009000011 2009-03-03.

317_ NKHR2009000052 2009-08-27.

318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319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20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21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었는데 공산대학은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토대가 나쁘면 가지 못한다고 증언.³²²

- 북한이탈주민 ○○○은 돈이 중요해졌지만 당 내부 사업에서 당 내부 문건은 확고하여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증언.³²³
- 북한이탈주민 ○○○은 공장지배인의 경우 예전에는 구역당에서 문건을 통해 성분을 철저히 따졌는데, 현재는 구역당에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구역당에 돈을 바치고 원래 임명된 사람을 제치고 임명되기도 하며, 지배인들은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증언.³²⁴

한편, 최근에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증언들이 계속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외국어학교, 음악대학 등에 진학할 때는 출신성분이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증언. 광복정치라고 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성분이 나빠도 실력이 출중하면 진학할 수 있다고 함.³²⁵
- 북한이탈주민 ○○○은 성분이 좋은 자녀들이 주로 가지만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학교도 간첩행위 등과 같은 것이 아니면 귀국자나 성분이 나빠도 실력이 좋으면 갈 수 있다고 증언.³²⁶
- 2009년 1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일반적으로 토대에 의한 차별은 현재 감소되었다고 증언.³²⁷

322. 위의 증언.

323.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324.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325.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26.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327. NKHR2010000073 2010-10-19.

-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도 현재(2010년)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증언.³²⁸
- 2010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1995년 이후에는 토대보다는 경제력이 중요해지게 되었다고 증언.³²⁹

그렇지만 여전히 성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언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증언자와 같이 온 남성의 경우 실력이 출중하여 시나 도에서 시험을 보면 1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는 간부 집 자식이 훨씬 잘되었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학교에서 저렇게 우수한 학생이 안가면 대학 갈 사람이 없다고 요구하여 청진상업대학에 배치 받았는데, 그 남성이 그런 대학 갈 바에는 가지 않겠다고 포기하였다고 증언.³³⁰
- 북한이탈주민 ○○○은 조선체육대학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은 조선체육대학은 일급대학으로 토대가 나쁘면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반면, 토대가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다고 증언.³³¹
- 시택의 토대가 공화국영웅세대라고 한 북한이탈주민 ○○○은 식량배급이 안 되어도 영웅세대는 식량배급을 받는다고 증언.³³²
- 북한이탈주민 ○○○은 돈(뇌물)이 중요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당 간부 등용에 있어서는 토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증언.³³³
- 2007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현재 성분관계를 더

328_ NKHR2010000071 2010-11-09.

329_ NKHR2010000066 2010-05-11.

330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331_ NKHR2008000002 2008-07-04.

332_ NKHR2008000010 2008-08-08.

333_ NKHR2008000018 2008-09-11.

따지는 것 같다고 증언.³³⁴

- 북한이탈주민 ○○○은 광복정치를 내세워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 증언자는 “지난날의 과거는 따지지 않고 본인이 당에 충실하면 그걸 현행으로 보고 다 출세해주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당적으로 북한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실제 나를 간부로 등용하자면 신원조회라는 게 있다. 신원조회 들어가면 반드시 문건을 따진다”고 증언.³³⁵

출신성분에 따른 입당이나 간부등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히 심하지만 대학배치나 직장배치, 승진에 있어 차별은 심하지 않다는 증언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 2005년 7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인 2005년에 대학진학에 있어 차별은 보통이었다고 증언.³³⁶
- 2009년 10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입당과 간부등용 및 승진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하였지만 대학진학과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은 보통이었다고 증언.³³⁷
- 2010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입당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하였지만 대학진학, 직장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다소 약하였다고 증언.³³⁸

증언자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과 거주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입당이나 간부등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334. NKHR2008000019 2008-09-16.

335. NKHR2009000016 2009-03-19.

336. NKHR2010000032 2010-11-23.

337. NKHR2010000034 2010-11-02.

338. NKHR2010000044 2010-11-02.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진학이나 직장배치 및 승진에 있어 북한주민들 간에 평등이 구현되고 있다기보다는 경제력과 뇌물이 우선시되는 사회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차별 사유 가운데 탈북행위 및 전과(前科) 경력에 대한 차별,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차별, 귀국자 및 화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탈북행위 및 전과 경력에 따른 차별〉

탈북(도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용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탈북행위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이나 탈북으로 인한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이유로 자신이 대학진학과 승진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³⁹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도강으로 인해 형부가 승진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다고 증언. 형부가 안전원이었는데 자신의 도강이 형부의 승진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언니 부부와 자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함.³⁴⁰
- 북한이탈주민 ○○○은 부모 및 고모의 행방불명으로 2008년 자신이 군입대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⁴¹

339_ NKHR2010000036 2010-11-02.

340_ NKHR2010000032 2010-11-23.

341_ NKHR2010000044 2010-11-02.

- 북한이탈주민 ○○○은 작은 아버지가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대학진학과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⁴²
- 북한이탈주민 ○○○은 남동생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군 입대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³⁴³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도강했던 경력 때문에 군입대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³⁴⁴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국군포로여서 토대로 인해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으며, 오빠는 입당도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 아버지가 탄광에 배치되었으니 자식들도 그렇게 직장을 배치받았다고 함.³⁴⁵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남한출신이라 학교 공부를 잘 했어도 항상 차별을 받았고 대학은 성분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 입당도 여러 번 문건이 올라간 끝에 겨우 할 수 있었다고 함.³⁴⁶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한출신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대학진학 및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⁴⁷
-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가 남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

342. NKHR2010000061 2010-05-18.

343. NKHR2010000055 2010-11-30.

344. NKHR2010000041 2010-10-26.

345. NKHR2009000029 2009-05-01.

346. NKHR2009000046 2009-07-28.

347. NKHR2010000065 2010-10-12.

이 군대를 거부당했다고 증언.³⁴⁸

- 북한이탈주민 ○○○은 1986년 평양외국어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아버지가 남한출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취소당했다고 증언.³⁴⁹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2009년 직장 동료가 입당에 있어 차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⁵⁰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남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오빠가 입당과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고 증언.³⁵¹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남한출신자라는 이유로 형이 입당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다고 증언.³⁵²
- 북한이탈주민 ○○○은 시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입당, 직업, 승진, 결혼 등에서 차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⁵³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남한출신자이었는데 그 때문에 본인이 예술전문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고 증언.³⁵⁴
- 북한이탈주민 ○○○은 외할머니가 남한출신이어서 아버지가 안전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고 증언.³⁵⁵
-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가 남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았으며 군입대를 거부당했다고 증언.³⁵⁶

348_ NKHR2011000021 2010-06-07.

349_ NKHR2010000019 2010-10-12.

350_ NKHR2010000040 2010-10-26.

351_ NKHR2010000051 2010-07-13.

352_ NKHR2010000064 2010-05-11.

353_ NKHR2011000022 2010-06-24.

354_ NKHR2010000065 2010-10-12.

355_ NKHR2010000082 2010-06-22.

356_ NKHR2011000021 2010-06-07.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

월남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고 한다. 특히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며 이밖에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시할아버지가 50년도 월남한 월남자 가족이라 토대가 나뉘었는데, 시아버지도 입당하지 못하고 남편도 입당하지 못하고 군대도 가지 못하였다고 증언.³⁵⁷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큰 아버지가 월남하여 출신성분이 나뉘었고, 이러한 토대 때문에 시집가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증언. 처녀 시절에 입당하려고 열심히 하였지만 입당하지 못하였다고 함.³⁵⁸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월남자 가족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어디에서도 쓰여질 수 없으며 입당도 하지 못한다고 증언.³⁵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고모가 1950년 월남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입당과 대학진학, 결혼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다고 증언.³⁶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1996년에 월남자 가족이 군입대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⁶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할아버지의 친척이 월남자라는 이유로 2004년 1월 자신이 대학진학을 함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⁶²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월남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357_ NKHR2009000023 2009-04-16.

358_ NKHR2009000047 2009-07-30.

359_ NKHR2008000006 2008-07-24.

360_ NKHR2010000013 2010-09-14.

361_ NKHR2010000054 2010-06-22.

362_ NKHR2010000097 2010-06-15.

처음에는 부정적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증언하였다.³⁶³ 한편, 2010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월남자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⁶⁴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차별〉

북한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당이나 대학진학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친척이 많으면 좋지 않다면서, 그는 중국에 있는 친척 때문에 군대도 가지 못하였다고 증언.³⁶⁵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친척이 많다는 이유로 입당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⁶⁶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형이 2000년 대학진학에 있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³⁶⁷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당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⁶⁸
- 북한이탈주민 ○○○은 부모가 중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입당과 대학진학, 승진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⁶⁹
- 북한이탈주민 ○○○은 간호원 양성소에 지망했으나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³⁷⁰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의 토대는 좋았지만 어머니가 중

363_ NKHR2010000072 2010-10-19.

364_ NKHR2010000014 2010-10-05.

365_ NKHR2008000018 2008-09-11.

366_ NKHR2010000069 2010-10-26.

367_ NKHR2011000017 2010-06-08.

368_ NKHR2011000026 2010-10-26.

369_ NKHR2011000022 2010-06-24.

370_ NKHR2010000008 2010-05-25.

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승진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다고 증언.³⁷¹

〈귀국자 및 화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북한당국은 귀국자(북송재일교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차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소학교 때 선생님이 찢어진 눈으로 보더니 “이거, 자본주의에서 온 새끼 나와라”라는 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³⁷²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조부모가 귀국자라는 이유로 사춘 오빠가 입당과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³⁷³ 반면,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재일교포, 즉 귀국자들에 대해서는 당간부, 행정간부를 비롯하여 간부에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행정간부는 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³⁷⁴ 북한당국은 귀국자들을 산간오지에 배치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귀국자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 귀국 후 함경남도 리원군에 배정되었는데 후회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였다.³⁷⁵

화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당 외에 별다른 법제도적인 차별은 없다고 한다. 이는 화교들의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화교들은 입당 외에 차별이 없으며,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화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증언하였다.³⁷⁶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남편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시어머니도 북한사람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중국사람이어서 남편이 공민증이 아닌 외국인증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 면에서 좋지 않은 시각을 받았을 뿐 특별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³⁷⁷

371. NKHR2011000005 2010-08-10.

372. NKHR2009000012 2009-03-05.

373. NKHR2010000018 2010-10-05.

374.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375. NKHR2010000056 2010-11-16.

376. NKHR2011000072 2010-10-19.

● 출신성분과 형량, 결혼 등 사회적 차별

한편 북한은 성분에 따라 범죄 형량까지도 달리하는 성분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 판결시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총살형을 계속 지켜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또는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보위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명확해지면 인민보안부에서 혐의자 가계기록부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부는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형벌 부과 시 성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가족 중 당원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 교양·개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처리시 보위부참고규칙들이 있는데, 당원 9명 이상인 집안일 경우 3년형을 감하여 준다. 그리고 김일성 표창, 수훈자도 참고한다고 한다.³⁷⁸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재판에 앞서 안전 회의를 한다. 이 사람을 죽이나 마느냐 하는 안전 회의를 할 때 본인 가족이 열사가족의 애국 열사증을 내놓음으로써 형기를 좀 봐주게 된다고 한다.³⁷⁹

출신성분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000은 토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심하다고 증언하였다.³⁸⁰ 반면, 출신성분이 결혼에 많은 영향

377_ NKHR2011000023 2010-06-08.

378_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79_ NKHR2009000066 2009-11-11.

380_ NKHR2010000031 2010-11-09.

을 미치지만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10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토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약하였다고 증언하였고,³⁸¹ 2010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발전하려는 사람은 결혼에 있어 토대를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토대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³⁸² 2010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토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하였다고 증언하였다.³⁸³

●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출신 사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층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휴전선)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³⁸⁴

또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해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 이주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출신성분이 나빠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급 당일꾼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꾼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주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수시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우리는 ‘쌍놈’들이라고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다.³⁸⁵

381. NKHR2010000034 2010-11-02.

382. NKHR2010000045 2010-09-07.

383. NKHR2010000036 2010-11-02.

384.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평양에서 출생하였으나 아버지가 남한출신이고, 직장생활과정에서 불미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신의주로 이주하여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자, 탈북자, 성분 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평양에서 추방 및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평양소개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추방된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³⁸⁶

● 북한당국의 평양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북한당국은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을 다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수도평양시관리법 제7조). 북한주민이 평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수도평양시관리법 제28조).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성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평양시 거주자들은 3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1·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출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계층 구분 때문에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치적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수반의 평양방문 관련 환영 군중으로 동원될 때도 1·2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참석케 하고 있다. 따라서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며 일반군중대회의 경우에만 겨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일반군중대회에 참가할 때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1·2부류 사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앞자리에 배치되는 반면, 3부류 사람들은 가장 뒷줄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있도록 하고 있다.

385.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386. 북한이탈주민 000, 2002년 8월 3일, 서울에서 면접.

이와 같이 3부류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평양에 살고 있어도 평양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 입대는 물론 노동당 입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5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통치자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1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제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3조)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18조~제2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도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사상 및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와 제22조)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다루어지고, 종교의 자유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가.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모든 사람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공공질서와 공중보건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유엔 인권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자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의 거주와 이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이 특정지역에 신분등록을 함으로써 배급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이 당국의 허가사항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외부의 위협요인이나 내부 동요요인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여행 실태〉

북한주민은 국내이동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여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여행규정’ 제6조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공민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여행증은 외부의 위협한 상황으로 인한 안보목적으로 필요하며 주민들의 여행자유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행증 발급 목적은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의 준동을 막자는 것, 다시 말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 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국내외 이동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접하고 비교의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공민은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³⁸⁷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이들의 경우 7살까지는 출생증, 소학교 학생부터는 부표가 있어야 동행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³⁸⁸ 일반주민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직계가족의 거주지역까지만 여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한 사적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꾼이 소속

387. NKHR2011000022 2010-06-24.

388. NKHR2010000018 2010-10-05.

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해당 거주지역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양시민증 및 평양 임시거주증³⁸⁹이 없는 사람들은 평양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주민이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 등의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도(道)에서 발급하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도(道)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일반 여행증과 더불어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연선에 갈 때는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³⁹⁰ 실제로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국경지대로 가기 위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한다.³⁹¹ 그리고 국경지역 주민의 경우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담당 보위부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³⁹²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역을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도(道)에 거주하는 주민도 도(道)의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의 최종 심사기관은 거주지역 도(道)인민위원회 2부이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여행 약 2주전에 경리과를 통해 해당 단위의 직장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는 1차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지역 인민보안부 증명서 발급과에 여행신청서를 3일 전에 제출하여 위험분자,

389. 평양 임시거주증은 지방 출신 대학생, 지방출신 평양 1중학교 학생, 평양에 주둔하는 군인, 평양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기업소 일꾼에게 발급되며 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390. NKHR2010000073 2010-10-19.

391. NKHR2010000069 2010-10-26.

392. NKHR2010000062 2010-10-12.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 비서를 통해 여행증이 교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을 거쳐 인민위원회 2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증언하였다. 작업반장 → 직장통계원(생년월일, 목적지, 내용 등) → 기업소 기요원³⁹³ → 인민위원회 2부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증언한다. 여행증의 발급은 각 지역단위로 일정한 숫자 내에서 행해진다. 담당 보안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행증 번호와 대조하여 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통해 여행증을 검사한다고 한다.³⁹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공민은 인민반을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보안서 분주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³⁹⁵

여행증의 경우 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 정도, 비통제구역인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발급되는데, 모두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³⁹⁶ 특수지역은 일반 여행증과 달리 특수번호가 부여된다고 한다.³⁹⁷ 중앙 차원에서는 정형화된 절차가 있겠지만 실제 지역단위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소속단위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통행증에 그려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도록 되어 있으며, 당국이 수시로 여행증에 포함된 줄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위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행증 제도로 인해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것은 여행 질서를 위반할 경우 집결소라는 수용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사회안전단속의 대상 중 하나

393_ NKHR2010000071 2010-11-09. 기요는 중요한 기밀을 의미한다.

394_ NKHR2010000069 2010-10-26.

395_ NKHR2010000022 2010-06-24.

396_ NKHR2010000062 2010-10-12.

397_ NKHR2010000061 2010-05-18.

로 여행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 없이 또는 여행증명서를 고쳐 여행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행정처벌법 제167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반장은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를 담당보안원에게 신고한다.³⁹⁸ 여행 지역에 도착하면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는데 보통 10일간이고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³⁹⁹

그러나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이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한다. 법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현실로 인해 여행에 대한 규제는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증명서는 원칙상 무료발급이다. 그러나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요원이 발급신청서를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절차대로 여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사 등으로 인한 이동이 증가하면서 돈이나 담배 등을 주고 여행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⁴⁰⁰ 발급신청서를 갖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완성해주는 사람이 기요원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보통 기요원에게 뇌물을 준다. 기요원에게 주는 뇌물은 접수자의 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⁴⁰¹ 여행증을 발급해 주는 기요원들은 주민이 연줄을 활용해 돈을 주면 해당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여행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요원들은 여행증 용지를 돈

398.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399. NKHR2010000061 2010-05-18.

400. NKHR2010000011 2010-09-14; NKHR2010000036 2010-11-02; NKHR2010000071 2010-11-09.

401. NKHR2010000071 2010-11-09.

을 받고 파는 형식으로 돈벌이를 한다.⁴⁰²

실제로 절차를 밟으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는데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일반 여행증의 경우 현금과 뇌물로 담배 10갑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⁰³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양 가는 여행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2만 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⁴⁰⁴ 또한 여행증명서 청원자는 기요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보안서, 보위부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주어야 한다.⁴⁰⁵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탈북하거나 여행 중 범죄를 저지르면 여행증명서의 발급 실무를 담당한 기요원, 관할지역 보안서 지도원, 보위부 지도원에게도 책임추궁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족 중에 탈북자로 추정되는 실종자 및 수감자가 있으면서, 여행목적이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에 보안서 지도원이나 보위부 지도원에게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요원에게 바치는 뇌물의 1~3배 수준이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양의 장마당에서 여행증을 구입하여 국경연선까지 왔다고 증언한 사례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도 청진 장마당에서 평양 가는 여행증이 거래된다고 증언하였다.⁴⁰⁶

2000년대 이후 주민의 이동이 기차보다는 버스나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행증 발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의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되면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⁴⁰⁷ 이외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여행증과 관련된 불법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402_ NKHR2010000087 2010-08-03.

403_ NKHR2010000043 2010-11-02.

404_ NKHR2010000073 2010-10-19.

405_ NKHR2010000017 2010-06-08.

406_ NKHR2010000011 2010-09-14.

407_ NKHR2010000004 2010-05-25.

- 북한이탈주민 ○○○은 발급 시간이 길어져서 뇌물을 바치니까 여행증이 발급되었다고 증언.⁴⁰⁸
- 북한이탈주민 ○○○은 1996년이나 1997년에는 여행증 발급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증언.⁴⁰⁹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10월경 여행증 없이 혜산에서 평양 가는 기차 안에서 단속에 걸려 승무안전원에게 뇌물 2,000원을 주고 무마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⁴¹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뇌물액수가 증가하여 여행비용이 2배로 소요되었다고 증언.⁴¹¹
- 북한이탈주민 ○○○은 일반인들은 여권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한다고 증언. 그리고 그는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친척이 있어야 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증언.⁴¹²
- 북한이탈주민 ○○○은 여행증 발급은 규정상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발급이 늦어져 뇌물을 주자 신청 즉시 당일로 여행증을 발급받았다고 증언.⁴¹³

기차를 타는 경우 여행증이 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행질서를 관장하는 보안원들이 여행증 미소지자를 상대로 돈을 받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⁴¹⁴ 평양행 열차의 철도 보안원들도 물건을 몰수하여 착복하거나 뇌물을 받고 살아간다. 철도 보안원들은 수시로 수상한 짐을 검열하는데 그 때마다 수십 명씩 단속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술

408. NKHR2010000079 2010-04-20.

409. NKHR2010000100 2010-07-13.

410. NKHR2011000005 2010-08-10.

411. NKHR2010000097 2010-06-15.

412. NKHR2011000013 2010-06-08.

413. NKHR2011000017 2010-06-08.

414. NKHR2011000005 2010-08-10.

이나 담배 등을 뇌물로 주면서 단속을 피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 주민들의 유동이 급증하고 기차를 통해 여행하려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암표를 사고파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경우 보안원들의 단속으로 여행증이 필요하지만 기차 이외의 이동수단으로 도내에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회적 유동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와 비례하여 뇌물 수수 등 하급관료들의 부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국이 하급관료들의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는 여전히 검열이 심하므로 육로를 통한 이동이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여행객들은 대체로 여행증 없이 다닌다고 한다. 만일 여행 중 검문에 걸릴 경우 이들은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여행증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나 안보상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을 통해 여행이 묵인됨으로써 사실상 여행통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전히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난과 간부들의 부패로 돈만 주면 평양과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증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주민이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열차 이외에는 마땅한 공공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돈벌이 수단으로써 기관 소속의 트럭이나 자동차가 이용된다. 이러한 차는 일명 ‘씨비차(씨비스차의 줄임말)’라고 하며, 영업용으로 공인된 차가 아니라 각 직장 단위에 소속된 차량들이다. 기관의 운전사들은 차비를 받고 사람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정지역까지 이동시켜 준다.⁴¹⁵ 심지어 군대, 인민보안부, 국가안

전보위부 등도 씨비차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¹⁶

이러한 여행 풍속도로 일명 ‘몰이꾼’이라는 호객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함흥과 사리원을 왕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려다 보면 사람들을 차량에 데려다 태우는 일명 ‘몰이꾼’이 등장한다. 그는 한 차에 승객들을 다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다 태우면 5~8천 원의 현금을 받는다. 각 차량들은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몰이꾼을 보통 1~3명 가량 고용한다. 저마다 자기 차에 더 태우려는 경쟁이 치열하다.⁴¹⁷

식량구입 혹은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적당한 용무가 있는 사람과 동행할 경우 통행증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분보증이 되는 경우에 대해 동반자를 인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여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행객들은 이동 도중의 신분 단속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숙박검열도 받게 된다. 숙박검열은 군 보안원들이, 대기숙박(민박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민증 혹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⁴¹⁸ 이러한 검열은 특별 경비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이 기간에는 매일 검열이 이루어진다.⁴¹⁹ 특히 지역에서 도주자가 발생했거나 해당지역에 특별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검열이 이루어진다. 국경지역에는 수시로 숙박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²⁰ 북한이탈주민 000은 숙박검열은 당연히 하며, 지방마다 다른데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숙박검열이 심하지 않지만 함경북

415. 『데일리NK』, 2010년 10월 26일.

416.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8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417.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5호 (2006.8.30).

418. NKHR2011000017 2010-06-08. 그는 1일 숙박비용이 1,500원이라고 증언함.

419. 양력설, 음력설, 김정일 생일(2.16), 김일성 생일(4.15), 정전협정체결일(7.27), 청년절(8.28), 정부수립일(9.9), 당창건일(10.10)이 특별경비주간이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좋은벗들, 2006), pp. 140~141.

420. NKHR2010000024 2010-10-19.

도 무산군과 같은 국경지역은 검열이 심하다고 증언했다.⁴²¹

숙박등록질서를 위반한 자는 벌금이 부과되며,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비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해지는데(행정처벌법 제132조), 숙박등록질서 위반 행위 단속은 인민보안기관이 실시한다(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

〈해외여행 실태〉

북한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취업 및 공무상 장기체류와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 등 2가지로 분류된다. 별목, 건설, 봉제, 요식업 등 해외취업이 확대되면서 장기체류 국외이동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기회는 사상적으로도 인정받은 일부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주어지며, 일반적인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²² 국외이동은 국경지역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 받아야 가능하다. 북한 출입국법(1999) 제2조는 “출입국 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려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 같은 해당 출입국증명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는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합의서(1998.7)〉를 체결하여 양국 주민들의 국경이동을 관할하여 왔다. 합의서 제3조 3항은 “두 나라 국경지역의 시, 군, 현, 출입국 사업기관과公安기관 책임일꾼들은 친척방문으로 상대측 국경지역에 려행하려는 국

421. NKHR2010000040 2010-10-26.

422. NKHR2011000013 2010-06-08.

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을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국경통행증(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을〉)을 내어주며, 이때 … 주민국경통행증에는 각기 규정된 전용도장을 찍어준다. 국경지역 주민들의 친척방문을 엄격히 검토하여 비준함으로써 상대 측 지역에 가까운 친척이 있을 때에만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쌍방 국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친척에 속하지 않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초청통지서〉에 의하여 발급한다. 가까운 친척의 범위와 〈초청통지서〉의 양식, 사용방법은 쌍방 국경안전, 공안총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경안전, 공안총대표와 부총대표들은 국경지역에서 제기되는 사업처리를 위하여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1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국경통행증(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갑〉)을 내어줄 수 있다. 조·중 국경지역을 드나드는 차량들은 〈자동차 국경통행증〉이 있어야 하며, 그에 지정된 통행지점으로만 드나들며 상대측 국경 내에서는 지정된 도로와 지역 안에서만 다닐 수 있다.

북한주민의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경우 만 45세 이상 범죄기록이 없는 공민증 소지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 보위부 외사과는 70세 이상 여행금지, 직계가족 동반 여행금지를 내규로 정하고 있다.⁴²³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은 남자는 49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이 되어야 여권이 발급된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부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부 외사지도원이 최종

423.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 여행자 실태,” 비공개 내부문건(2007).

검토한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화국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 날짜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고 한다.⁴²⁴ 최근에는 외화난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당국은 중국 여행자들에게 식량이나 중국 화폐를 많이 가져오도록 교육한다고 한다.⁴²⁵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도강증을 받았는데, 담당 보위부원에게 신청하면 시 보위부 외사과에서 접수하여 시 보안서에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지,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 후 도 보위부 외사과, 국가안전보위부 2국을 거쳐 승인이 나며 돈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⁴²⁶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북한당국이 밝힌 외국여행 신청 및 기각 실태는 <표 II-13>과 같다. 또한 북한당국의 답변에 따르면 기각은 다른 나라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한다.

<표 II-13> 해외여행 기각 실태

연 도	신청건수	기각건수
1998	17,440	65
1999	29,875	104
2000	35,650	91

이러한 북한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의견서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제19항). 또한 위원회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외국여행 허가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를

424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425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49호 (2010.7.5).

426_ NKHR2010000069 2010-10-26.

폐지하고 협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개별적 사안에만 이들 제도를 한정 하도록 권고하였다(제20항).

그런데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여행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전에는 나이제한, 성분제한 등을 통해 숫자가 제한되었는데, 2003년 12월 김정일은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여행을 허가해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⁴²⁷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경우 국경지역통행증이 발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내륙에 사는 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3개월 유효의 여권이 발급된다고 한다.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지역은 중국친척의 초청장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경우 명단을 등록 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친척이 있더라도 전산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측의 친척도 북한주민을 만날 수 없으며, 북한주민도 중국으로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단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강증이 발급된다. 대개 국경무역을 하는 경우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의 도강증이 발급된다.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⁴²⁸

중국 방문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실제로는 한 달 정도의 체류 도장밖에 찍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 달 연장을 원할 경우 중국 공안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있는 친척의 초청장뿐만 아니라 북한돈 150만 원 정도를 바쳐야 한

427.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42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7호 (2010.11.10).

다고 증언하였다.⁴³⁰ 방문 희망자는 공식적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관련자에게 뇌물 혹은 급행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행증을 소지한 북한주민은 통행증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 와서 이에 상응하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⁴³¹ 중국의 친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돈을 마련할 다른 방도가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여권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그리고 여행자유권 등 3가지가 있는데, 외교관과 특수기관의 사람들이 외교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한다. 당 기관이나 공작부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교여권이 발급된다.

귀국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⁴³² 원칙적으로 공무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자는 자녀를 한 명만 데려 갈 수 있으나, 2003년 7월에 능력이 있으면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방침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은 여전히 데리고 갈 수 없지만, 중학생은 2명 모두 데려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해외동반 자녀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반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실태 및 강제추방〉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 없이 주민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민이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2004년 개정형법 제149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 죄)는 “돈 또는 물건을 주거

429.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430. NKHR2010000069 2010-10-26.

431. NKHR2011000013 2010-06-08.

432.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2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의 증언처럼 교화소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직업과 거주지가 제한되고 감시대상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이 묵인되고 있다고 한다.⁴³³ 이 경우 시 인민위원회 담당자에게 줄 1만 원 정도의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⁴³⁴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신이 집을 팔 때 사는 사람을 먼저 동거인으로 등록해 놓아 시비 거리를 없앤 다음 인민위원회 주택경영부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바꿨다고 증언하였다.⁴³⁵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라진·선봉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1994년에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들이 발생하면서 강

433. NKHR2010000095 2010-03-23; NKHR201000004 2010-05-25; NKHR2010000047 2010-07-27.

434. NKHR2011000023 2010-06-08.

435. NKHR2010000012 2010-09-14.

제추방의 사유도 복잡해지고 있다. 먼저 탈북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중에 남한에 간 것이 발각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추방하기도 한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아버지의 도강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강제추방 당하였으며, 아버지는 교화소에 구금되었다고 증언.⁴³⁶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가족 중 2명이 도강(중국)했는데 중앙그루뵈의 검열에 의해서 추방당했다고 증언.⁴³⁷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탈북자 증가로 인해서 강제추방도 증가한다고 증언. 그는 도강해서 2회 이상 발각된 사람들은 가족 전체가 추방당한다고 증언. 또한 그는 추방당했다가 몰래 다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증언.⁴³⁸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아들이 한국으로 도주하여 가족들 모두 강제추방 당했다고 증언.⁴³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보통 한국에 친척이 있거나 중국, 한국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강제추방을 당한다고 증언.⁴⁴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강도 여자가 중국 남자와 좋아하게 되어 중국 왕래를 자주하다가 발각되어 강제추방 당한 경우가 있다고 증언.⁴⁴¹

CD 유통 및 시청행위, 핸드폰 사용 등 정보유통에 대해서도 강제추방을 실시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김정일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출생지, 기쁨조 등)을 몰래 보다가 단속반에게 발각되어 추방당했다고 증언.⁴⁴²

436_ NKHR2010000044 2010-11-02.

437_ NKHR2010000045 2010-09-07.

438_ NKHR2010000062 2010-10-12.

439_ NKHR2010000081 2010-04-06.

440_ NKHR2011000013 2010-06-08.

441_ NKHR2010000042 2010-10-26.

- 북한이탈주민 ○○○은 4가구에서 각 1명씩 모여 한국 CD-R을 보다가 4가구 모두 추방되었다고 증언. 443
- 북한이탈주민 ○○○은 2002년도부터 한국 CD-R 때문에 시범적으로 처형(총살) 또는 추방을 많이 한다고 증언. 444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한국 CD-R을 200개 정도 수입, 북한 내에서 판매했는데 드라마, 단부작 영화, 섹스(포르노) 등 다양한 상품이었다고 증언. 그리고 그는 만일 누구든 한국 CD-R을 팔다가 걸리면 교화소에 가거나 강제추방당한다고 증언. 445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될 경우 무기교화형이나 강제추방에 처해진다고 증언. 446

북한이탈주민 ○○○은 도당 책임비서가 주재하고 재판소, 검찰소, 보안소, 보위부에서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추방을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 447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이라는 동네 사람이 2007년 함경남도 삼수갑산으로 추방당하였는데, 이러한 추방이 발생하면 인민반 회의를 하여 추방사실을 공개하고 경각심을 준다고 한다. 448 북한은 밀수,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인신매매를 한 부인을 숨겼기 때문에 가족이 강제추방 당했다고 증언. 그는 2005년 1월 10일 10가구가 함경남도 수동구로 강제추방 당했고, 집을 무상몰수 당했다고 증언. 또한 그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누군가 강제추방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단지 안타깝게 봤다는 반응만 보인다고 증언. 449

442. NKHR2010000037 2010-11-16.

443. NKHR2010000043 2010-11-02.

444. NKHR2011000005 2010-08-10.

445.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446. NKHR2010000044 2010-11-02.

447. NKHR2010000097 2010-06-15.

448. NKHR2009000066 2009-11-11.

- 북한이탈주민 ○○○은 미성년자 인신매매로 인해 가족이 모두 추방당했다고 증언.⁴⁵⁰
- 북한이탈주민 ○○○은 배우자가 인신매매 범죄자였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추방당했다고 증언. 그는 추방되었더라도 대부분 법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다시 돌아온다고 증언.⁴⁵¹

이산가족 찾기, 도강 주선 행위 등 남한과 연계된 일탈행위도 강제 추방의 요인이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도 아들이 군대에서 대남공작의 무를 띠고 활동하다 체포된 후 변절 기자회견을 했다고 부모가 그 날 이후 실종되었다고 증언.⁴⁵²
-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의 형이 이산가족 찾기에 관여하여, 보위부 감시를 받던 중 2006년 12월 사라졌는데, 그 후 시집과 남편 가족들도 추방되었다고 증언.⁴⁵³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 혜산에서 어떤 여자가 한국과 연계하는 일을 하여 교화형을 언도받았는데, 남편과 아들은 추방당하였다고 증언.⁴⁵⁴
- 북한이탈주민 ○○○은 북송교포인 ○○○이 한국과 연결하여 북쪽에 있는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다 발각되어 2007년 봄 무산에서 함남 영광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⁴⁵⁵
-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 당사자는 교화소에 가고, 그 가족들은 모두 강제추방을 당한다고 증언.⁴⁵⁶

449_ NKHR2010000026 2010-10-26.

450_ NKHR2010000032 2010-11-23.

451_ NKHR2011000004 2010-03-23.

452_ NKHR2009000013 2009-03-11.

453_ NKHR2009000049 2009-08-07.

454_ NKHR2009000054 2009-09-17.

455_ NKHR2009000065 2009-11-10.

한편 탈북자들은 북한이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주민들을 강제추방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아버지가 만 2년간 결근일수가 기준치(90일)를 초과하여 1989년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실시된 검열에서 강제추방자로 선정되어 가족이 평양 모란봉 구역으로부터 양강도로 추방당했다고 증언.⁴⁵⁷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명간군 장덕리가 평양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집단거주촌이라고 증언.⁴⁵⁸
- 북한이탈주민 ○○○은 사유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규정되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버지를 먼저 잡아가고, 2달 정도 후에 인민보안부에서 그의 가족을 다 잡아갔다고 증언.⁴⁵⁹
- 북한이탈주민 ○○○은 소련 유학 후에 주체사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증언.⁴⁶⁰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적지관리소 물품담당이었는데 물품을 빼돌리다 적발된 후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인이 되었고, 이후 그의 가족은 병신들(장애인) 때문에 나라가 망신당한다는 이유로 양강도 삼지연군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⁴⁶¹
- 북한이탈주민 ○○○은 가택수색시 국가물건이 발견되어 가족 전체가 추방당했다고 증언.⁴⁶²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 당했고, 가족들은 강제추방 당했다고 증언. 다만 남편의 형

456. NKHR2011000013 2010-06-08.

457. NKHR2010000006 2010-05-25.

458. NKHR2010000033 2010-11-09.

459. NKHR2010000036 2010-11-02.

460. NKHR2010000037 2010-11-16.

461. NKHR2010000039 2010-11-16.

462. 위의 증언.

- 이 동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평양 중앙당에 신소를 제기해 누명이 벗겨져 가족들은 귀가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증언.⁴⁶³
- 북한이탈주민 ○○○은 불법장사를 하다 체포되어 본인은 재판 후 교화소에 갔고, 가족은 추방당했다고 증언. 그리고 그는 2005년도에 회령시에서 중앙당 '비사그루뻘'가 불법 행위를 한 300세대를 적발하여 추방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⁴⁶⁴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어머니가 인민반장과 다투었는데 인민반장이 안전부에 신고하여 재판도 없이 자신의 가족을 도보로 7~8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농촌으로 추방했다고 증언.⁴⁶⁵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 아버지의 비법행위로 인해 처벌받던 중 '중앙그루뻘'에게 격렬히 반항하다가 강제추방 당했다고 증언.⁴⁶⁶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성매매(매음)를 하다가 적발되어 그 가족(어머니, 오빠)이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강제추방 당했다고 증언.⁴⁶⁷
 - 북한이탈주민 ○○○은 빙두(마약의 일종) 관련 범죄자 가족들도 강제추방 당한다고 증언.⁴⁶⁸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남편 친구가 사람을 때려서 사망케 하여 살인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아 교화소에 갔고, 남편 친구의 가족들은 황해남도 은천군으로 추방당했다고 증언.⁴⁶⁹
 - 북한이탈주민 ○○○은 불교 신자인 이웃(평양 고무공장 지배인)이 종교 때문에 강제추방 당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⁴⁷⁰

463_ NKHR2010000043 2010-11-02.

464_ NKHR2010000053 2010-06-29.

465_ NKHR2010000060 2010-05-18.

466_ NKHR2010000063 2010-05-18.

467_ NKHR2010000102 2010-07-13.

468_ NKHR2011000004 2010-03-23.

469_ NKHR2011000023 2010-06-08.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에서는 연 2회(봄/가을) 주기적으로 강제추방을 실시한다고 증언.⁴⁷¹
- 북한이탈주민 ○○○은 이때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강제추방 인원 및 세대수를 정해서 내려 보내고 이것을 보안부, 검찰소, 당기관 등이 그대로 집행한다고 증언.⁴⁷²

나.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인의 알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 및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9조). 또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보추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제19조).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 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67조 제1문)”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키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

470. NKHR2010000096 2010-06-22.

471. NKHR2010000066 2010-05-11.

472. NKHR2010000097 2010-06-15.

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 할 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언론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일성·김정일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언론과 정보통제〉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1999년 형법은 사회질서를 핵심하게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와 주동자는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하였다(1999년 형법 제103조). 2004년 4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의 수집·보관·유포죄와 허위날조, 유포죄 등이 신설되었다. 반국가목적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빼라, 사진, 녹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보관·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2005년 형법 제195조). 반국가목적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을 꾸며내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하여 사회에 혼란을 준 자

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있다(2005년 형법 제222조). 또한 퇴폐적이고 추잡한 녹음, 녹화물 등을 끌어들이거나, 복사, 유포한 자와 녹화기, 녹화테이프, 컴퓨터, CD-R, 반도체라디오 등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에 처하고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행정처벌법 제113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의사표현 및 제3자에 대한 전달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 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녹음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주파수를 고정해야 한다고 증언한다.⁴⁷³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밀리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몰래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남포시 주민들은 12인치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남한의 드라마와 뉴스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⁴⁷⁴

- 북한이탈주민 ○○○은 무산군에서 한국 AM 방송을 청취하였다 고 증언하면서 CD-R은 특별히 더 세게 처벌하지만, 그 외에는 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 그리고 그는 단속자들이 단지 본인들이 청취하기 위해 물건을 압수할 뿐이라고 증언.⁴⁷⁵

473.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474. 『자유북한방송』, 2011년 1월 14일.

475. NKHR2010000064 2010-05-11.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보았고,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봤으며 이를 통해 남한사회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꼈다고 증언. 476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한국은 CD-R을 통해 북한 사람들 머리를 돌게 하는데 성공했다. CD-R을 본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한다. 젊은이들은 자유스러움을 부러워하고 늙은이들은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부러워한다”라고 증언. 477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1998년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한국 드라마는 정서에 목마른 북한주민들에게 불을 붙였으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증언. 그리고 그는 한국 드라마는 마약과도 같았고,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을 정도라고 증언. 478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황해도 주민들은 한국 라디오 청취는 물론 텔레비전 및 비디오도 시청한다고 증언. 그는 접경지역에서는 20대들이 한국 말씨를 사용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한국 옷도 인기가 매우 높다고 증언. 479

전화는 가설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돈만 있으면 가설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보 유통의 통제 차원에서 도청이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아버지가 당 간부, 일반 기업소 간부들에게 전화를 놓아주었는데, 돈만 있으면 전화를 놓을 수 있다고 증언. 480

476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3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477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5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478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479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480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 북한이탈주민 ○○○은 20만 원이면 개인들이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고 증언.⁴⁸¹
- 북한이탈주민 ○○○은 설치비, 사용료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놓고 있다고 증언.⁴⁸²
- 북한이탈주민 ○○○은 150달러를 주고 집에 전화를 놓았다고 증언.⁴⁸³ 그는 또한 북한당국은 핸드폰 금지에 이어 전국적으로 유선전화(빛 섬유 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증언.⁴⁸⁴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시로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교환원을 통해야 한다고 증언.⁴⁸⁵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개인전화도 도청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할 때도 조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⁴⁸⁶

북한이탈주민 ○○○은 모두 체신소를 통해 통화를 하는데, 통화내용을 감시하므로 비밀은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⁴⁸⁷ 북한이탈주민 ○○○은 매 구역 전화분국에 보위부원의 방이 있고 그 방에는 도청설비가 있다고 증언하였다.⁴⁸⁸

북송교포의 경우 국제전화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시 인민위원회 해외동포영점부에 신청을 해서 전화국에 가는데 2~3일 걸린다고 증언하였다.⁴⁸⁹

481.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482.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483.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9일, 서울에서 면접.

48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5호 (2007.10.2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6호 (2007.10.31).

485. NKHR2009000013 2009-03-11.

486. NKHR2009000024 2009-04-20.

487. NKHR2009000053 2009-09-08.

488. NKHR2009000077 2009-12-09.

489. NKHR2009000012 2009-03-05.

최근 들어 북한내부의 이동통신 사용이 일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라진·선봉지역에서 세계무선통신시스템(GSM)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2004년 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런데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유선통신업체인 ‘조선우편통신공사’와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하여 2008년 12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WCDMA)가 도입됐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음성과 문자이고 국제통화나 로밍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오라스콤텔레콤의 2010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북한주민은 2010년 말 현재 약 300,000명이다.⁴⁹⁰ 평양·평성·안주·개천·남포·사리원·해주 등 7개 도시와 8개 공공도로에서 핸드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⁴⁹¹ 이처럼 핸드폰(손전화기)의 사용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제 핸드폰을 통한 남한과의 통화가 많은⁴⁹² 국경연선 시·군·리들에 대한 단속 및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지고 있다. 보안서와 인민무력부가 핸드폰 사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협동 작업에 들어갔다. 양 부서는 연선주변의 각 리·동 담당 보안원을 기존의 한 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전화 탐지기 50대를 투입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재투입시켰다고 한다.⁴⁹³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노동단련대, 엄중한 경우 교화소에 가는데 대부분 돈을 바치고 풀려난다고 하는 점이다. 그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150만 원까지 바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먼저 불법휴대전화 사용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가에 대한 탈북

490. 『연합뉴스』, 2011년 1월 24일.

491.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2월 10일.

492. NKHR2010000011 2010-09-14. 북한이탈주민 ○○○은 탐지기를 이용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서 딸이 보내준 핸드폰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통화하였다고 증언함.

49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4호 (2006.6.7).

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외부와의 통화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증언. 494
- 북한이탈주민 ○○○은 국가안전보위부는 불법통화에 대한 벌금을 중국 인민폐 혹은 달러로 받는다고 증언. 495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발각될 경우 기본적으로 교화형을 받는다고 증언. 496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 불법 사용이 발각될 경우 강제추방 및 무기교화형에 처해진다고 증언. 497
- 북한이탈주민 ○○○은 일반적인 핸드폰 사용의 경우는 핸드폰 몰수에 그치지만 통화기록 조회 이후 남한과 통화했을 경우에는 교화형에 처해진다고 증언. 498
- 북한이탈주민 ○○○은 불법 핸드폰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 연수에 따라 벌금에 차이가 있고, 중국 핸드폰은 소지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증언. 499
- 북한이탈주민 ○○○은 외화별이회사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통화(시골이라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대가로 자신도 핸드폰을 사용하였으며 10일에 한 번 정도 중국 길림에 있는 사촌 언니와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 그러나 그는 도시에는 탐지기가 있어 한국과의 핸드폰 통화가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증언. 500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용천폭발사건 이후 핸드폰 통화

494. NKHR2010000007 2010-03-16.

495. NKHR2010000034 2010-11-02.

496. NKHR2010000035 2010-11-09.

497. NKHR2010000044 2010-11-02.

498. NKHR2010000058 2010-11-23.

499. NKHR2010000095 2010-03-23.

500. NKHR2010000099 2010-07-13.

가 중지되었으나 최근에는 북한주민들간 핸드폰 연락은 허락되었다고 증언. 아울러 그는 외부와의 통화는 통화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5년 교화형과 함께 핸드폰 압수가 가해진다고 증언.⁵⁰¹

- 북한이탈주민 ○○○은 가장 무서운 검열단은 ‘보위부111’이라는 조직으로서 순수 보위부 요원들로 조직되었다고 증언.⁵⁰²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보위부원이나 국경경비대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이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 통화자들을 봐주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약한 경우(1~2번 경고시)에는 벌금으로 끝나지만 강한 경우(경고 계속 무시)에는 단련형을 받거나 교화소에 간다고 증언. 그는 뇌물을 바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증언.⁵⁰³
- 북한이탈주민 ○○○은 불법 핸드폰은 보통 중국으로의 도강자들이 가져오는데 한국과 연락한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교화소에 간다고 증언. 그러나 그는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벌금 내면 단속자가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음).⁵⁰⁴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 상대방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사용했으나 발각된 적은 없다고 증언. 그러나 그는 보통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화형이 내려지지만 뇌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증언.⁵⁰⁵
- 북한이탈주민 ○○○은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발각되었

501_ NKHR2011000021 2010-06-07.

502_ NKHR2011000017 2010-06-08.

503_ NKHR2010000001 2010-05-25.

504_ NKHR2010000045 2010-09-07.

505_ NKHR2010000062 2010-10-12.

지만 뇌물로 화폐개혁 후의 신권 20만 원(구권 1000만 원)과 현물(담배 2보루)을 주고 풀려났다고 증언.⁵⁰⁶

- 북한이탈주민 ○○○은 불법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을 바치고 처벌을 면제 받는다고 증언.⁵⁰⁷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당시 기본 벌금으로는 20~30만원 정도였으나 보위부원에게 뇌물 50만 원을 주고 처벌을 면제받았다고 증언. 이후 그는 2008년 5월까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검열에 걸려 핸드폰을 몰수당했다고 증언.⁵⁰⁸

북한당국은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4년 형법 개정시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제193조)와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94조)를 신설하여,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R 등을 허가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한 행위와 이러한 매체를 여러번 시청, 청취 또는 매체상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대, 교양소, 교화소 등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도 이 점은 확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CD-R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보통 뇌물을 미국 돈 300~400달러나 아니면 북한돈 100~200만 원을 주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⁵⁰⁹
- 북한이탈주민 ○○○은 CD-R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보통은 국가안전보위부의 단련대에 가지만 심할 경우 교화소로 보내지며 CD기계는 몰수당한다고 증언.⁵¹⁰

506. NKHR2010000066 2010-05-11.

507. NKHR2011000004 2010-03-23.

508. NKHR2011000013 2010-06-08.

509. NKHR2010000020 2010-06-01.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드라마 ‘꽃보다 남자’ CD-R을 갖고 있었으나, 정치범수용소 간다고 하여 이것을 불에 태워 버렸다고 증언.⁵¹¹
- 북한이탈주민 ○○○은 CD-R에 대한 집중단속은 명절 및 국경일에 이루어지고 적발되었을 때 해당 주민이 뇌물을 주면 노동단련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교화형을 받는다고 증언.⁵¹²
- 북한이탈주민 ○○○은 CD-R을 시청하다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는 벌금 200만 원 이상을 물든지 노동교화소에 가야한다고 증언.⁵¹³
-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 단속은 보통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부위부가 수행하고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는 뇌물을 주고 빠지든지 노동교화소에 가야한다고 증언.⁵¹⁴
- 북한이탈주민 ○○○은 CD-R 가격은 한국제가 북한돈으로 2,000원이고, 중국제는 1,000원이라고 증언. 그리고 그는 ‘비사그루뻐’는 법무위원회와 체신부분 사람 등으로 조직되어 2~3개월에 한번씩 단속하며 중국제를 시청하다 2~3회 발각되면 출당에 그치지만 한국제 CD-R을 시청하다 발각되면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한다고 증언.⁵¹⁵
- 북한이탈주민 ○○○은 CD-R에 대해 인민보안부가 한 달에 1~2번 정도 단속하는데 만일 누군가 적발되면 노동단련형 6개월에 처해진다고 증언. 그는 또 누구든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북한돈 20~3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증언.⁵¹⁶

510_ NKHR2010000025 2010-10-19.

511_ NKHR2010000016 2010-10-05.

512_ NKHR2010000045 2010-09-07.

513_ NKHR2010000047 2010-07-27.

514_ NKHR2010000082 2010-06-22.

515_ NKHR2010000090 2010-06-22.

516_ NKHR2010000094 2010-03-30.

- 북한이탈주민 ○○○은 한국 CD-R을 시청하다 발각되면 녹화기와 TV 압수는 물론 노동교화소에 간다고 증언. 517
-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기 있는 집은 CD-R 검열을 자주 받고 요주의 대상이 된다고 증언. 518
- 북한이탈주민 ○○○은 한국 방송이나 CD-R을 시청하다 발각될 경우 보통 노동교화형 3년에 처해지고 형량 감면은 안된다고 증언. 519
- 북한이탈주민 ○○○은 누구든 CD-R을 시청하다 발각되면 TV를 몰수당하고, 노동교화형에 처해지지만 뇌물을 줄 경우 처벌이 면제된다고 증언. 520

북한당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처음에는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 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루빠가 합동 검열을 하였으나 녹화물에 대한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109소조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상주하면서 검열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521 북한이탈주민 ○○○은 이 조직의 기본목적은 CD-R을 회수하고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522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탈북자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하여 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파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분주소장이나 보위부 사람들과 함께 한국 비디오를 본다는 증언도 있다. 523 이와 같이 단속주체가 비디오를 보고

517. NKHR2011000008 2010-08-10.

518. NKHR2011000010 2010-06-08.

519. NKHR2011000021 2010-06-07.

520. NKHR2011000024 2010-08-31

521. NKHR2008000023 2008-11-11.

522. NKHR2009000012 2009-03-05.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안원과 함께 비디오를 본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⁵²⁴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치적 성격을 갖는 내용의 녹화물에 대해 가장 경계하고 다음으로 성(섹스) 관련 내용이라고 증언하였다.⁵²⁵

그런데 국경지역과 달리 내륙지역에서는 단속이 심해 CD-R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증언도 있다.⁵²⁶

〈출판 자유 실태〉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써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출판물의 주된 내용은 김일성의 우상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등이다. 따라서 북한 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1975년 출판법을 제정,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이 법은 “국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출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에 등록해야 한다(제12조).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또한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523_ NKHR2008000006 2008-07-22; NKHR2008000027 2008-12-02.

524_ NKHR2009000011 2009-03-03.

525_ NKHR2009000035 2009-06-02.

526_ NKHR2009000054 2009-09-17.

감독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7조) 출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행정처벌법은 타자, 복사, 인쇄, 등사, 출판물의 보급, 반출입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으며(제105조), 퇴폐적이고 추잡한 그림이나 사진, 도서를 끌어들이거나, 복사,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제113조). 북한 형법도 출판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26조).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61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와 당기관이 합동으로 1년에 3번 정도 책을 검열하기 때문에 서적을 통한 외부사상의 유입은 힘들다.⁵²⁷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문예총) 결성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의 관철 등 당

527.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6월 3일.

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이 결정됨에 따라 문예 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이 정립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고 김일성의 절대화·우상화를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북한 문예정책은 강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특히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노동당과 내각 문화성의 통제·감독 하에 검열인이 나와야 비로소 출판이나 공연이 가능하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녹화물과는 달리 한국서적을 보았다가는 간첩행위로 몰려 엄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다. 중국이나 한국서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⁵²⁸

이러한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마당 등에서 매대를 통해 비밀리에 외국서적들이 유통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책을 파는 매대가 있는데 미국 책은 내놓고 팔수는 없지만 몰래 외국 책들도 판매한다고 증언. 오빠가 미국의 재벌 신화 등의 소설을 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책은 조선말로 번역되어 있었고 아마도 복사하여 파는 것 같다고 증언.⁵²⁹

- 북한이탈주민 000은 외국어 대학에 다니는 딸 때문에 장마당에 있는 책 매대에 자주 갔다고 증언.⁵³⁰

528.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529.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 2000년경부터 백조의 호수와 같은 그림책, 개구리 왕자, 피터팬 등 외국서적을 몰래 파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⁵³¹
- 2003년 전후로 해서 매대에 합법적으로 번역출판된 것은 아니고 프린트하거나 복사한 미국, 일본 책들을 보았다고 증언.⁵³²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2001년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의 시 북한은 출판물의 출판, 배포를 금지시킨 사례는 최근 3년간 30여건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북한은 금지 사례의 주된 내용이란 국가군사 기밀자료가 포함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출판과정에서 발견되어 인쇄중지·수정된 경우는 백과사전, 지도, 잡지 등에서 27~28건, 군사상식을 비롯한 도서들에서 3~4건 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특정 간행물을 금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 신문구독을 금지하는 조치를 삼가도록 하며 북한 기자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국가안보’ 개념을 악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제23항).

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표현의 자유

530.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531.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532.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와 제22조).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 “공민은 …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헌법 제67조)”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집회와 중앙, 도·시·군 범위 및 일정한 부문별로 진행되는 집회는 매우 많지만 시위는 극히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북한의 집회와 시위가 당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2005년 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이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219조)”고 규정하고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존의 강력한 억제 조치를 존속시키고 있다. 행정처벌법도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이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북한당국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위를 하려면, 그 주체는 집회 및 시위 보장 규율에 따라 3일 전에 지방인민위

원회나 인민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요일 및 시간, 장소, 조직자 및 규모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통보를 받은 인민위원회나 인민안전기관은 집회 및 시위에 필요한 여건들을 보장하여야 하며,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건전한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집회나 시위는 사회안전단속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민주적 공공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30일 전에 미리 내각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에는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학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 등 수십 개의 민주적 공공단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직업총동맹의 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고용자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관, 공장, 기업소의 계획, 행정, 관리에 참여하는 공장 및 기업소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과 불만 이외에는 기업소 주인에 대한 집단협상, 노동분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기업소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노동여건 보장을 위한 외국기업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직맹)에 의존해야 한다. 아직까지 외국기업 내에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⁵³³ 그런데 경제적·사회

533. 북한은 2002년 5월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 참조.

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사 후 제시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단일 직업총동맹이 노동당에 의해 통제되며 직업총동맹의 권리가 국가보위기구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노동법(1999년)에도 근로자들의 근로조직에 관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2010년에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요 기능은 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생활에서 가

장 싫어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직장을 포함한 각종 조직에 속해야 하고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 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조직생활에 자주 빠지는 경우 추궁을 받고 심하면 지방으로 추방되는 등 조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다만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돈을 주고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경우나 전화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⁵³⁴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즉, 노동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북한은 2차 정기보고서에서 “정당조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왜냐하면 기존 정당이 공화국 창건 전 형성된 이래 50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고 신생 정당의 형성을 요구하는 대중적 요구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정당에는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에 대한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북한은 인권단체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 설립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 설립 절차는 행정 규정에 따른 일반 공공단체 설립과 같다. 현재 인권 연구협회,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민주법률가협회, 민주변호사회 등의 인권단체들이 있다.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학예술총동맹,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 등도 인권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정기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의 비정부기구로부터 정보를 받

534.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최근에는 여성동맹 생활총화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함. 『데일리NK』, 2010년 7월 9일.

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북한의 비정부 인권기구들의 활동이 활동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번 토의내용을 비정부 인권기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북한 측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집회의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집회가 어떤 경우에 금지되며 공공집회가 금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4항). 또한 정치적 참여권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 25조의 정신에 비추어 새로운 정당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법적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표단의 설명에 유의하면서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25조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권고 제25호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권고하였다(제25항).

라.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목적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7조).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공민은 … 주택의 불가침, 서신

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헌법 제79조)”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체신법(2001년)은 “체신기관, 기업소는 …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비밀을 누설,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제52조).

2004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 북한은 과거의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999년 9월 개정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의 “압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제223조)”로 규정하여 과거보다 일보 후퇴한 감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2005년 형사소송법 제271조).

또한 예심원은 범죄나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편지나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과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입회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2005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18조, 제221조).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서신이 검열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편지는 철저한 검열을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⁵³⁵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보낸 큰 이모의 편지가 뜯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⁵³⁶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으로도 강한 것 때문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중국의 언니가 보낸 편지가 배달되

535. NKHR2011000007 2010-04-06.

536. NKHR2011000005 2010-08-10.

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⁵³⁷

2003년 북한은 조선국제통신국이 전송속도와 서신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망 보호체계를 자체기술로 갖추고 국제전자우편(e-메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⁵³⁸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과 e-메일 서비스 개시는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 정보기관의 당 간부에 대한 감시는 일반 주민보다 심하며, 도청장치까지 동원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김정일이 이같이 고위간부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가장 큰 대상으로 이들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과 ○○○도 북한당국이 반체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간부 자택과 공공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도청은 국가안전보위부 13국에서 실시한다고 증언하였다.⁵³⁹

또한 북한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시가 철저하다. 북한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 이색 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하면서, 1995년경부터 별도의 동향감시기록 카드를 제작, ‘긍정발언·부정발언’ 등으로 구분하여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537_ NKHR2010000102 2010-07-13.

538_ 『조선중앙통신』, 2003년 11월 28일.

539_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관찰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상위조직부터 하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생활총화는 주 1회 정도 실시되며 자기 비판과 상호비판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형식적으로 생활총화는 하지만 상호비판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⁵⁴⁰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에 더 정신을 쏟아 붓고 있어서 더욱 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하려고 하며 상호비판 같은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⁵⁴¹

북한당국은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인민보안부 소속 숙박 검열대는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숙박자는 수시로 숙박검열을 당한다고 한다.⁵⁴²

검열단은 도보위부원 2명에 보안원 1명이 한 조가 된다. 검열단은 먼저 각 인민반 반장 집을 검열한 다음, 인민반장과 함께 각 세대를 검열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해서 하루 2회 진행된다. 대체로 인민반장들의 신고로 잡히는 무단숙박자 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⁵⁴³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와 관계된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할 경우 집주인의 안내 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5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인민반장에 의해서 통제

540.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41.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42. NKHR2011000005 2010-08-10.

543.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6월 8일, 서울에서 면접.

되고 인민반장은 인민보안부 보안원과 함께 숙박검열 등을 통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인민반장은 사상동향이나 가정 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감시는 인민반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⁵⁴⁴ 한편 인민반에는 이미 보위부, 보안원, 당 비서 등의 꼬나풀이 있고, 이들이 이중 삼중으로 인민반장과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⁵⁴⁵

북한이탈주민 000도 인민반장이 모든 것을 감시하여 여전히 보고한다고 증언하였다.⁵⁴⁶ 이와 같이 인민반장이 주민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친구 000이 CD-R을 보다 인민반장 아들한테 들켜 가택 수색을 당했고 함흥 오로 교양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⁷ 최근에는 집안에서 중국에 간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인민반장들이 그의 가족에 대한 동태를 강하게 살핀다고 한다.⁵⁴⁸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민반장을 무서워하는데 인민반장 아들이 와도 싫어할 정도라고 한다.⁵⁴⁹ 인민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민반장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⁵⁵⁰ 그런데 반대로 북한이탈주민 000은 인민반장에 대해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심지어 어떤 인민반장은 보위부원들이 단속을 시작하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한다.⁵⁵¹ 북한이탈주민 000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인민반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증언하였다.⁵⁵²

544_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6월 8일, 서울에서 면접.

545_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46_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547_ NKHR2009000053 2009-09-08.

548_ NKHR2009000057 2009-09-22.

549_ NKHR2009000042 2009-06-25.

550_ NKHR2010000045 2010-09-07.

551_ NKHR2009000026 2009-04-23.

552_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6



종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수용할 권리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방 직후 북한주민 916만 명 중 22.2%인 200만여 명이 종교인(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 5천 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 명)이라고 밝혔다.⁵⁵³

북한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⁵⁴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한 반미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 이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⁵⁵⁵

55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5.

554. 사회과학원,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0.

555.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p. 79.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당국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종교단체를 재조직하였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54조)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남한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동원되었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개정, 종교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 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정책의 변화는 우선 헌법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제68조)”고 규정하였다. 1972년 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반종교선전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와 관련, 개정 헌법은 법률적으로 진보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종교건물의 신축과 종교의식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종교가 활용될 수 있다는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종교시설 실태

북한당국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1989년 칠골교회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 순방시 정교회를 방문한 이후 2003년 6월 러시아 정교회 사원 건립이 추진되어 2006년 8월 13일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정백사원'이 완공되었다. 2003년 4월 북한인 4명이 러시아정교사제교육기관인 러시아 모스크바신학교에서 유학하였다.⁵⁵⁶ 현재 이들 중 세례를 받고 보제신부가 된 2명이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시설 이외에 남한의 지원 아래 새로운 종교시설이 건립되거나 재건축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 종교계가 북한 내 종교시설을 복원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⁵⁵⁷

그리고 북한은 신계사, 영통사 등 전통문화 보존 차원의 불교사찰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 12월부터 각지 59개 사찰에 대한 전면적 단청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2001년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밝힌 종교관련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 II-14〉 북한의 종교 실태

종 교	교당수(개)	교직자수(명)	신도수(명)
기독교	2(가정예배 처소 500)	20(목사)	12,000
천주교	1(공소 2)	-	800
불 교	60	200	10,000
천도교	800(비밀 기도처)	-	15,000

556. 『조선중앙방송』, 2003년 6월 25일; 『연합뉴스』, 2003년 6월 24일, 27일.

557. 예장통합의 지원으로 2005년 11월 평양제일교회가 건립되었으나 교회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기독교인은 평양 봉수교회 300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 군데 등을 포함해 모두 14,000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⁵⁵⁸

이러한 종교시설에 대해 평양주민들은 많은 경우 존재 자체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주민들은 대부분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⁵⁵⁹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신앙시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평양 주민도 이러한 종교시설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접근이 제한된 구역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교회와 성당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평양에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성당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⁵⁶⁰ 특히 절을 종교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스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⁵⁶¹ 북한이탈주민 ○○○은 스님이 머리를 깎지 않고 단순히 절을 지키고 역사 유적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증언하였다.⁵⁶² 북한이탈주민 ○○○은 개성에 있는 절에 갔을 때 스님은 단순히 안내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⁶³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외국인을 위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했고,⁵⁶⁴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교회

558. 『노컷뉴스』, 2010년 11월 10일

559.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560. NKHR2009000031 2009-05-12.

561. NKHR2008000001 2008-07-01.

562. NKHR2009000031 2009-05-12.

563. NKHR2009000033 2009-05-26.

564. NKHR2010000070 2010-04-27.

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⁵⁶⁵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양에 장충성당, 봉수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들만을 위한 곳으로 일반인들은 교회에 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라고 증언.⁵⁶⁶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청진에 살았는데,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⁵⁶⁷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교회는 일반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증언.⁵⁶⁸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양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봉수교회와 장충교회라고 증언하여 교회와 성당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증언.⁵⁶⁹
- 청진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양에 가서 교회를 보았을 때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인체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무서웠다고 증언.⁵⁷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혜산에 살고 있었지만 평양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목사들은 남북 간 행사를 위해 행동한다고 들었으며 평양 이외에 교회를 운영하는 곳은 없고, 절에는 스님들이 없다고 증언.⁵⁷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양 통일거리에 러시아에서 새롭게 건립한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⁵⁷²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묘향산에 절이 있었지만 종교시설이 아니

565_ NKHR2010000091 2010-06-15.

566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2월 9일, 서울에서 면접.

567_ NKHR2008000027 2008-12-02.

568_ NKHR2008000023 2008-11-11.

569_ NKHR2008000023 2008-11-11.

570_ NKHR2008000001 2008-07-01.

571_ NKHR2008000020 2008-09-17.

572_ NKHR2009000013 2009-03-11.

- 라 관광지로 알았다며 보현사에서 부처님을 보지 못했으며 TV에서 불상을 보았다고 증언.⁵⁷³
- 북한이탈주민 ○○○은 절에 가 보았지만 문화재에 대해 설명을 듣는 관광지로만 알았고 스님들은 절 안내자로 근무하며 관람객이 오면 해설해 주고 국가에서 녹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⁵⁷⁴
 - 북한이탈주민 ○○○은 절에 가보지 않았으며 스님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⁵⁷⁵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에서 절에 가보지 않았는데, 절은 비워 놓고 관리관 한 명만 있었으며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⁵⁷⁶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고향에서 가까운 칠보산에 절이 있지만 스님은 없고 전문 안내인이 설명해 주는 곳이라고 증언. 그리고 그는 절은 교리를 전파하는 신앙의 전당이 아니고, 유적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⁵⁷⁷

북한에도 종교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김일성대학에 종교학부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종교교육 기관이 있다.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는 평양 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학원,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중학교를 운영하며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에 북한은 김일성종합

573.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9일, 서울에서 면접.

574. NKHR2008000023 2008-11-11.

575. NKHR2008000030 2008-12-23.

576. NKHR2008000012 2008-08-14.

577. NKHR2008000017 2008-09-04.

대학 졸업생들이 모스크바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⁵⁷⁸

● 종교의식 실태

북한당국은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다.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에는 사찰별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조국통일지원법회 같은 정치성 법회도 개최되고 있다. 미국 측의 종교탄압국 지정에 대하여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하여 평양 ‘봉수교회’ 일요일예배에 매주 200~30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각지 500여 개의 가정예배소에서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한다고 비난·반박한 바 있다.⁵⁷⁹ 그리고 남북한 종교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종교의식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1997년부터 매년 남북불교도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 봉축 법요식과 발원문이 봉독되고 있다. 남북한 기독교계 교류는 1997년 부활절 공동 기도가 진행된 이래 꾸준히 종교교류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8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방북하여 8·15 성모승천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한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금강산 합동미사 등의 행사를 남북이 합동으로 개최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교령 일행방북을 계기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천도교 차원의 각종 기념식이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6·15 정상회담 이후 2003년에는 ‘3·1민족대회’에 남북 종교인들의 참석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탈북자, 북한당국의 강연제강 등을 통하여 성경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⁵⁸⁰ 특히 북한당국은 성경책을 사상문화적 침투의 핵심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78. 『연합뉴스』, 2003년 3월 31일.

579.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69호 (통일부, 2001), pp. 9~10.

580. NKHR2009000013 2009-03-11.

성경책 소지를 가장 엄중하게 본다고 어느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하였다.⁵⁸¹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다고 증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불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⁸²

● 종교단체 실태

북한당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연계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는 “민주적 정당, 공공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 67조 제2항에 따라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구성하고 종교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 따라 북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종교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도 간섭이나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종교단체로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회’,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와 이들 종교단체의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차원의 종교단체가 지역 조직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교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중 지방조직을 알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⁵⁸³

북한당국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종교교류를 허용하고

581. NKHR2009000017 2009-03-24.

582. NKHR2009000020 2009-04-07; NKHR2009000024 2009-04-20.

583.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p. 88.

있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1995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가 하면 북한의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가 이끈 대표단은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⁵⁸⁴ 조선불교도연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⁵⁸⁵ 그런데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 등의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식량난이 악화되어 사회통제가 어렵게되자 내부적으로 종교활동에 대한 억압을 견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종교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서방 특정종교의 영향을 견제하면서도 서방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키는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종교단체는 외국과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⁸⁶

● 종교 자유에 대한 증언 실태

주체사상 이외에는 다른 사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는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는 문제이다.⁵⁸⁷ 북한은 종교를 미신으로 마약과 같다고 교육하여 왔다. 종교활동이 발각되면 종교인은 관리소를 가게 된다.⁵⁸⁸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앙의 자유 허용, 종교시설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종교단체 설립 등 법·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의 자

584_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48.

585_ 『조선중앙통신』, 2003년 2월 10일.

586_ NKHR2009000013 2009-03-11.

587_ NKHR2008000016 2008-09-02.

588_ NKHR2008000017 2008-09-04.

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이 존재를 주장하는 가정예배처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정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⁵⁸⁹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자주 가지만 가정예배처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⁹⁰ 이와 같이 북한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주민들은 가정예배처소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⁹¹

북한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988년 9월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많은 외국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개인차원에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주의헌법에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

589.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590. NKHR2008000017 2008-09-04.

591. NKHR2009000013 2009-03-11.

서 1990년대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 해당 보위지도원들로부터 기독교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기독교 전파자 색출의 필요성과 기독교인 식별요령 등이다. 그런데 해방 이전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 중 일부가 개인차원에서 은밀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의 어머니(1928년생)는 중국에서 자라고 교원생활까지 하다가 북한으로 왔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가 찬송가였던 것 같고, 조용히 기도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그는 종교문제로 아버지와 불화가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⁵⁹² 북한이탈주민 000은 자신의 이모가 중국에서 몰래 성경책을 들여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가족들이라 발각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⁵⁹³ 북한이탈주민 000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기독교에 목사님과 설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⁵⁹⁴

● 신앙활동 처벌 실태

공인된 시설 및 활동 이외에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 관련 주민 및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남한종교인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⁵⁹⁵ 그렇지만 신앙과 관련된 모든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여 처

592_ NKHR2008000027 2008-12-02.

593_ NKHR2009000027 2009-04-27.

594_ NKHR2009000063 2009-11-03.

별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탈북자를 통한 신앙의 전파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종교에 대해 상당한 정도 인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⁵⁹⁶ 북한이 종교문제와 관련하여 처벌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불교 신자였던 이웃사람이 강제추방 당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⁵⁹⁷
- 북한이탈주민 ○○○은 종교활동을 하다 발각될 경우 교화소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⁵⁹⁸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중국 목사에게 전도 받고 성경을 받아서 북한으로 들어왔다가 적발되어 교화형 3년을 받았다고 증언. 그는 성경을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인민보안부로 넘겨졌다고 증언. 아울러 그는 성경을 한국 사람에게 받았으면 국가안전보위부가 조사하고, 중국인 등에게서 받으면 인민보안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⁵⁹⁹
- 북한이탈주민 ○○○은 언니가 중국인 여행자를 위한 숙박업을 하였고, 중국인이 포교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 성경과 찬송가를 받았으며 기도와 찬양도 하였다고 증언. 이에 그는 중국인이 북한의 여러 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계속되는 신문 때문에 중국인이 결국 증언자의 언니를 신자로 지목하였고, 언니는 체포된 후 교화소에 간 것으로 증언.⁶⁰⁰
- 북한이탈주민 ○○○은 종교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7호 요덕 관

595.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596. NKHR2009000011 2009-03-03.

597. NKHR2010000096 2010-06-22.

598. NKHR2010000012 2010-09-14.

599. NKHR2010000026 2010-10-26.

600. NKHR2010000020 2010-06-01.

리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⁶⁰¹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도경 친구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다고 들었음을 증언.⁶⁰²
- 북한이탈주민 ○○○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다루고, 당사자는 교회소에 가는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⁶⁰³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한국종교인,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했을 경우 가장 크게 처벌받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기독교선교사를 침략의 앞잡이로 보기 때문이라고 증언.⁶⁰⁴
- 북한이탈주민 ○○○은 보위부원들은 어떤 사람이 도강해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기독교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한밤중에 그를 체포하고 조사대상자가 고백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구류장에 가둬 놓는다고 증언.⁶⁰⁵

북한당국이 개인차원의 신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하교회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제약하면서, 지하에서 신앙활동을 추구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친구인 ○○○의 누이동생 ○○○이 남포로 시집갔는데, 2001년 남포에서 종교를 전파하다가 적발되어 5명이 총살당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⁶⁰⁶
-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평안북도에 비밀교회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 교회에서 1차적으로 신앙조직을 만든

601_ NKHR2010000069 2010-10-26.

602_ NKHR2011000005 2010-08-10.

603_ NKHR2011000024 2010-08-31.

604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05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606_ 북한이탈주민 ○○○, 2003년 4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다음 북한의 자기 집에서 일부가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증언.⁶⁰⁷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하교회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중국 내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미션홈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통해 북한 내에서 전도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 내에서 북한에서 만든 노트에 성경구절을 적어 마치 북한에서 전도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많다고 증언하였다.⁶⁰⁸ 또한 기독교를 믿던 조상으로부터 일부 신앙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외할머니가 이전에 기독교를 믿었고, 자신의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몰래 기독교를 신봉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⁰⁹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종교를 통제하려는 교육을 통해 종교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의 존재도 알게 된다고 한다.⁶¹⁰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의 종교시설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나쁜 인식을 심어주어 종교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⁶¹¹ 또한 TV를 통해서 존재를 아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절에서 스님을 보지 못하고 스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TV를 통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⁶¹² 북한이탈주민 ○○○도 영화나 선전을 통해 스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⁶¹³

한편 어느 집에 가면 점을 잘 봐준다는 소문이 도는 등 북한사회에서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⁶¹⁴ 간부들은 직접 점을 보지 않

607. NKHR2009000039 2009-06-10.

608.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609. NKHR2009000073 2009-12-02.

610. NKHR2009000011 2009-03-03.

611. NKHR2009000053 2009-09-08.

612. NKHR2009000024 2009-04-20.

613. NKHR2009000062 2009-10-20.

지만 부인들이 가서 점을 보고 이야기하여 준다고 한다.⁶¹⁵ 북한당국은 점쟁이 등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 제 268조(미신행위 조장죄)는 “리기적 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미신행위를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일사상 10대원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상이나 믿음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이다.⁶¹⁶ 북한이탈주민 000은 ‘점을 친다’, ‘신수를 본다’는 사실이 제기되면 조직에서 처벌받는다고 증언하였다.⁶¹⁷ 보위부원, 당간부, 보안원들도 용하다고 하면 점을 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보안원들은 점쟁이가 돈을 바치지 않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거나, 소문이 크게 난 경우는 처벌한다고 한다.⁶¹⁸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1년 종성에서 점을 치다가 정치적으로 걸려서 점쟁이 2명이 체포되어 예심을 받았다고 증언.⁶¹⁹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2년 무렵 미신행위를 하다 많이 단속당하였다고 증언.⁶²⁰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5년 무렵 중국과 무역하던 자신이 일하던 외화별이 단위에서 중국과의 무역날짜까지 일러줄 정도로 신통한 사람이 어느 날 없어졌는데, 점을 보면서 말실수를 해서 보위부에 잡혀갔다고 증언.⁶²¹
- 북한이탈주민 000은 42세 점쟁이 000이 청진 포항구역에서 사주를 봐주다 발각되어 2005년, 2006년, 2007년 등 3차례에

614.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15. NKHR2008000012 2008-08-14.

616. NKHR2009000012 2009-03-05.

617. NKHR2008000006 2008-07-22.

618. NKHR2008000023 2008-11-11.

619. NKHR2009000057 2009-09-22.

620.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621. NKHR2008000009 2008-08-07.

걸쳐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는데 2007년도에 임신이 되어 나왔다고 증언.⁶²²

- 북한이탈주민 ○○○은 무산군 남산구에 사는 ‘○○○ 엄마’라는 여자가 미신행위로 노동단련대에 6개월 수감되었다고 증언.⁶²³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구류장에 있을 때 보천군에 사는 50대 ○○○이 점을 봐주다 여러 번에 걸쳐 같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증언.⁶²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45세 가량의 여성 ○○○이 점을 봐주다가 발각되어 단련대에 갔다고 증언.⁶²⁵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이라는 여성이 점을 봐주다가 보안원에게 체포되어 6개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⁶²⁶

● 유일사상 10대원칙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다.⁶²⁷ 북한당국이 외세침탈 수단과 사회질서 문란의 요인으로 종교를 인식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수령유일지배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절대적인 존재인 김일성·김정일의 위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는 유일지배체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절대적

622. NKHR2008000004 2008-07-17.

623. NKHR2008000006 2008-07-22.

624. NKHR2009000032 2009-05-19.

625. NKHR2009000054 2009-09-17.

626. NKHR2009000064 2009-11-04.

62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6월 8일, 서울에서 면접.

지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10대원칙’은 발표된 1974년부터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사람들을 지배하는 실제상의 법 역할을 하고 있다.⁶²⁸

또한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활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정치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10대원칙’이 처벌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의 증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628_ ‘10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2005년 3월 회령시 한 기업의 경비실에 화재가 났다. 건물에 큰 피해는 없었으나 당직을 보던 경비원이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꺼내지 못한 게 문제가 되었다. 초상화가 탔다는 이유로 이 경비원은 구속되었다. 비록 수개월 후 풀려나긴 했으나 후유증으로 그 해 8월 50대 중반의 나이로 사망했다. 일반범죄와 달리 초상화 관련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면 초상화를 제일 먼저 꺼내오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른 범죄들은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부원들에게 얼마간 뇌물을 주면 비교적 가볍게 처리할 수 있으나, 초상화 문제는 일단 제기되면 바로 윗선에 직보된다. 뇌물로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초상화 화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가볍게 처벌되기 어렵다. 북한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북한당국이 유일사상체제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⁶²⁹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짠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이 책은 그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인민반 강연 회의에서는 수해라는 긴급 상황에서도 어버이 초상화를 모시고 나온 사람들의 사상정신을 본받자는 내용이 나왔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자기 밀려든 홍수 때문에 집이 잠겨 물바다 상태가 됐는데도, 모든 물건을 버리면서도 초상화를 모시고 나온 주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초상화를 모시느라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 딸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들의 사상정신을 만민이 본받아야 하며 말로만 장군님을 모시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할 것을 바라면서 모두 이들의 높은 정치사

62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1호 (2006.5.18).

상 수준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했다.⁶³⁰

2007년 5월 15일부터 중앙당 조직부로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에 대한 정성사업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검열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그 날부터 평양을 비롯해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혜산, 자강도 강계,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등 전국도 소재지와 그 외 주요 도시들에서 당 조직부 성원들이 나서서 간부들의 사무실과 개인집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집까지 일일이 검열하였다. 그들은 초상화를 정중하게 모시지 않거나, 먼지가 발견되면 명단을 상부에 올렸다. 그러면 보안서는 이들을 불러 훈시하고, 심한 경우 2~3일 구류장에 넣기도 하였다.⁶³¹ 보안원들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한다.⁶³²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4년 12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을 때 단련대에 불이 났고 여자 수감방에서 자기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직선으로 초상화가 보여서 짐을 내려놓고 초상화 3개를 들고 나왔으나 자기 짐은 이미 불타버린 후였다. 그는 이 일로 모범 수감자가 되어 6개월에서 3개월 형량을 면제받고 퇴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⁶³³ 북한이탈주민 000은 유일사상 10대원칙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초상화가 떠오른다고 증언하였다.⁶³⁴ 특히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0년까지 초상화가 불에 탔거나 찢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⁶³⁵ 북한이탈주민 000은 동네 아주머니가 두부장사를 하여 집에 수분이 많았는데, 초상화가 누렇게 변색되었는데도 보고해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급당에서 열흘 동안

630_ 위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4호 (2007.10.17).

631_ 위의 글.

632_ NKHR2010000062 2010-10-12.

633_ NKHR2008000010 2008-08-08.

634_ NKHR2009000011 2009-03-03.

635_ NKHR2009000013 2009-03-11.

비판서를 썼다고 증언하였다.⁶³⁶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생활총화를 통하여 ‘10대원칙’을 철저히 내재화시키고 있다. 당 생활총화시에 발표자는 꼭 ‘10대원칙’을 인용한다. 일반총화에서도 발표자는 ‘10대원칙’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인용한다.⁶³⁷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10대원칙’이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다고 주장한다.⁶³⁸

‘10대원칙’이 수령에 대한 이상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내가 살 때는 유일사상 10대원칙이 은연중에 나를 컨트롤하였다. 보이지 않는 억압도구로 작용한 것만은 확실하다. 10대원칙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10대원칙은 항상 걸림돌이다.”⁶³⁹

다만,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10대원칙을 어기지는 않지만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총화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생활총화할 때 10대원칙을 토대로 자기비판을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증언.⁶⁴⁰
- 북한이탈주민 ○○○은 일반사람은 10대원칙을 잘 모르고 생활총화도 형식적이라고 증언.⁶⁴¹
- 북한이탈주민 ○○○은 일반사람들은 10대원칙을 잘 모르고 당원

636. NKHR2009000053 2009-09-08.

63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38. 북한이탈주민 ○○○, 2010년 3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639.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640.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41.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들만 아는데 그 이유는 당원이 되려면 10대원칙을 다 암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증언.⁶⁴²

- 북한이탈주민 ○○○은 생활총화할 때 10대원칙 몇 조, 몇 항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 장군님’의 교시를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자아비판 하지만 이는 모두 형식적이라고 증언.⁶⁴³

- 북한이탈주민 ○○○은 10대원칙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비사회주의’가 더 무섭다고 증언. 그 이유는 비사회주의인가 아닌가는 단속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⁶⁴⁴

642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43_ 위의 증언.

644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7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울러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는 보편동등하며 또한 비밀 혹은 그와 유사한 자유 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직접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른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5조).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1997년까지 최고인민회의나 당 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1997년에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취임하였지만 선거가 아닌 추대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 받았다.

2009년 4월 개정 헌법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6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제66조).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노동당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거한 달 전부터 선거위원회가 조직되고 분구별 선거위원회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분구의 선거를 관할한다. 중앙 및 지방선거위원회는 당, 인민위원회, 보안기관, 각 동 대표로 구성된다.⁶⁴⁵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가 실시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 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⁶⁴⁶ 투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주민들은 선거

645.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2일.

646.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라고 생각한다.⁶⁴⁷ 만일 선거를 거부할 경우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⁶⁴⁸ 주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도 보복이 두려워기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⁶⁴⁹ 북한당국은 대의원선거일에 쫓추고 놀도록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은 축하공연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즐거움보다는 의무라고 증언하고 있다.⁶⁵⁰

북한당국은 투표율을 높여 당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로 하거나 질병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을 위하여 이동투표함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⁶⁵¹

이와 같이 후보 지명과 투표절차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배제된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 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다.⁶⁵² 2009년도 8월 3일에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을 선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9%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선전하고 있다.⁶⁵³

북한당국은 선거일에 즈음하여 매번 똑같은 선전 구호를 외친다.
“모두 다 선거에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64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648.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49.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650.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651. 『조선중앙통신』, 2009년 3월 8일;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652.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53. 『로동신문』, 2009년 3월 10일.

“전체 선거자들이여, 선거에 한 사람같이 참가하여 찬성투표 하자”
“전체 선거자들이여, 모두 다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100%로 찬
성투표 하자”⁶⁵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선거는 보위부와 보안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하에 치루며, 투표를 안 한다거나 거부할 경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⁶⁵⁵ 반장이 아침 일찍 선거에 가자고 선동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담당 보안원이 있어서 선거에 빠질 수 없다.⁶⁵⁶

북한당국은 비밀투표를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반대투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 북한이탈주민 000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위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 표를 넣고 나온다고 증언. 또한 그는 투표소는 가려져 있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만 반대투표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증언.⁶⁵⁷
- 북한이탈주민 000은 선거일이 되면 학생들이 악대를 구성하여 북치고 팽과리를 두드리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찬성 투표하라고 선전선동을 한다고 증언. 그는 만일 반대 투표를 하게 되면 김정일을 반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잡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증언.⁶⁵⁸
- 북한이탈주민 000은 반대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654. 『조선중앙방송』, 2009년 3월 3일.

655.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56.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57.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658.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다고 증언.⁶⁵⁹

- 북한이탈주민 ○○○은 만일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점을 찍으면 보위부 구류장에 갇히고 재판결과에 따라 교화소(감옥)에 간다고 증언.⁶⁶⁰

북한주민들은 선거장에서 100% 찬성 투표를 하는 동시에 선거에 앞서 투표함 위에 걸려 있는 초상화에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먼저 초상화에 인사하고 선거표를 넣고 다시 인사하고 나온다고 한다.⁶⁶¹

659.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60.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661.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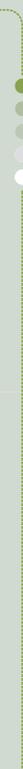
북한인권백서 2011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 



1



식량권

북한의 식량위기는 치명적인 자연재해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집단농업체제 때문에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북한은 20년 동안 유지하여 오던 식량배급을 처음으로 10퍼센트 감축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1991년에는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1년 뒤인 1992년에는 군인과 중노동자를 제외하고 식량배급을 다시 10퍼센트 감축하였다.¹ 즉 80년대 말 내지는 90년대 초반부터 북한당국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낸 것을 보면 그들의 식량문제는 알려진 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식량위기의 원인은 몇 가지의 구조적인 취약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경작지가 적은 까닭에 농업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런데 급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생산이 감소하는 예기치 못한

1.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8~19.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중국과 구소련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호혜적으로 공급받았던 전략적인 공업용품(원유, 비료, 기술 및 다른 공업산품 등)이 이들 국가들이 붕괴하는 바람에 대폭 감소(과거의 10% 이하)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전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농업생산을 포함한 공업, 수송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² 특히 비료생산은 1990년 이전의 12%를 생산하는데 그쳤고, 필요한 평균 비료투입량의 20~30%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두번째 식량생산을 감소시킨 구조적인 취약점은 농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집단생산방식이다. 협동농장은 작업단위의 분조가 15인 이상으로 짜이게 되는데, 구성원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발생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요약하면 구조적인 취약점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홍수피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북한에 덮친 구체적인 시기로, 이때부터 북한의 식량생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기근현상이 속출하였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1994년 666만 톤이던 곡물생산이 1995년 337만 톤으로 급감한데 이어, 1996년과 1997년 각각 224만 톤과 258만 톤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결국 식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백만 톤 이상의 곡물을 도입하였으나,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최소 58만 명, 최대 112만 명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하지만 북한의 농업생산은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

2.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 Catastrophe and Its Lesson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Research Paper* (January 1, 2002), p. 21.

3.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p. 75.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곡물생산의 경우 2002년도에는 400만 톤을 넘어서고, 2005년과 2006년도에는 450만 톤 내외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회복 기미는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료 지원을 포함한 농업 기술 지원 및 연료 지원 증가에 따른 농기계 가동률의 향상, 그리고 양호한 기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다시 찾아온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만 톤 정도 줄어든 401만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고,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재차 악화되었다. 2008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30만 톤 늘어난 431만 톤이었지만, 한국농촌진흥청은 2009년도 곡물 총 생산량을 2008년도에 비해 20여만 톤 감소한 411만 톤으로 추정 발표했다.

〈표 Ⅲ-1〉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단위: 만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 생산량	359	395	413	425	431	454	448	401	431	411
수요량	518	524	536	542	548	545	560	543	540	548

출처: 농촌진흥청: 통일부, 『2010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144.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최소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국제사회의 지원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충당해야 한다. 2010년도 북한의 식량수요량은 540여만 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 곡물년도에 북한이 수입한 곡물의 양은 3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결국 2010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2009년과 비슷한 411만 톤으로 가정할 때 여전히 북한은 100만 톤의 부족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2008년 이래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은 중단되었으며, 국제

4.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26.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2009년과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9년 이래 남한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지 않은 점은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심지어 2009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내 식량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으며, 이는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주민에게 식량부족의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도 곡물년도(2009.11~2010.10)에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편이다.

북한당국은 지속되는 식량위기를 타개하고 농업부문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마다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여 왔다. 2008년 신년사에서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발표하였고, 2009년 신년사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하였다. 2010년에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식량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난을 완화하려는 북한당국의 노력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자초하여 발생한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여건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끊기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을 국가가 배급해주는 제도가 사회주의라고 알아왔다. 실제로 배급제도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로, 식량과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 등의 기초 생필품을 포함해서 교육, 의료체계까지 북한의 배급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부족한 식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까닭에,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식량배급제는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

다. 1994년 기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 배급을 중단하던 북한당국은 1996년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 전면적인 배급중단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1996년 말부터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 공장,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월 3~4일분의 식량만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 들어서 외부지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에 곡물생산량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배급은 다소 호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절대적인 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특수지역인 평양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배급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⁵

이런 상황에서도 공식배급은 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⁶ 무산광산에서 일하면서 배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혹은 UN이라고 쓰여 있는 쌀 마대만 보았지 배급을 받아 먹어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⁷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군인들 대부분이 넉넉히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군부대에 공급된 식량은 장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2년간 군사복무를 하고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소좌였던 자신도 민들레를 캐어 넣은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곤 했다고 증언하였다.⁸ 여군출신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하루 정량이 450g인데, 여기서 좀 빼고 한끼 130g 정도 먹었다고 한다.⁹ 강원도와 평양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군복무 지역에 따라 식량사정이 달랐다고

5.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6. NKHR 2010000005 2010-03-16; 2010000031 2010-11-09; 2010000071 2010-11-09.

7. NKHR 2010000011 2010-12-07.

8.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9.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증언한다.¹⁰ 강원도에 복무할 때는 한 끼에 100~150g 밖에 주지 않아 배가 무척 고했고,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들 몰래 군영 밖으로 나가 옥수수를 훔치거나 가정집에 들어가 쌀을 도둑질해 배를 채웠다고 한다. 이에 반해 평양에서 복무할 때는 입쌀이 배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양도 많이 줘서 강원도에서 복무할 때 보다는 다소 나았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지방 도시의 노동자들은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¹¹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산간지대인 함경도·양강도·자강도 등의 식량난은 더욱 극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중앙배급제의 붕괴와 국제지원의 일부 지역 편중, 에너지난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마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앙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배급이 중단되자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자체로 벌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들은 주로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여 왔다. 심지어 일부분은 주택이용권, 배급표를 불법으로 거래하여 식량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식량난은 물론이고 중앙배급제의 미작동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상당부분까지도 장마당에서 구매하게 되었다. 북한당국 조차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마당에서의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2002년 7·1조치를 기하여 북한의 식량공급체계에 큰 변화가 왔다. 그때까지의 유명무실하던 배급제도가 사실상 폐기되고 배급되던 물건

10. NKHR2008000014 2008-08-26.

11. 북한이탈주민 000, 2002년 5월 6일, 서울에서 면접.

들은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 시점을 기해 일상생활 용품의 가격은 약 20~40배, 식품가격은 거의 40~50배나 인상되었으며, 쌀가격은 kg당 8전에서 44원으로 인상되었다. 식량배급제는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급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식량의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7·1조치와 함께 상승한 물가수준에 맞춰 임금수준도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인상하였다. 사무직 종사자는 140원에서 1,200원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탄광 등 고강도 근로자는 20여 배, 노동자, 농민, 과학자는 10배, 군인 및 공무원은 14~17배 인상되었다. 2002년 국정가격은 장마당 가격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2003년 장마당 물가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7·1조치로 인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국가에 납입해야 할 집세, 전기세, 교육세, 교통비 등의 세금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 구매능력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가족구성원이 많은 경우, 연금보장자 등 일부 계층들은 생활고와 물가고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¹²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농민시장에서 쌀 가격은 2006년 900원, 2007년 1,700원까지 올랐으며,¹³ 2007년 10월 경 쌀값은 4,000원을 넘어 한 때 4,5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¹⁴ 2008년 들어와서는 쌀값이 3,000원 정도로 떨어졌다가,¹⁵ 2009년에는 다시 4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보인다.¹⁶ 화폐개혁이 단행된 2010년 쌀가격은 평가절하된 돈의 가치를 감안하면 오히려 개혁이전 보다 더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

12_ 북한이탈주민 ○○○, 2002년 12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13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4_ NKHR2008000025 2008-11-20.

15_ NKHR2009000024 2008-11-18.

16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3월 22일, 서울에서 면접.

다.¹⁷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0~3,000원 수준이며 그나마 1/3만 지불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고, 외부에서의 자본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생필품의 공급 부족은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다.

배급도 나오지 않고 직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한달치 월급보다 많은 하루 5,000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시장에서 두부를 떼다가 팔았던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보통 10,000원을 벌었다고 한다.¹⁸ 일반 주민들은 직장에 적만 걸어 놓고 장사를 하고, 직접 장사를 할 수 없는 당간부나 보위부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장사를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의 뒤를 봐주고 돈을 받기도 한다.¹⁹ 중위로 근무하다 제대한 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군인가족들은 별도의 마을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야 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주민보다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²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는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 배급이 잘 나오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직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8년 탈북 전까지 유선탄광(회령)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유선탄광에는 배급이 좀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다.²¹ 그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벽돌은 채 한달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선탄광에서 생산하는 용광로용 벽돌은 품질이 좋아 석 달은 견디기 때문에 생산독려 차원에서 설비, 자재 보장 등 지원이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곳보다 배급도 좀 나왔다고 한

17. NKHR 2010000002 2010-08-10; 2010000066 2010-05-11.

18.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3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9.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0.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1. NKHR2008000016 2008-09-02.

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공급이 좋았다고 한다.²² 이전보다 전기 그리고 원료도 부족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간부들의 수완으로 어느 정도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 대략 450g 주는 배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장마당에서 한 끼 정도는 해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반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바닥 계층의 식량사정은 전반적으로 한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²³ 심지어 식량을 직접 수확할 수 있는 일부 농민들조차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식량을 훔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평남 강서군)에서 옥수수를 훔친 농민에게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이 내려졌고, ○○○(함북 회령)은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훔친 죄로 주민들 앞에서 공개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 6개월 형에 처해졌다.²⁴ 반면 항일투사 가족, 공화국 영웅세대는 식량배급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공화국 영웅세대인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들이 배급을 못 탈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40kg 정도(통강냉이)를 배급받아 식량에 보탬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²⁵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에서 지원하는 식량의 상당수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UN기구에서 보낸 쇠고기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배급받는 장면을 UN기구가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은 다시 배급소(상점)에 고기를 바쳤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⁶ 인민반장을 지냈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UN감시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지원된 쌀로 밥을 해먹는 거짓행위를 2번 정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원된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²⁷ 또한 유니세프 차가 와서 직접 주민

22_NKHR2008000015 2008-08-27.

23_NKHR2008000017 2008-09-04.

24_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17호 (2008.9.24).

25_NKHR2008000010 2008-08-08.

26_NKHR2008000011 2008-12-16.

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지원받은 쌀은 일반 주민에게 가지 않고 80%는 군부에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장마당으로 유출된다고 한다.²⁸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군부대로 흘러들어가는 외부세계의 식량지원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때론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라도 겉으로 불평을 하거나 내색을 하지 않아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2008년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식량은 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식량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2009년 11월에 단행한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식량가격은 폭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질적인 식량난은 2010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화폐개혁 이후가 이전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더욱 식량난이 가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⁹ 그나마 배급을 받아오던 광산노동자들에게도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는 끊어졌다고 한다.³⁰ 특히 화폐개혁 이후에 아사자를 보거나, 아사자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³¹ 결국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통제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시장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북한주민들은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²

27_ NKHR2009000061 2009-10-08.

28_ NKHR2008000027 2008-12-02.

29_ NKHR 2010000002 2010-08-10.

30_ NKHR 2010000005 2010-03-16; 2010000010 2010-09-14; 2010000031 2010-11-09; 2010000071 2010-11-09.

31_ NKHR 2010000029 2010-11-09; 2010000058 2010-11-23; 2010000074 2010-04-20; 2010000097 2010-06-15; 2011000017 2010-10-05.

32_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p. 51.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제도의 측면에서 북한은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사회 복지제도의 양축인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다. 둘째, 대표적인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식·주의 공급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급여로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이는 소득보장제도에 해당된다. 셋째, 이와 달리 건강의 위협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인 경우에는 무상치료제로 분류된다. 그리고 무상치료제의 경우 현물과 현금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위와 같은 제도들은 국가사회보장, 의·식·주 공급제와 같은 기능을 가지며, 무상치료제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가계 생활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경우는 2차적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1995년 보험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2002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보험은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등 인체보험과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보험법 제2조). 그리고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관리기관과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이와 같이 북한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제도가 있는데, 「사회주의노동법(1978.4 제정, 1986년, 1999년 개정)」에 따르면 일정 근속연한을 채운 경우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에 이르면 연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4조). 또한 공적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보호정책으로는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사회보장정책이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필요한 재원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도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경제난으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제도와 실제운영간의 괴리는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7·1조치로 인해 복지시스템의 운영원리와 복지급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7·1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식·주 공급이 포기되다시피 되어버렸으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일반 개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금·현물급여의 수준과 성격 그리고 기능이 7·1조치 이후 변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7·1조치로 인해 노동의무를 이행하면 공평하게 따라오게 되어있는 각종 복지급여가 노동자 개인의 노동기술, 재정기여, 노동수입 등에 따라 차등화 되었다. 특히, 현물급여인 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사회보장 대상자의 생활보장을 하는 국가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7·1조치로 인해 북한 사회복지이념은 인민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의 변화로 이어져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 되었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은 극대화되었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왜곡 내지는 마비되었던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를 북한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과도한 국가책임을 자신들이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7·1조치는 북한식 '사회복지 개혁'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이러한 실태를 잘 드러내준다. 북한에서 정년 퇴임 후 남한으로 입국한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정년 퇴임자는 배급 600g, 노임 60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연금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되나 수급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³ 반면에 연금경험이 있는 경우도 사회보장이라고 보기 힘든 사례가 많다. 한 북한이

탈주민은 “연로보장이라는게 무슨 배급도 안주고 돈은 한 달에 쌀 반 kg 값인 750원이라 전혀 생활이 안된다”고 하면서 “아들이 없으면 그저 굶거나 해서 늙은이들은 다 죽는다”고 증언하고 있다.³⁴ 또한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농사를 짓거나 장사에 나섰다고 증언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³⁵

또한 선군정치 표방 하에 군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듯해도 제대군인에게 주택도 배정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22년 동안이나 군복무를 하고 소좌로 제대한 〇〇〇의 증언에 의하면 제대 후에 주택배정도 못 받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여 대흥단군 누나 집에 기거하며 중국을 몇 번 다니다가 결국 남한으로 탈북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⁶ 이러한 증언은 북한의 공적부조제도의 실상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사회보장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화로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병약자들의 희생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북한당국이 가장 앞세워 자랑하고 있는 부문은 ‘무상치료제’이다. 북한 헌법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의거하여 북한은 질병 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정책의 목표를 위해 무상치료제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담당구역 의사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33. NKHR 2010000032 2010-11-23; 2010000056 2010-11-16.

34. NKHR2008000020 2008-09-17.

35. NKHR 2010000042 2010-10-26; 2010000084 2010-03-30.

36.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들의 진료수준 및 자질이 미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4~5개 인민반을 책임지는 호담당의사에게 최고 4,000명까지 진료하게 하는 과다 할당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담당의사들은 검열에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담당하는 주민들의 혈압이 몇 월 며칠에 얼마였다는 식으로 마치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³⁷ 결국 의사담당 구역제(호담당제)는 사회주의 예방의학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형식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각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개, 시·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인민병원, 리 및 노동자 구역에 리 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동을 몇 개씩 묶어 종합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병원은 치료대상과 급수를 정해 놓고 진료대상이 아닌 주민들의 치료는 불허하고 있다. 간부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며, 평양에서부터 시·군단위의 일반병원 내에서도 간부와 일반 주민과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특히 평양의 ‘봉화진료소(김일성·김정일 가계와 당·정 장관급 이상)’, ‘어은병원(군 장령)’, ‘남산진료소(차관급 이상, 일부 인민배우·북송교포)’ 등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은 일반 주민의 치료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보통 동·리 진료소나 시·군·구역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에 비해 병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 인민병원 이상 급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라는 제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에 기인한 자원부족으로 무상치료제 역시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가령, 의사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진단을 해주고 처방도 해

37_ NKHR2008000024 2008-11-18.

주지만, 의약품 확보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에 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장마당이나 의사가 소개하는 개인에게서 유상으로 구매한다고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부족현상 속에서도 그나마 평양은 지방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한다.³⁸

북한을 방문하여 의료실태를 관찰한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주재 대표인 아이길 소렌슨은 2004년 1월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³⁹ 그는 북한 병원이 전기 및 식수난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겨울 혹한기에도 병실에 난방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였다.

북한에서 1999년 7월부터 의료 활동을 하다가 2000년 12월 추방당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⁴⁰ 북한의 일반병원에는 항생제와 반창고와 같은 의약품은 물론 외과수술용 메스와 같은 간단한 수술기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군고위층과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병원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기기, 심전도, X선 촬영기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독일의 현대식 병원 못지않은 병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일반 병원과 고급간부 병원 간의 엄청난 불평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사는 2000년 6월 28일 발표한 세계재해지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심각한 장비와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병원에서는 약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70%를 전통적인 약초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4만 명이 결핵에 걸리는 등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38. 북한이탈주민 OOO,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9. 『연합뉴스』, 2004년 1월 29일.

40. 노르베르트 폴러첸, “형무소 국가,” *Wall Street Journal* (April 17, 2001).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의 의료실태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 1968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1998년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 30여 년간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함북 ○○시병원 소아과의사)은 북한당국의 의료서비스는 1990년경부터 마비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의료정책에 있어 공식적으로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방의학적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조차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BCG 접종은 1992년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콜레라와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보안성 요원과 출장을 다니는 간부들 등 극소수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한다. 결국 아동들에게 단계별 면역을 조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콜레라, 유행성 간염 등의 전염병이 많으며, 간염 중에는 B형 간염이 많은데 이는 주사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한다. 2002년 8월에 탈북한 ○○○은 북한주민들이 간염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⁴¹

북한의 의료보건체계 및 보건기관 실태에 대해 의과대학(청진의학대)을 졸업하고 2007년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한 북한이탈주민은 함북 부령군 ○○구를 사례로 들면서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증언하고 있다.⁴²

북한에서 당의 방침은 예방의학이다. 최근 당이 예방의학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약이 없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겨울에 담당 지역에 홍역이 발생해 북한에서 만든 홍역 약을 주사했는데 맞은 사람이 계속 앓았다. 그래서 그 약을 검사해 본 결과 그 약이 모두 요제(가짜)였다. 따라서 이 약을 중단하고 UN에서 나온 약을 맞았더니 홍역을 앓지 않았다. 홍역 예방약 타오는 것도 힘이 세야 한다. 올라가서 약을 가져오는 것도 진료소장이 타오고 연줄이 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41.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42. NKHR2008000005 2008-07-22.

요즘 무상치료제라는 것도 거의 없어졌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다 돈이 들어간다. 접수하고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먹을 식량과 침구류도 가지고 와야 한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땃감)를 가지고 가거나 전기곤로를 가져간다. 약도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부들에게만 해당되고 거의 모두 본인 부담이다. 그러니까 무상치료제라는 것은 경제가 허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보건일꾼(의사)들의 수준은 대단히 열악하다(나쁘다). 내가 2급 의사인데 노임이 2,500원 나온다. 그렇지만 백두산 발전소 건설에 500원, 인민군 지원금으로 얼마씩 떼는 등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달 벌어서 술 한 병 살 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고는 있지만 장마당에 나가서 뭐해서 벌겠다는 생각만 한다. 의사들에게도 사회적인 부담이 많이 주어진다. 어느 병원이나 진료소 할 것 없이 의사들은 1년에 마른 약초를 40kg 씩 캐서 나라에 바쳐야 한다. 몸이 아픈 의사들은 장마당에서 약초를 사서 바치는 실정이다.

보건일꾼은 자기 개인기술을 발휘해야 살 수 있다. 소파수술을 하거나 중기 중절을 해준다면지 염증치료, 자궁근종 수술 등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 소파수술은 1만 원, 중기 중절은 2만 원 하는 식으로 값이 거의 공식적으로 매겨져 있다. 의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투쟁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의사들의 호당당제는 거의 다 없어졌다.

2010년에 탈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병원비는 지불하지 않으나 의사에게 술이나 식사 혹은 뇌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북한이탈주민은 공공연히 병원비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³

북한의 의료보건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의료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단천시 병원의 경우, 주사기 200개, 주사침 2,500개 등이 최소한 구비되어 있어야 할 장비인데, 주사바늘과 주사침이 5개 정도뿐이

43. NKHR 2010000082 2010-06-22.

며 이것마저도 주사기 피스톤이 마모되어 불량한 상태라고 한다. 청진기조차 제대로 없는 것은 미미한 수준의 문제이고, 검사 기자재 부족으로 혈액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의약품 및 장비부족으로 인해 무상치료에 어긋나는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병원에 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시장에서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 내려주며 의약품 구입은 환자에게 맡긴다.⁴⁴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청진시에서 1999년까지 의사였던 ○○○에 의하면 북한의 의사는 진단서를 떼어주는 역할에 불과하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한다. 단순 소화불량인 어린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청진지역 병원은 의약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계, 체온계 등의 기본 장비도 의사 6명당 1개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⁴⁵ 약품이 부족하여 병원에 얼마간 공급되는 약은 평소 의사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간부들에게만 치료약품을 투여해주고 나머지는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비록 의사가 처방을 해주더라도 환자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약은 가짜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인편이나 해외친척에게 의약품 구입을 가장 많이 부탁한다고 한다.

약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량이나마 공급되는 약의 대부분은 간부내지는 의사들이 횡령하여 유출하고, 그 다음은 투약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에 의해서도 암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공급과정에서 약

44.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워크숍, 2006년 1월 20일;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전.

45. 『연합뉴스』, 2002년 7월 3일.

의 유출이 매우 심해 과거 열 알의 약이 일선병원에 내려갔다면 지금은 한두 알이 내려갈 정도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이렇게 빼돌린 약으로 먹고 산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⁶ 결국 약품이 부족해지자 희소가치화 되어 암시장으로 유출이 되고,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해야만 했다.

둘째는 의료시설의 붕괴로 인해 무상치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버린 까닭에 가족들이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병원 초급당 비서를 지낸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지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들의 식사와 병실의 난방도 환자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입원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각 진료과목별로 입원환자의 비율을 제한하여 아주 위급한 응급환자 외에는 입원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무상치료제가 붕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사라졌음을 증언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진료만 할 뿐 치료에 필요한 약은 물론 식사 등 거의 모든 것이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무상치료제라 하면서 환자에게 “수술에는 이리이러한 약이 들어간다”라고 하거나,⁴⁷ 의사가 “폐니실린 값이 얼마”라고 하면서 그 만큼의 돈을 내라고 한다.⁴⁸ 심지어 다리절단 수술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는 수술비용이 없어 입원은커녕 통원치료조차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북한주민도 있다.⁴⁹ 따라서 주민들은 군병원, 도 병원 할 것 없이 간판만 국가병원일 뿐 개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무산 광산병원은 좀 낫지만 다른 병원들

46_ NKHR2008000009 2008-08-07.

47_ NKHR2008000024 2008-11-18.

48_ NKHR2008000026 2008-11-25

49_ NKHR2009000068 2009-11-12.

은 입원할 경우 자기 먹을 것을 별도로 다 가지고 가야하고, 약이나 주사가 있긴 있어도 그저 급할 때 한 두 대씩 놔주고 그 다음에는 없다고 증언.⁵⁰

- 북한이탈주민 ○○○은 병원에는 수술환자들만 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무슨 약을 쓰라고 적어주면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산다고 증언.⁵¹

- 북한이탈주민 ○○○은 회령산원에서는 진단만 내려줄 뿐 침대비만 안내고 침대보, 소독수, 약값은 환자가 내야하고, 의사선생들에게 하다못해 한 끼는 접대해야 하며 요즘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증언.⁵²

- 북한이탈주민 ○○○은 다쳐서 닷새 동안 유선병원에 입원했으나 식사, 반찬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했다면서 지금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증언.⁵³

- 북한이탈주민 ○○○은 장인어른(70세)이 간 질환으로 수술을 위해 2007년 10월 회령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치료비용은 약값 다해서 50만 원 들었다고 하면서 오직 수술만 병원에서 해주고 약값을 비롯해 식사 등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고 증언.⁵⁴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에서는 맹장수술은 5만 원, 외상수술(배를 찢는다거나)은 10만 원 등 수술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고, 약은 100% 다 본인이 사도록 바뀌었다고 증언.⁵⁵

- 북한이탈주민 ○○○은 담석증에 걸려 2006년 신암구역 청진시 병원에 보름간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는 자체 제조

50_ NKHR2008000022 2008-11-05.

51_ NKHR2008000029 2008-12-16.

52_ NKHR2008000027 2008-12-02.

53_ NKHR2008000016 2008-09-02.

54_ NKHR2008000013 2008-08-19.

55_ NKHR2008000021 2008-09-23.

한 담석증 약밖에 없어 장마당에서 약을 자체 구입했고, 식사도 직접 해먹었다고 증언.⁵⁶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산원에서 분만했을 때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먹었고, 병원에서는 국과 밥이 나오지만 더 잘 먹려면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증언.⁵⁷
-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중절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치료해 주지 않고 방치해 결국은 사망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증언.⁵⁸
- 북한이탈주민 ○○○은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찾아 갔으나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지 않다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을 찾으니 뇌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며칠 뒤 사망한 사례를 증언.⁵⁹

셋째, 북한당국은 민간요법을 장려하여 부족한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즉,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발휘와 ‘항일유격대식 사업’ 전개를 통해 각 병원이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생산기지’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약초재배 및 증식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의 전개를 추구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장티푸스에 걸렸으나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다고 한다.⁶⁰

넷째, 의사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약을 해주고 뇌물을 받으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료를 해주면 무료이기 때문에 야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병원에 공

56_NKHR2008000017 2008-09-04.

57_NKHR2008000023 2008-11-11.

58_NKHR2010000042 2010-10-26.

59_NKHR2011000020 2010-05-19.

60_NKHR2010000032 2010-11-23.

급되는 의약품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유출시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약을 사도록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⁶¹ 또한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들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직장출근을 면제받아서 장사를 하는 시간을 얻는데 활용한다고 한다. 심지어 군복무 중인 군인조차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제대하 사례도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2~2006년까지 4년간 군복무하다가(해상경비대, 무전수) 병을 꾸미어 입원을 한 다음 35만 원을 내고 진단서를 조작하여 6년 정도 복무기간이 남았음에도 제대했다고 한다.⁶²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생활상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것은 지방의사들의 경우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산에 개간해놓은 개인농장에 교대로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난에 따른 전력사정이 의료실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술과정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전을 걱정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술 전에 미리 전기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부탁하지만 평양적십자병원조차도 30% 정도 정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⁶³

북한은 매년 서방세계로부터 수백 톤의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다. 북한은 외부지원으로 들어온 의약품을 특권층용으로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역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전직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의약품이 국제지원 단체를 통해서 ○○시 병원에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역 및 병원의 간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빼내어가서 장마당에 비싼 값으로 판다고 한다.⁶⁴ 따라서 의사들이 다 빼돌

61.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3일, 서울에서 면접.

62. NKHR2008000030 2008-12-23.

63. 북한이탈주민 ○○○,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64.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워크숍, 2006년 1월 20일.

리기 때문에 병원에 약이 있다고 해도 UN에서 지원한 약은 거의 없고,⁶⁵ UN에서 지원한 약이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조직적으로 조절해서 내다 파는 실정이라고 한다.⁶⁶

65_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8000029 2008-12-16.

66_NKHR2008000027 2008-12-02.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3조도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조는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동등한 노동을 하게 되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휴식·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국제인권규약 A규약은 명시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

북한 헌법에 명시된 근로권을 살펴보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제70조)”라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북한 헌법에서는 16세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 금지(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모든 북한주민은 당이 정해주는 직장에서 법이 정한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까지 노동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즉, 북한에서의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결국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은 단체조직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도 북한은 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직업동맹은 단지 노동동원을 위한 통치조직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상의 괴리는 휴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 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노동법에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제65조)”라고 휴가일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휴가제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 헌법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0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규정(사회주의노동법 제33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8시간 휴식은 명목상의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정해 놓은 일별·월별·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90년대 속도창조운동’, ‘2009년도 150일 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어 왔다. 결국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 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회주의노동법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현재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는 셈이다.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은 원료가 없는데 노동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부분 근무시간에 사회동원을 나간다고 증언하고 있다.⁶⁷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장사에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자들의 개인노동 현상을 없애고 집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단위 등에 출근하도록 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인노동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⁶⁸

예를 들어 청진에는 김책제철소를 비롯해 유명한 기업소들이 많은데 이들 공장과 기업소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공장과 기업소 문 앞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67. NKHR2009000018 2009-03-26.

6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56호 (2007.1.24).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⁶⁹ 2008년 김책제철소(함북 청진)에서는 1월부터 배급을 주지 못함에 따라 무단결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에 제철소 초급당과 직맹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무조건 노동자들을 다시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⁷⁰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는 “노동관련 규정이나 권리는 의미가 없다. 직장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다.⁷¹

69_ NKHR2008000011 2008-08-12.

70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39호 (2008.6.5).

71_ NKHR2011000013 2010-06-08.



4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북한 헌법에서도 공민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그러나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직업 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할당을 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한 직장배치를 집행하기 때문에, 직장배치를 하는데 개인의 희망·소질·능력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직장배치는 당이 독점하고 있으며, 인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직장배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부, 도당조직부, 군당 조직부로

달라진다. 예컨대, 핵심직위인 중앙당의 모든 간부와, 도당 및 군당의 책임비서 등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직장배치를 집행하나, 군행정위원회의 과장과 지도원 이하의 일꾼들에 대하여는 군당간부부에서 인사를 담당한다. 한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도 및 시·군 인민위원회의 노동과가 담당하고 있다.

〈차별과 선택의 불균형〉

직장배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 크게 좌우한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그리고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반면에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일단 직장에 배치된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조동)도 능력보다는 성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근래에 들어 직장배치를 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경제력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즉 뇌물을 주고 직장을 배치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다.⁷²

〈무리배치와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과 작업장 등 인원이 부족한 곳에 당의 지시에 의해 집단적으로 필요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사

72. NKHR2010000001 2010-05-25; NKHR2010000004 2010-05-25; NKHR2010000061 2010-05-18.

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친필 서한’을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갖게 한 후,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9월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학생들이 ‘라남의 봉화’의 발원지인 함북 청진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통나무 산지인 자강도 량림군, 평양방직공장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02년에는 대흥단군종합농장에 천여 명의 청년제대군인들이 집단 배치 되었다고 한다.⁷³ 북한당국은 이들 진출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환송행사도 크게 열어 축하해주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무리배치 혹은 집단배치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라고 증언하고 있다.⁷⁴

무리배치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비준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더구나 통제도 엄격해 일단 여기에 포함되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집안의 자녀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간부들이 무리배치에 속한 자신들의 자녀를 빼돌린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간부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은 집단배치지로 복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배치지에 가지 않는 현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북한당국은 식량배급증명서, 공민증(주민등록증), 노동당원증 같은 신원서류 공문을 배치직장에 일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물론, 퇴거 전입수속까지 집단적으로 처리한다. 직장에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일 집단배치를 당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식량배급 및 생필품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이 직장이동을 불허하는 이유는

73.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74. 『연합뉴스』, 2001년 12월 13일.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해 제도적으로 주민들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강제적으로 배치하거나 직장이동을 막는 것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복종과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배급이 보장되지 않고 부패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무리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제대군인 천 명을 대흥단에 무리배치하였으나 다수가 도주했다고 한다.⁷⁵ 예전에는 제대군인들을 탄광, 광산 등지에 몇 백 명씩 배치하였지만 이런 곳에 배치를 하면 많이들 도망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근처나 고향에 보내고 있다.⁷⁶

〈뇌물과 직업선택〉

엄격한 노동법령이나 배급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존의 직업구조 및 직업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장배치와 직장이동을 위해 뇌물이 오가고 있으며 직장이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배치의 경우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뇌물을 상납하여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무역기관과 같은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돈을 힘들지 않게 벌 수 있는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노동과에 담배와 같은 뇌물을 바치고, 바친 돈 이상을 벌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⁷⁷ 이렇게 돈으로 원하는 직장에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도 직장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권력을 들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연구사로 연구원에 배치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에 배치받을 때 가장 영향을 끼친 것

75_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76_ NKHR2008000024 2008-11-18.

77_ NKHR2009000011 2009-03-03.

은 부모의 힘(권력)이었다고 한다.⁷⁸ 대학 졸업자들도 힘이 없는 학생들은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정해주는 데로 가고,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선을 하여 직장배치를 한 다음 거꾸로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라고 한다.⁷⁹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안면배치, 뇌물배치와 같은 간부사업 때문에 북한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⁸⁰

돈이나 권력 혹은 능력은 직장 내 규율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돈(자본금)과 능력만 있으면 외화벌이 회사에 등록만 하고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 외화벌이 회사가 당이나 보위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 통행이나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 기관 소속 외화벌이 회사가 돈벌이에 유리하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기업소라든가 외화를 다루는 곳은 그런대로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치받기를 원한다.⁸¹ 외화벌이 회사에 근무하다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일인당 한 달에 100달러씩을 회사에 상납하였다고 한다.⁸² 그러나 외화벌이 회사 지배인들이나 일꾼들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교화소에 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외화벌이는 ‘교화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⁸³

〈뇌물과 직장이탈〉

자본과 능력이 부족하여 외화벌이 회사에 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적만 걸어놓은 채 뇌물을 주고 장사를 한다. 의사에게 약간의 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고 아픈 걸로 허위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하고 장삿길에 나서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⁸⁴

78_NKHR2008000023 2008-11-11.

79_NKHR2008000001 2008-07-01.

80_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2월 3일, 서울에서 면접.

81_NKHR2008000021 2008-09-23.

82_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83_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직장에 무단 결근을 하면 단련대에 보내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 이와 같이 직장에 적만 걸어놓은 채 나가지 않으며 장사하는 사람을 ‘8.3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한 북한이탈주민은 한 달에 60만 원을 벌어 이중 20만 원을 직장에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⁸⁵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다니던 직장(교사)에서 집안사정을 이유로 해임을 요청한 후 기업소에 적을 걸어둔 채 통일거리에서 장사를 하여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를 벌었으며, 이중 4~5만 원을 한 달에 한 번 직장에 바쳤다고 하였다.⁸⁶ 고창탄광에서는 2003년경에는 5천 원씩 내고, 지금은 3만 원 정도 내면 8.3 노동자로 갈 수 있다고 한다.⁸⁷ 종이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하기 4년 전부터 8.3 노동자로 살았고,⁸⁸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04년부터 교장한테 돈을 주고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교원신분을 유지한 채 장사를 했다고 한다.⁸⁹

이렇게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의를 걸어놓고 ‘8.3 노동’에 나서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심지어 직장에 “8.3 하겠습니다”라고 제기하고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직장에 들여놓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⁹⁰ 북한에서는 직장에 출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고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8.3 노동자는 직장에서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생활총화 등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직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다. 일부는 뇌물을 제공하여 아프다는 핑계 등으로 아예 퇴직하여 장사에 뛰어들

84_NKHR2008000025 2008-11-20.

85_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86_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87_NKHR2008000025 2008-11-20.

88_NKHR2008000027 2008-12-02.

89_NKHR2008000011 2008-08-12.

90_NKHR2008000021 2008-09-23.

기도 한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직업의 선택과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으며,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직장에 돈을 내고 밖에서 장사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단결근이 많아지자 노동단련대형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 상화탄광(함북 온성)에서는 ○○○은 무단결근하면서 소토지 농사에만 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단련대 3개월 형을 받았고, ○○○은 가짜 의료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로 역시 3개월 형을 받았다.⁹¹ 이렇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동단련대형과 같은 법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노동자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먹지 못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소에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대체로 눈감아 준다고 한다.⁹²

〈직장이동〉

자의적 직장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직장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로 전락하여야 하며, 조직이동은 국가파견장을 받아 당적, 식량, 군사, 거주 관련 이동 문건을 해당 이동지에 제출하고 이동할 도시에서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⁹³ 하지만 이직하기 위해서는 지배인, 당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비서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우며,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해결된다고 한다.⁹⁴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옮겨 갈 직장의 채용증이 있어야 한다. 나를 받아주겠다는 직장에서 채용증을 받아서 원래 다니던 직장에

91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56호 (2008.6.30).

92_ NKHR2008000006 2008-07-24.

93_ 북한이탈주민 ○○○,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94_ 북한이탈주민 ○○○, 2003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군 노동과에 TV나 담배 등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 2003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제출하면 퇴직서를 떼어준다. 채용증과 퇴직서를 가지고 직장 내 노동부에 가면 노동수첩, 사로청 이동증 등을 준다. 그 다음에는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채용증을 보고 그곳으로 파견장을 떼어준다.⁹⁵ 한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채용증은 살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직장은 100달러, 괜찮다 싶은 직장은 500~1,000달러 정도라고 한다.⁹⁶

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을 수없이 많이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돈을 지불하고 배를 빌려서 어업을 하는 틈을 타 그 배를 몰고 남한으로 오기까지 하였다.⁹⁷ 이와 같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돈을 들여서 문건을 지우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한다.⁹⁸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직업배치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5_NKHR2008000022 2008-11-05.

96_NKHR2008000023 2008-11-11.

97_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98_NKHR2008000009 2008-08-07.

북한인권백서 2011





IV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
2. 아동권 ●
3. 장애인 ●



1



여성권

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제3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발전과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현행 여성 관련 법·제도¹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의

1.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정과 정권 창립 이후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 협약이행을 위한 민족조정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²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권 창립 초기에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과 외연적 성장 추구를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북한당국은 후계문제 등 정치적 고려에서 가정의 중요성 및 가부장적 위계질서, 가부장적 국가관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목상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과 실제적인 여성의 삶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1970년대 이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가운데 20% 내외가 여성의원들이었다. 그러나 2009년 4월에 출범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비율이 15.6%로 낮아졌으며,³ 지방 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가운데 20~3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원 비율은 다른 선진국가 못지않은 정치참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 선출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결과이기보다는 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

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는 2006년 3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2월 현재 미제출 상태이다.

3.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1998.7)와 제11기(2003.8) 대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였다.

다. 따라서 여성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의 의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큼 높지 않다.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4.5%에 불과하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고양 문제와 관련해 “중앙기관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단지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녀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⁴

또한 북한은 2002년 9월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15%가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 사법, 공직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외교부 내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여성의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외 공관을 비롯한 외교부 내의 여성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8월 제64차 유엔 총회에 회부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문타폰의 보고서에서도 헌법에서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중요 정책결정 직위에서의 접근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고 지적되었다.

4. 이원웅,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 심의참관 결과보고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학술토론회, 2001년 10월 3일) 참고.

여성들은 주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에서 간부로 등용되며, 이 외에 인민위원회 여성관리부, 시·군당 문건관리 부문 등에서 간부로 등용되어 일한다.⁵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당당한 근로자’로서 연령(만16~55세)에 관계없이 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하게 유해노동과 중노동에 동원되었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 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보건·상업·보육·교양·교육·체신·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특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01년 보건·아동·보육·상업 부문의 행정직 여성의 비율이 70%이며⁶ 간호사의 100%, 교사의 86%가 여성이다.⁷ 또한 2007년 12월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이하 제3·4차 통합보고서)’⁸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교원의 57%가 여성이며 유치원은 100%,

5.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최초보고서 참조.

7. 2003년 11월 북한의 2차 국제인권규약 A규약 이행보고서 심의에서 북한대표단이 밝힌 수치이다.

8.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AdvanceVersions/CRC.C.PRK.4.pdf>>).

소학교는 86%, 중학교는 58%, 대학(college)은 23%, 대학교(university)는 19%가 여성 교원이다. 그러나 2009년에 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세 이상 근로인구의 직업별 분포 조사에서 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55.6%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⁹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 등으로 수행한 '2008 북한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세 이상 주민의 일상적 활동상태 조사에서 '일한다(Working)'는 인구의 48%가 여성이었으나 '가사노동(Doing housework)'을 포함하면 여성의 비중이 51.4%를 차지한다. 즉 16세 이상 북한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관료나 관리자 직업 부분에서 남성의 비중이 83.6%인데 반하여, 봉사원, 판매원 직업 부분에서는 여성이 93.4%를 차지한다. 농림수산업 부분에서도 여성이 54.8%로 남성보다 높다.¹⁰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북한이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이고 특히 교육, 취업 및 기타 생활영역에서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전통적이고 틀에 박힌 억설과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현재 상황과 같은 경제위기 시에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기대와 기대보다 적은 수혜권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다중차별이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여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정치적 영향력

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DPR Korea, 2009, p. 200 (Table 37)에서 계산.

1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02 (Table 38)에서 계산.

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맹은 당 정책 관철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여성들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사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의 가족부양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여맹의 기능 및 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맹조직은 규율이 강한 편이며 최근 들어서는 사상교양,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단속 등 기능 및 활동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¹¹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여맹 조직생활은 지역에 따라, 또는 여맹 간부의 의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거의 일 년 동안 생활총화를 거르기도 한다.¹² 또한 식량난 이후로는 여맹위원장이 여맹원들의 어려운 생활을 적극 감안하여 생활총화나 학습을 진행하기도 한다.¹³

북한의 여맹조직은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성폭력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여맹은 노력동원에는 앞장을 서도 가정폭력이나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여성단체들과 북한의 여성차별 철폐협약 의무 이행을 감시할 독립된 인권단체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여맹의 주된 활동은 여맹원들을 노력동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여맹이 날아다닌다’고 말할 만큼 영농, 석탄생산, 비료생산, 철길공사, 도로 공사 등의 현장에서 여맹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북한당국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여맹원들을 건설현장, 농촌

11.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2.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8일, 서울에서 면접.

13.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14. NKHR2009000049 2009-08-07.

15. NKHR2009000006 2009-02-05; NKHR2009000058 2009-09-24; NKHR2009000070 2009-11-18; NKHR2009000073 2009-12-02.

등지에 노력동원하고 군대원호사업에도 여맹원들을 동원하며 이와 같은 노력동원의 명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부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⁶

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북한 헌법이나 제도가 표방하는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에 기존의 남성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었다. 또한 1990년 제정·공포된 「가족법」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 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을 법조문화하였다.

북한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과

16.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내지 임무와 관련해 북한은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 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 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 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¹⁷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1972년의 헌법에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제6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개정 헌법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제77조)”라고 명시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 내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

17.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3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9), p. 15.

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녀평등이란 말뿐이고 가정에서는 세대주가 우선이며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양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¹⁸ 대부분의 여성들은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¹⁹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상류층의 생활을 했던 30대의 북한이탈주민 남성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남존여비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봉건적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어 여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는 남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은 가정교육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을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으로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고정된 성 역할 분담은 거의 제거되었으나 남성은 바깥주인, 여성은 안주인이라 불리거나 큰일은 남성의 일, 잡다한 업무는 여성의 일로 여기는 등의 관습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 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음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

18_ NKHR2009000003 2009-01-15; NKHR2009000033 2009-05-26; NKHR2009000044 2009-07-02; NKHR2009000060 2009-10-06; NKHR2009000073 2009-12-02.

19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20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취사회의 반동적 룰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8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대주라고 불리는 남편은 자녀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2008년 탈북한 20~30대의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에 따르면 요즘에도 가부장권이 강하며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이지만,²¹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권을 손에 쥔 30대 여성들 사이에 남편에 대해 저항, 반발하며 특히 남편의 폭력행사나 경제적인 무능력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²² 또한 밖에 나가 일하는 아내를 위해 밥 짓기,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돕는 남편들도 있으며 당국의 교양으로 인해 20~30대의 부부관계가 점차 이전과 달라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한다.²³ 2009년, 201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보면 식량난이 지속되고 여성들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존여비사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다수가 남존여비사상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답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²⁴

21.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17 2008-09-04;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8000015 2008-08-27; NKHR2009000002 2009-01-14; NKHR2009000004 2009-01-22.

22.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20 2008-09-17; NKHR2009000044 2009-07-02; NKHR2009000060 2009-10-06.

23.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9월 13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21 2008-09-23; NKHR2008000009 2008-08-07; NKHR2009000070 2009-11-18.

24.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06 2010-05-25; NKHR2010000014 2010-10-05; NKHR2010000019 2010-10-12;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35 2010-11-09; NKHR2010000038 2010-11-02; NKHR2010000042

또한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 이혼사례가 보다 많아졌다고 답하였 으며 이혼 사유는 경제력, 폭력, 가정불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⁵ 그러나 북한에서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혼 판결을 잘 해주 지 않아 뇌물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키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²⁶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헤어져 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성폭력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 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 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 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 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 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체육교원을 했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중학교의 여학생 실습과목에서 재봉, 재단, 요리 등을 가르 치며 성교육은 생리시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²⁷

2010-10-26; NKHR2010000043 2010-11-02; NKHR2010000058 2010-11-23; NKHR2010000093 2010-03-30; NKHR2010000099 2010-07-13; NKHR201000003 2010-03-16.

25_NKHR2010000002 2010-08-10; NKHR000005 2010-03-16; NKHR2010000006 2010-05-25; NKHR2010000012 2010-09-14;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9 2010-10-12; NKHR2010000021 2010-10-12;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35 2010-11-09; NKHR2010000038; 2010-11-02; NKHR2010000040 2010-10-26; NKHR2010000042 2010-10-26; NKHR2010000043 2010-11-02; NKHR 2010000058 2010-11-23; NKHR2010000069 2010-10-26; NKHR201078 2010-06-08; NKHR2010000089 2010-06-08; NKHR2010000092 2010-06-22; NKHR2010000093 2010-03-30; NKHR2010000100 2010-07-13.

26_NKHR2009000001 2009-01-08; NKHR2009000005 2009-01-29; NKHR2009000056 2009-09-22; NKHR2009000060 2009-10-06.

27_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 여성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여성 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신매매란 북한의 법, 제도와 전혀 일치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 무슨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답함으로써 북한당국도 인신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 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연선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폭력을 당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²⁸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국에 가기를 원한 여성들의 요청에 따라 ‘알선료’를 받고 도강을 도와주며 ‘길안내’를 한 사람(길잡이)들까지 북한당국이 인신매매로 몰아서 공개처형, 본보기 처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²⁹ 사실상 북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국경을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보다는 ‘밀입국매

28.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02 2010-08-10;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0000075 2010-04-20.

29.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8000029 2008-12-16; NKHR2008000017 2008-09-04; NKHR2008000018 2008-09-11; NKHR2008000020 2008-09-17.

때'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³⁰

종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 개선을 미끼로 하여 발생하였다.³¹ 여성들 사이에는 입당하기 위해 당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를 얻고 승진하기 위해 직장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³² 군부대 내에서 남자 군관들에 의해 여자군인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여군들을 대상으로 입당을 미끼로 한 군관들의 성폭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³³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여성들을 낮게 대우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행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인민보안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⁴ 2009년과 201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보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대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⁵ 2009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폭행, 협박,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

30_ NKHR2010000006 2010-05-25.

31_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5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9000053 2009-09-08.

32_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33_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34_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35_ NKHR2010000014 2010-10-05; NKHR2010000035 2010-11-09; NKHR2010000038 2010-11-02; NKHR2010000040 2010-10-26; NKHR2010000042 2010-10-26; NKHR2010000053 2010-06-29;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0000058 2010-11-23; NKHR2010000078 2010-06-08; NKHR2011000017 2010-06-08; NKHR2011000022 2010-06-24.

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293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과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9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95조는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안전원, 열차 승무원 안전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에서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다. 강제송환 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하기도 하며,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 부위에 전기형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³⁶ 이와 같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⁷

이와 관련해 2005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다가 귀환한 여성이 그녀의 가족과 사회로 재통합되고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36.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pp. 102~105; 북한이탈주민 OOO, 2005년 1월 21일, 서울에서 면접.

37.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21 2008-09-23; NKHR2008000008 2008-08-01;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9000073 2009-12-02.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여전히 북한의 가정에서 남편들의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얼음)'을 한 남편들이 아내와 딸들을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³⁸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간통)사건이나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⁹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의 일이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며,⁴⁰ 당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충고 내지 비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⁴¹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남편이 상습적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국가보위부와 군당에 신고하였으나 가정일이라고 하여 비판서를 쓰는 정도로 일이 끝났다고 한다.⁴² 또한 대체적으로 매 맞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⁴³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⁴⁴ 드물게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남편이 구금되고 단련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⁴⁵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의하면 주부들이 장사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며,⁴⁶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

38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39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40_ NKHR2010000069 2010-10-26.

41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42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43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44_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9000065 2009-11-10.

45_ NKHR2010000014 2010-10-05.

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여성들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 제261조(매음죄)에 따르면 매음행위를 여러 번 한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음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매음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62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295조).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 사이에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⁷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매매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며,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사례도 증가하

46_ NKHR2009000053 2009-09-08; NKHR2009000057 2009-09-22; NKHR2009000058 2009-09-24.

47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29호 (2008.5.2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45호 (2008. 6.13); 성매매 실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는 남포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으며 “직업화”된 사례들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NKHR2008000021 2008-09-23.

는 추세이다.⁴⁸ 강제적인 성매매 사례도 적지 않으며 특히 간부, 또는 그 자녀들의 요청에 따른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⁴⁹

라. 건강악화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⁵⁰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아동권협약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동과 여성, 특히 어머니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략(2006~2010년): The Strategy of the DPRK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략은 모성·아동사망률 감소, 여성의 영양 관리 개선, 모성 사망원인 질병 퇴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목표달성 방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모성 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는 67명으로 세계 60위를 나타내고 있다.⁵¹

산모의 영양실조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도 높다. 『2007 세계인구현

48.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4호 (2007.10.17).

49.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9월 13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50.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 사이에 생리불순이거나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51.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

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생후 1년 미만 영유아 1,000명당 사망 수)은 42명이다.⁵² 2010년 대한민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2005~2010년)은 48.0%에 달하며 남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4.4%이다.⁵³ 또한 북한은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면서 출산률은 낮다.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합계출산(여자 1명이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1.94명으로 세계 전체 평균 2.56명보다 낮다.⁵⁴ 2010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합계출산(2005~2010년)은 1.86명이다.⁵⁵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부인과 질환과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질병은 자궁질환을 비롯한 부인병이며 발병의 주요 원인은 영양실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당국은 주장하기를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건강증진을 꾸준히 도와줄 호(戶)담당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 있는 보살핌을 받으며, 98%가 넘는 임신여성들이 출산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⁵⁶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출산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52.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ecators/e_indicator1.pdf>.

53.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분비로 나타냄.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0.12), p. 20.

54.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ecators/e_indicator1.pdf>.

55.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0.12), p. 20.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3), pp. 18~19.

북한에서 혼전·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혼외 임신,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혼전·혼외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관련 자료⁵⁷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학교에서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관한 교육을 아주 간단하게 받으며 피임방법, 성위생과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수의 경우에 단순히 낙태를 택하며 낙태는 의사들에 의해 마취 없이 집에서 시술된다. 집에서 시술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경제난 이후로 북한의 지방이나 소도시의 병원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강제 낙태로 인해 수감된 임신여성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면 2002년 신의주에 위치한 보위부 구류장에 함께 있던 임신 6개월의 동료수감자가 중국인의 아이라는 이유로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여 강제 낙태를 당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심한 구타를 당하였다고 한다.⁵⁸

수년간 지속된 기근에 따른 북한 여성의 건강문제는 위에서와 같은

57.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144호 (2010.5), p. 9.

58. NKHR2011000018 2011-01-18.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장마당 안전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부양의 책임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여성들 사이에 결핵을 비롯해 자궁암, 유방암,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었다.⁵⁹ 이러한 사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성들이 부인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가도 약이 절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대개는 개인이 장마당이나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며 거의 대부분이 중국약이나 UN에서 보내준 약이라고 한다.⁶⁰

위생적인 생리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⁶¹ 특히 중국에서 북송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에서 입고 온 “청바지”를 압수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조각내어 생리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다.⁶²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1회용 생리대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제천, 또는 현옷을 생리대로 사용한다.

59_북한이탈주민 000·000, 2004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0_NKHR2009000058 2009-09-24; NKHR2009000065 2009-11-10; NKHR2009000070 2009-11-18.

61_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86호 (2007.8.22);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62_NKHR2008000021 2008-09-23.



2



아동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은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전문에서는 아동은⁶³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헌법, 교

6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인보호법, 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⁶⁴ 한 예로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에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1992~2000년)을 수립, 시행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NCRC)를 설립하였다. 또한 북한은 아동복지를 위한 제2차 국가행동계획(2001~2010년)을 채택, 시행하였다. 북한은 1996년 2월 제1차 아동권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2년 5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을 명시한 제2차 아동권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 유엔 아동권위원회(이하 아동권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였다.

제2차 아동권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권협약 이행에 장애가 있으나 보고기간(1995~2000년) 동안 공중위생, 복지, 교육 등 아동 관련 부문에 많은 돈을 충당하였으며 아동의 생존 및 발전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1997년), 전염병예방법(1997년), 교육법(1999년) 등 국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식량 공급과 무상치료제 시행을 주장하였다. 2007년 12월 북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을 밝힌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행해진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들이 아동권협약의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3), p. 19.

원칙 및 요구와 일치함을 주장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상속법(2002년), 장애인보호법(2003년),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담배통제법(2005년), 조선적십자회법(2007년) 등이 각각 채택되었고, 형법(2004년), 가족법(2004년) 등이 각각 수정·보완되었다. 또한 북한은 2005년에 이루어진 교육법, 마약관리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형사소송법, 환경보호법 등의 수정·보완에 있어 아동권협약의 원칙 및 요구를 충분히 참작하였으며 이로써 아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2002년 아동의 교육권 증진과 동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교육에 관한 국가행동계획(2003~2015년)’(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수립하였으며 아동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전략(2006~2010년)’을 수립(2006년)하였음을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 설립된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NCRC)의 기능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며, 2005년부터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된 ‘사회주의 도덕’ 및 ‘사회주의 도덕과 법’ 등의 교과목 수업을 통해 아동권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은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라는 세대를 총명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법, 교육법, 의료법, 가족법, 민법 등에 다양한 어린이 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2007년 12월에 제출한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아동권위원회의 심의가 2009년 1월 23일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1월 29일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⁶⁵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아동권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정적 조치와 기타 조치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신보건장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2006~2010년), 2002~2007 AIDS 예방전략, 모성과 아동 보건의료에 중점을 둔 2008~2012년을 위한 1차 보건의료전략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관한 전략,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통합 행동 계획, 2008년 10월의 인구조사,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설립 등이 그것이다(제3항). 그러나 아동권위원회는 2002년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아동권위원회가 채택한 많은 권고사항들이 불충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조치되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들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제3·4차 통합보고서 심의 후 채택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제5·6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협약 이행을 감시할 독립적 기구의 부재와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북한내 NGO의 자율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11·13항).

가. 식량권 및 건강권

대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2002년 UNICEF·WFP와 북한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영양실태 조사에서 조사 표본 6,000명의 아동들 가운데 20.15%가 저체중, 39.22%가 만성영양장애, 그리고 8.12%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표본 6세 미만 어린이 4,800여 명 가운데 23%가 저체중, 37%가 만성영양장애, 7%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

65.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50th Session,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RC/C/PRK/CO/4 (March 27, 2009).

났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9.5%가 저체중, 34.0%가 만성영양장애, 6.1%가 급성영양장애이며 2000년 이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12월에 발간된 UNICEF 보고서에는, 2003~2008년 기간에 6세 미만 어린이 23%가 저체중, 9%가 쇠약, 45%가 발육부진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또한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이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제6조 2항)”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제27조)”는 아동권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권협약 제24조는 아동의 건강권 이행과 이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로서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공공의료권을 침해당한 아동은 없었으며 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건강서비스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이 약화되고 일부 아동건강지표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연재해의 여파를 없애기 위한 정부 및 주민들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건강서비스 수준도 1990년대 초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등의 수정·보완과 약초법, 마약관리법, 담배통제법 등의 채택을 통해 아동 건강 증진

⁶⁶ UNICEF, *The State of World's Children*, special edition (November 2009), Table 2. Nutrition.

및 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증을 확보하였으며 ‘재생산 건강 전략(2006~2010년)’과 ‘에이즈 방지 전략(2002~2007년)’도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기초적인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위생적인 식수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하여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어린이 질병은 설사와 급성 호흡기 계통 전염병이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식량, 안전한 식수, 위생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북한당국에 권고하였다(제50·51항).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2000년 이래 아동사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 현재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1,000명 당 5세 이하 사망 아동의 수)은 4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남자 56명, 여자 49명으로 한국의 남자(5명)·여자(5명)에 비해 10배 웃도는 수치이다.⁶⁷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2009 세계 아동현황’ 연례보고서에도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55명이며 세계 189개국 가운데 62위를 나타내고 있다.⁶⁸ ‘2010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는 영유아 사망률(신생아 1,000명 당 영유아 사망률)이 47명,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2005~2010년)은 63명으로 나타나 있다.⁶⁹

67.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91.

68.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9,” p. 117.

2002년 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당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머니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영양실조가 어린이 영양실조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4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의 국제적십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반에 실시된 전국 영양 평가는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자 보건의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겨울철에 질병 발생률이 매우 심각하며, 난방의 부족에 따라서 보건 기관의 침상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월 미만의 유아들 중 폐렴 등 급성 호흡기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9.8%에 달하였으며,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⁷⁰ 이와 관련하여 제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육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의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발육 부진, 체력 저하, 또는 사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제23항). 위원회는 특히 아동들의 만성적·지속적 영양실조와 급성 호흡기 감염, 설사와 같은 유아 질병, 임산부의 높은 빈혈증과 영양부족 등의 모성건강이 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수의 나쁜 질과 위생, 모든 아동에게 가능하지 않은 무료 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44항). 또한 위원회는 미혼의 청소년 임산부들이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식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69_UNFPA,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pp. 96, 102.

70_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MAAKP002) - Country Plan 2010-2011" (October 20, 2009).

없을지도 모르며 특히 청소년 임신부가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제46항).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마약(얼음)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 복용 및 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⁷¹ 마약 복용 및 거래 사례는 주로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² 이와 관련해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 아동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감정적·심리적 발달 및 복지에 대한 유해한 영향, 아동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고 증가, 국가의 양귀비 농장 노동에 아동 동원 등의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61항).

나. 신체적·정신적 보호권

아동권협약 제19조와 제20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은 국가적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차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보육에 대해 가족 및 사회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6년 이래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어린이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들 거리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직업

7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26호 (2010.1.19).

72. 『뉴스스』, 2011년 1월 5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2007년 8월과 9월의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아동보호 시설들이 파괴, 침수되어 재정적·물질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부는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피해아동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2002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서 국가는 가정환경을 상실하거나 나쁜 조건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 특별보호를 제공하는 바, 헌법 제72조에 따라 생계수단이 없는 어린이들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8조에는 국가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육원과 애육원(고아원)에서 돌본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보호시설의 많은 아동들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니며 이들 중 상당수가 그러한 시설들에 관례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정보와 부모가 수감 중인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함을 표하였다(제34항).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을 겪으면서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아동들은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9·27 수용소'⁷³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수용된 아동들의 배고픔조

73. '9·27수용소'란 1997년 9월 27일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꽃제비와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모아 관리하는 기구를 말하며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여관이나 아파트 등의 빈방을 이용한 시설이라고 한다.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p. 83.

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등 이들의 보호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북한당국은 시·군 단위로 꽃제비 구제소를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엄격한 규율 생활에 대한 부담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구제소를 몰래 빠져나오는 아동들이 많다고 한다.⁷⁴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교환 이후 꽃제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꽃제비들은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등의 시설로 보내진다고 한다.⁷⁵ 한 예로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한 2층 건물의 '9·27 상무'에 70~80명의 꽃제비들이 수용되어 있다.⁷⁶

한편 북한당국은 각 가정에서 꽃제비 아동들을 데려다 기르는 것을 사회적 미풍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⁷⁷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2,528개 가정에서 부모를 잃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동권협약 제22조에 따르면 협약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보고기간에 난민 지위를 얻으려하거나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난민으로 간주된 아동은 없었으며, 실제로 난민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으며 북한에는 인종분쟁, 또는 사회·정치적 모순이나 대결이 없으므로 난민과 난민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체류 탈북자들 가운데는 다수의 18세 미만 아동이 체포 및 북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구걸과 노숙

74.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04 2008-07-17;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87호 (2008.8.12).

75. NKHR2010000010 2010-09-14; NKHR2010000011 2010-09-14; NKHR2010000040 2010-10-2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0호 (2010.2.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2호 (2010.2.18).

76. NKHR2010000067 2010-04-27.

77.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을 하며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심한 영양실조와 피부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설, 구타 등의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 일부는 폭력, 절도, 인신매매 등에 연루되기도 한다.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매춘이나 불법 성행위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바 아동권협약의 관련 조항(제35조)을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는 아동이 성착취에 이용된 사례가 없으며 아동매매 및 유괴 관련 사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식량난 이후 북한과 중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많아졌으며 1990년대 말 이래에는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성매매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매춘의 정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한 조사와 예방 대책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65·66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인신매매와 북한에는 인신매매 관련법이 없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제67항).

다. 사법권 및 국적취득권

아동권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해서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와 제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도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와 제190조에 의거하여 검사의 승인 하에 방과 후 집이나 특정구역에 아동을 감금하며 그러한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

한의 법률은 국제협약, 특히 아동권협약의 기준에 역행하지 않게 개정되어 왔는바, 한 예로 아동의 사형적용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 아동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보고기간 동안(2001~2007년)에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런 대우, 처벌을 받은 아동이 없었다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송환되는 아동들은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수용소 생활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꽃제비, 당국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 경찰 또는 다른 국가 기관에 구금된 아동들이 구금기간에 가혹하게 다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제31항). 또한 북한 당국은 난민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권위원회는 근접 국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이 되돌아오거나 송환될 경우 가혹하게 다루어진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제55항). 아동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송환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인신매매된 아동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적절한 회복과 사회적 통합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의 제공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제67·68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아동권협약과 그 밖의 관련된 유엔 기준들에 부합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만한 청소년사법체계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데에 유감을 표하고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유엔 기준에 따라 14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에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사법정의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제72항).

아동권위원회는 장애아동, 시설내 아동, 법적 분쟁중인 아동들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이 사실상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동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든 부모의 것이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위에 근거한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한층 더 우려하였으며(제19항),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의 이행을 감시,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제20항).

아동권협약 제7조 아동의 국적취득권과 관련해 북한은 “어린이는 무국적자일 수 없으며 국가의 보호 없이 방치될 수 없는 바, 부모 중 하나가 조선인이면 시민권은 자동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족, 또는 조선족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 등이므로 출산한 아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 교육권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등을 지향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이를 구현하는 학교의 사명, 그리고 교육 목표 관련 법조문 등이 시사하고 있는바,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우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상화와 관련해서는 소학교 4년 동안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어린시절’을 배우고, 중학교 6년 동안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혁명활동’, ‘혁명력사’ 등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를 답사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

며(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13조 제1항),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지향해야 한다(아동권협약 제29조 제1항). 그러나 ‘조선소년단’ 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 등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은 교육에 의한 보편적 인격의 완성을 방해받으며,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집단화· 획일화 되어있으며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는 특정학습을 강요당하는 바, 이는 곧 북한청소년들이 교육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동권 협약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제32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은 16세 노동연령과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실천의 결합 원칙 구현, 노동애호정신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법제화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그와 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된다.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면 북한 청소년들은 중등반이 봄에 한 차례 약 4주 동안, 고등반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약 8주 동안의 무노동을 하며, 이때에 농촌지원이나 사회건설에 동원되어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바, 이러한 노동수행은 교육에 방해가 되는 정도였다고 한다.⁷⁸ 관련 소식지에 따르면 하루 보통 8시간 이

78.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7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상 노동을 말하는 ‘일공노동’은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평안북도 신의주의 중학생들이 야산 과수밭 조성에 노력동원 되어 ‘일공노동’을 하였다고 한다.⁷⁹ 최근에도 북한의 아동들은 연 2~3회씩 농촌지원과 사회건설에 동원되고 있다.⁸⁰ 농사철에는 소학교 3학년 이상부터 매일 1~2시간씩 농촌에 노력동원 되고 있다고 한다.⁸¹

아동권위원회는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헌법상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북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동임을 지적하였다(제59항).⁸²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의 노동 관련 법률들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착취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해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60·61항).

한편 북한의 아동교육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으며, 2~3일 동안은 사격장에서 총쏘기 실습도 한다.⁸³ 이와 관련해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군사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제56항)”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학교 5학년생들은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79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8호 (2010.3.30).

80_ NKHR2010000021 2010-10-12; NKHR2010000029 2010-11-09; NKHR2010000035 2010-11-09; NKHR2010000042 2010-10-26; 2010000043 2010-11-02; NKHR2010000044 2010-11-02; NKHR2010000069 2010-10-26; NKHR2010000075 2010-04-20; NKHR2010000078 2010-06-08.

81_ NKHR2010000075 2010-04-20.

82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s of Korea(unedited version),” 2009.1.31.

83_ 북한이탈주민 OOO, 2005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1주일씩 강행군을 하기도 한다.⁸⁴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초기 군사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57항).

아동권협약(제28조 제1항)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북한은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제4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공교육에의 접근은 ‘11년 무상 의무교육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국가관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실력 경쟁보다는 입학 을 원하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조직생활평가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은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교사를 양성, 배출해 내는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핵심 엘리트들을 양성, 배출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출신성분이나 당성과는 무관하게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⁸⁵ 대학진학 대상자들 가운데 김일성 친·인척과 항일투사 자녀 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중학교 4·5학년 때 중앙당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어 국가에서 기용하기로 예정된 학생들, 예를 들면 명예위병대(사열·영접), 6과,⁸⁶ 김정일친위대 등은 국가수요에 따라 대학

84_NKHR2010000011 2010-09-14.

85_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86_중학교 여자 졸업생들 가운데 출신성분, 외모, 재능, 가족배경,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이전에는 '5과'라고 하였으나 '6과'로 바뀌었으며, '6과'에 선발되면 금수산 기념공전

을 배정받는다.⁸⁷

1990년대 이래 대학진학에 있어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는 공부실력,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에서는 실력을 우선으로 하며, 좋은 성분이 아니더라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이·공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경제난 악화 이후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성분보다 기본이 돈”이며 “대학은 돈 없으면 갈 엄두를 못 낸다”⁸⁸고도 한다. 특히 외국어대학, 음악무용대학은 간부 자녀들이 현금을 뇌물로 주고 입학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⁸⁹ 최근에도 북한사회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경제력이며 토대(출신성분), 권력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⁰

북한은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소학교·중등학교 및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각각 48.7%, 34.4%라고 밝혔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여자아동도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입학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제 55항b)”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아동교육에 있어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안내원, 당중앙위원회 건물관리원, 호텔 접대원, 중국 내 북한식당 접대원 등으로 배출되므로 여학생들이 '6과'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1월 8일, 서울에서 면접.

87.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8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88.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89.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90.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29 2010-11-09; NKHR2010000035 2010-11-09; NKHR2010000042 2010-10-26; NKHR2010000044 2010-11-02; NKHR2010000069 2010-10-26; NKHR2010000075 2010-04-20; NKHR2010000078 2010-06-08; NKHR2010000089 2010-06-08; NKHR2010000094 2010-03-30; NKHR201000022 2010-06-24.

북한은 1975년 9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경제난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부족하나마 매 학기마다 주던 학용품 공급 주기가 3~5년으로 길어졌고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로는 아예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정에 있어 평양의 특수학교는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특수학교를 다닌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교과서 공급도 차질 없이 잘되었고, 학용품만은 개인이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썼다고 한다.⁹¹ 경제난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와 학용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방, 학습장, 공책, 연필, 필통 등은 거의 모두가 중국제품이라고 한다.⁹²

한편 국가가 지급하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지면서 2002년 이후부터는 교육부담의 70% 정도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는데, 연필, 종이 등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건축, 학교 건물 관리, 그리고 겨울철 땀감용 나무까지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지웠다고 한다.⁹³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학교(교실) 꾸리기, 연구실 꾸리기, 위생문 화사업, 교원생일, 학교졸업, 인민군대 지원, 건설장 지원, 화목비(火木費) 등 각종 명목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⁹⁴ 한 예로 각 학교에서 거두는 화목비 실태를 보면 소학교에서는 화목비를 현금으로 거두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산에 가서 땀나무를 마련해 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단 등교 거부 사태도 몇 차례나 발

91_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8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92_ NKHR2008000024 2008-11-18.

93_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p. 111.

94_ NKHR2008000009 2008-08-07;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8000012 2008-08-14.

생했다고 한다.⁹⁵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담금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⁹⁶ 이와 관련하여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교육의 전반적인 질과 학교 기반시설이 자원의 구조적 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이며 자연재해나 경제적 고난으로 인해 결석률이 높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제52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한 부가적인 비용이 높은 결석률을 초래한 요인임을 우려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교육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음을 학교 출·결석 상황에서 엿볼 수 있다. 북한 청소년의 결석률 급증과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장기결석 및 계절적으로 60~80%의 낮은 출석률을 우려한다(제54항a)”라고 지적하고, “장기결석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제55항a)”을 권고한 바 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급 학교의 출석률이 점차 높아졌으며 최근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70~8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⁹⁷ 그러나 평양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장사를 다니거나 산밭에 나가 텃밭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⁸ 관련 소식지에 따르면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지의 소학교와 중학교들에서는 굶주림과 이로 인한 질병 등으로 출석률이 낮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95.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1호 (2008.2.13).

96.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28 2008-12-12; NKHR2008000006 2008-07-24;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9000032 2009-05-19; NKHR2009000044 2009-07-0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51호 (2010.7.9).

97.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16 2008-09-02.

98.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05 2008-07-22; NKHR2009000044 2009-07-02; NKHR2009000070 2009-11-18.

중 세외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아예 포기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한다.⁹⁹

북한의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로는 보급은 물론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국제인권규약 A규약 이행보고서(제2차)를 통해 북한은 1995년 자연재해로 많은 학교 시설의 파괴와 교육기자재 유실, 그리고 교육기자재 및 관련부품 생산단위의 손실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¹⁰⁰ 그러나 학부모들의 부담금으로 학교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도 한다.¹⁰¹ 하지만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학교들은 시설 및 교육기자재가 여전히 매우 낙후된 상태이며 2007년 8월과 9월에는 홍수로 인해 많은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가 유실, 또는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7년 12월 제출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316개 학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그 결과 35,0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여전히 모든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 아래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완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무상의무교육을 받으며 소학교 입학률은 100%이고, 진학률은 99.7%, 졸업률은 100%라고 주장한다.¹⁰² 그러나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9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31호 (2010.2.1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59호 (2010.8.4).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제2차)』, 2002년 4월 9일.

101.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2009.8.27),”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3), p. 19.



3



장애인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장애인 규모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계밀알연합회가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부터 북한의 장애인실태 조사 결과(1999년 기준)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29만 6천51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 장애인 16만 8천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천88명, 중증장애인 6만 8천997명, 정신장애인 3만 7천780명 등이다. 평양에는 1.75% 가량이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이 살았다.¹⁰³

또한 2009년 북한당국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5년에 수행된 선별조사에 따르면 3,639명의 아동들이 기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2,176명은 소년들이고 1,463명은 소녀들이라고 밝혔다.¹⁰⁴

103. 『연합뉴스』, 2006년 4월 9일; 2006년 11월 23일.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2009.8.27),”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3), p. 20.

〈표 IV-1〉 연령별 장애아동

(단위: %)

0~4	5~6	7~10	11~17	연령
11.6	11.2	30.2	47.0	100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A규약 2차 보고서에서 장애인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와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장애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취학 전 장애인은 누구나 특별병원에서 의료치료를 하고, 취학연령의 경우 의료치료를 지속하면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3개 맹아학교와 9개 농아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에서 1,8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소학교 및 고등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특별 전문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들 어린이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특별히 건립된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 후 제시한 최종 검토 의견서에서 장애아동들이 정규 교육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장애인들이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⁵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장애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보

105. 위의 글.

면 장애인 차별대우는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장애인 차별대우의 대표적 사례는 난쟁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정관수술의 시행과 격리시설의 운영이다.

-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
- 북한이탈주민 ○○○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난쟁이 수용소가 존재하였다고 증언.¹⁰⁶
- 북한이탈주민 ○○○은 1993년 증언자가 근무한 병원에 난쟁이 2명이 입원하였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비뇨기과에 입원하였으며 정관수술을 했다고 증언.¹⁰⁷
- 북한이탈주민 ○○○은 사돈관계인 ○○○이 1980년대 말 난쟁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정관절제수술을 받았다고 증언.¹⁰⁸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부전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있으며 정관수술을 시켰다고 증언.¹⁰⁹
- 북한이탈주민 ○○○은 1998년 경 증언자의 친언니가 남자 난쟁이 1명을 목격하였으며, 그 사람이 사는 곳까지 갔었는데, 난쟁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관리위원장였다고 증언.¹¹⁰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7월 삼석발전소 부근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난쟁이들이 삼수군 관생이라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¹¹¹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 격리수용 및 강제불임을 한다고

106.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107.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108.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09.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110. NKHR2009000029 2009-05-01.

111. NKHR2009000028 2009-04-28.

들었다고 증언.¹¹²

-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김형직(후창)군 상창리에서 난쟁이촌을 목격했다고 증언.¹¹³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들은 격리수용하며, 양강도 김형직(후창)군에 '난쟁이촌'이 있다고 증언.¹¹⁴
-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에 평남 평성시에서 난쟁이촌을 목격했다고 증언.¹¹⁵
-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풍산에 집단적으로 난쟁이들이 거주하며 결혼은 못하게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¹¹⁶
- 북한이탈주민 ○○○은 1980년대 말, 아버지가 친구들과 얘기한 내용을 전하면서, 난쟁이는 '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데려가 생체실험을 하였던 바, 난쟁이들이 개발 중인 화학물질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으며 기형아들도 실험대상이었다고 증언.¹¹⁷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난쟁이를 격리에서 풀어주었다는 증언과 난쟁이 격리시설이 해체되었다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는 수용소에 격리 수감시키며, 남자 난쟁이 경우에는 불임수술을 시켰으나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1998년, 1999년경 석방시켰다고 증언.¹¹⁸
-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 '후창군(김형직군)'에 난쟁이촌이

112. NKHR2010000007 2010-03-16.

113. NKHR2011000005 2010-08-10.

114.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1000001 2010-03-23; NKHR2011000018 2011-01-18.

115. NKHR2010000097 2010-06-15.

116. NKHR2010000071 2010-11-09.

11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18. 북한이탈주민 ○○○, 2003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고 증언.¹¹⁹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난쟁이의 경우 양강도 후창군 9리(월탄리) 부근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으로 만들어진 ‘난쟁골’에서 나오려면 일정 금액이 필요하며, 지금은 시내에 많이 올라온다고 증언.¹²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어렸을 때 난쟁이들을 모아서 외딴 곳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다고 증언.¹²¹
- 북한에서 직업이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난쟁이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¹²²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몇 명의 난쟁이들을 연사군에서 보았다고 증언.¹²³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무산군 남산구에서 여자 난쟁이를 보았는 바, 옛날에는 격리수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를 낳았다고 증언.¹²⁴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1980년대에 신장 150cm 이하를 조사하여 등록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피임수술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고 증언.¹²⁵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곱추’(척추장애인)를 많이 보았으며 이들은 격리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산다고 증언.¹²⁶

둘째,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119. NKHR2009000023 2009-04-16.
 120. NKHR2009000030 2009-05-07.
 121.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122. NKHR2008000024 2008-11-18.
 123. NKHR2009000011 2009-03-03.
 124. NKHR2009000009 2009-02-19.
 125.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126.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한다. 북한당국은 장애인들이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특기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평양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은 주기적으로 이주를 실시하기보다는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주시킨다고 증언.¹²⁷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방으로 이주시킨다고 증언.¹²⁸
- 북한이탈주민 ○○○은 1980년경 지적장애 자녀 때문에 평양에서 살 수 없었다고 증언.¹²⁹
- 북한이탈주민 ○○○은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살 수 없게 하고 평양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¹³⁰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후천적 장애인은 지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라다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며, 이는 성인이 되면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증언.¹³¹
- 북한이탈주민 ○○○은 장애인들은 방침 건(방침대상)으로 분류되며 장애인들은 평양거주를 하지 못하는바, 북한당국은 평양은 조선의 얼굴이므로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내세웠다고 증언.¹³²

127. 북한이탈주민 ○○○, 1999년 5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00년 5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128.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129.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30. NKHR2009000013 2009-03-11.

131.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32.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그러나 최근 평양 방문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시골로 보냈는데, 평양에도 장애인들이 거주한다고 증언.¹³³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장애인들을 보았고, 자신이 아는 간부 집 자식이 소아마비인데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 보았다고 증언.¹³⁴
- 평양에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은 원칙적으로 난쟁이, ‘곱추’(척추장애인), 눈먼 사람 등 장애인들은 1970년대, 1980년대에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평양에서 살지 못하게 했다고 하며, 난쟁이들은 평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잠시 올라 온 사람들이라고 증언.¹³⁵
- 북한 선교단체인 등대복지회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평양에 건립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북한당국의 편견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고 증언.¹³⁶
- 평양이 고향인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는 귀머거리, ‘곱추’(척추장애인), 난쟁이 같은 장애인들을 평양에서 추방시켰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며 평양 거리를 가다가 한 명씩 볼 수 있다고 증언.¹³⁷
- 1998년과 1999년에 평양을 다녀왔다고 한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장애인을 많이 봤다고 증언.¹³⁸
- 평양에 살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외국기관과 외국인들이 평양에 가장 많기 때문에 평양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관습이 국제

133.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134.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35.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36. 등대복지회 관계자와의 면담시 증언, 2008년 2월 20일.

137. NKHR2008000023 2008-11-11.

138. NKHR2008000029 2008-12-16.

사회에 알려진 이후로는 평양에 사는 장애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증언.¹³⁹

또한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 200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난
쟁이들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¹⁴⁰
- 200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는 눈에 띄지 않
으나 ‘곱추’(척추장애인)는 많이 보았으며 이들은 아이를 낳고 가
정생활을 한다고 증언.¹⁴¹
- 북한이탈주민 ○○○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황해남도 해
주시에서 목격했다고 증언.¹⁴²
-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에 옆집에 놀러 온
난쟁이를 목격했다고 증언.¹⁴³
-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며칠 전 양강도 운흥
군 생장구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난쟁이 2명(남자)을 목격했다
고 증언.¹⁴⁴

위와 같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북한
당국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54개조)’을 채택하였으며, 이로써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장애자보호
법’은 “장애자의 회복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139.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144호 (2010.5), p. 9.

140. NKHR2010000102 2010-07-13.

141.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142. NKHR2011000023 2010-06-08.

143. NKHR2010000018 2010-10-05.

144. NKHR2010000055 2010-11-30.

주는 데 이바지”(제1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자를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자보호법’에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제2장), 장애자의 교육(제3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제4장), 장애자의 노동(제5장)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자에 대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 보장(제9조), 소학교 및 중등일반의무교육 보장(제17조), 장애자의 지망에 따라 실력을 위주로 한 전문학교 및 대학 입학 보장(제18조), 장애자의 육체적·정신적 특성 및 장애 유형에 따라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조직, 운영(제19조), 당사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장애자를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적재적소 배치(제32조), 장애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장애자연맹의 실무사업 담당(제45조) 등이 있다.

장애자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조정위원회(NCRC)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통계국, 보건성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성이 장애아동의 재활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김만휴 병원에 재활센터를 건립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도 결성하였다. 1998년 7월 비정부 단체로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발족되었으며 2005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연맹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수행, 보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관심도의 제고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도와 시·군에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조직과 관련하여, “20여 명의 전임일꾼과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진 연맹은 각 도와 시·군 산하 위원회와 필요한 기구들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맹은 장애인 문화연맹을 설립하

였고, 장애인 예술 연맹, 장애아동기금, 장애인 지원 무역회사 등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¹⁴⁵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의 월간 화보 '조선'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연맹이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연맹은 상이군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함경남도 함흥정형외과병원과 강원도 통천 시중호요양소 등의 시설을 개진·현대화했으며 함흥교정기구공장에 수지(폴리프로필렌) 교정기구 공정을 추가해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맹에서는 특히 평양시에 장애인을 위한 '회복센터(재활센터)'를 짓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 외에도 연맹이 원산농아학교 개보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의 농아학교와 관련 기관에 '손말(수화) 사전'과 '손말참고서' 등의 책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장애자보호연맹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¹⁴⁶

북한당국은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차원에서의 남북한 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 남북 장애인 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에서는 대구대 대표단, 북한에서는 조선적십자병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2월 19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재활 치료, 특수교육 부문 등에 대한 상호간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남북 간의 재활과학 분야 첫 토론회가 개최¹⁴⁷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제3·4차 국가보고서,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CRC/C/PRK/4).

146. 『민중의 소리』, 2006년 4월 5일.

147. 『연합뉴스』, 2006년 12월 22일.

- 2007년 2월 26일 북한 선교단체인 등대복지회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평양 대동강구역 대추섬에 노인·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합의
- 등대복지회의 지원 아래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 거리에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로서 종합복지관인 '보통강 종합편의'를 건립
- 등대복지회가 북한 각지의 농아학교(8곳, 총 학생수 1천35명)와 맹아학교(3곳, 84 명)에 생필품, 학용품, 특수교육기자재, 농기구 등을 지원¹⁴⁸
- 등대복지회의 주선으로 북한의 장애인 기관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대표 3명이 2006년 11월 25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FESPIC Games)에 참관단 자격으로 참여¹⁴⁹

또한 북한당국은 2007년 12월 1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Pyongyang Times*에 'For more rights of the disabled'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는 장애인과 관련한 최초의 대외홍보였다. 2009년 북한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¹⁵⁰에 따르면 맹인어린이와 농아어린이들을 특수학교들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밖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보통학급에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예군인 공장들과 복지편의 봉사소들이 세워졌고 그들에게는 강장제와 보행보조기구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유급휴가와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

148. 『연합뉴스』, 2006년 10월 23일; 2007년 2월 26일.

149. 『연합뉴스』, 2006년 11월 23일.

1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2009.8.27),"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p. 20.

다. 북한당국은 장애자들의 사회 내 통합을 돕고 일반대중이 장애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장애자의 날인 6월 18일에 매년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며 이 행사에서는 2005년 7월에 활동을 시작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밝혔다.

위와 같이 북한당국은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와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모색,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소아마비, 맹인(시각장애인), 병어리(언어장애인), 곱추(척추장애인), 앓은뱅이(하반신장애인), 난쟁이, 신체일부 상실자 등의 장애인이 드물게 눈에 띄는 편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장애인 시설로 농아(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와 맹인(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와 재활센터가 있으며, 영예군인 공장을 비롯하여 맹인과 농아 등 일반 장애인을 위한 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곱추(척추장애인),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 등의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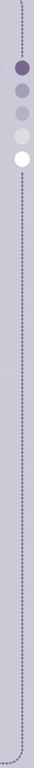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아동권협약 제2조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이 실제에 있어 완전하게 존중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19항).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수집하여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 및 계획된 국가 장애인 조사 등

장애아동을 보조하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하나 장애아동이 사실상 겪는 차별과 이들과 가족을 위한 공동체 기반 서비스가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42항). 아동권위원회는 2008~2010 장애인 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 집중을 포함시킬 것과 장애아 동의 교육권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북 한당국이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도 권고하 였다(43항).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1



남북억류자 실태

가. 6·25전쟁 남북억류자

6·25전쟁기간 납북된 남한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국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2,438명),¹ 1951년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의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2,514명),² 1952년 10월 정부에서 간행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³ 1953년 통계연감(84,532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 납치자 명부

1. 본 자료에는 피살(총 976명, 남 796명, 여 180명) 납치(총 2,438명, 남 2,345명, 여 93명), 행불(총 1,202명, 남 1,149명, 여 53명)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년월일, 피해유형, 피해장소, 약력, 주소 등 1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2. 전쟁 중인 1951년 결성된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한 명부로 대부분 서울지역출신 납북자의 인적사항(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작성된 다른 명부와는 달리, 총 17종의 직업(기타 포함)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납북된 주요 직업군은 반공단체인 청년단 및 민보단 442명, 실업계 391명, 정부요인 및 관공리 328명, 경찰관 및 형무관 209명, 은행가 및 회사원 209명)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p. 963.
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개한 본 자료에 의하면 피납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17,940명),⁴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 명단(7,034명),⁵ 1963년 국방부가 작성한 실향사민명부(11,700명)⁶들이 부분적으로 전쟁 납북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명부에 수록되어 있어, 전쟁 시기 납북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표 V-1〉 전쟁시기 납북자 규모⁷

구 분	작성주체	시기	인 원	존재 여부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0	2,438명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2	82,959명	○
6.25사변 피납치자	내무부 치안국	'52	(126,325명)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3	(84,532명)	×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54	17,940명	○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56	7,034명	○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63	11,700명	1권○ 2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내무부 치안국이 작성한 명부로 납치주체를 포함한 개별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6·25당시 주소)이 총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이 명부에서 납북자의 수가 대폭 축소된 원인은 강제 징집된 의용군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1952년 명단에 없던 사람이 본 명부에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6·25납북자의 규모가 1952년 명부에 나타난 82,959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6·25전쟁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실향사민신고서를 접수받아 피랍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출생지, 최종 현주소, 최종 직업(본직, 공직), 가족대표자(주소, 성명, 관계), 납치당한 장소 및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로부터 6·25전쟁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목적으로 가족들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나, 홍보부족으로 1952년 명부에 비해 규모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6. 1963년 1월 1일 국방부가 발간한 실향사민 명부(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 4개항목)는 군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상 납북자 명부로, 다른 명부에 비해 납북자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의용군 등 군사적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2만 명이 넘는 납북자가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현재까지 1권만을 발굴하여 수록된 인원은 11,700명이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p. 959.
7.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이미 발견된 명부를 기준으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중복자를 제외한 납북자 명단 96,013명의 명단을 분석하였으며, 납북당시 연령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2〉 전시 납북자 연령분포

연령 구분	10세 이하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이상	연령 미상	계
인원	338	376	20,409	51,436	14,773	5,456	1,675	746	804	96,013
비율	0.4	0.4	21.2	53.6	15.4	5.7	1.7	0.8	0.8	100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⁸에 따르면, 북한은 1946년 김일성 담화(7.31) '납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초기인 1950년 7월, 8월, 9월의 3개월 동안 대규모(88.2%)로 대한민국 국민을 납북하였다는 것이다.⁹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4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인구수에 비해서 납북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협의회는 '서울의 식량상황에 관하여(1950.7.17)(북한 7인군사위원회 제18호 결정서)'¹⁰와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강원 내 제3440호(1950.9.5)'¹¹라는 문건을 근거로 1950년 7월 초부터 서울시민납북사

8. <<http://www.kwafu.org>> 참조.

9. 김일성, 『김일성전집』 4권 (1946.7~1946.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66~69.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pp. 1114~1149에서 재인용.

10. "해방된 서울시민(로동자)들로서 공산, 광산, 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중략)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 시 체포하라,"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 사료집-16』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93), <<http://www.kwari.org>>.

11. 일본 기무라 미쓰히코 교수가 구소련 기밀문서에서 발견한 북한의 제18호 결정서 제3에는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과 기관의 필요 수량 신청에 응하여 북조선의 광공업 기업과 농촌에 50만 명의 주민을 시로부터 조직적으로 후송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최고 권력기구인 7인 군사위원회가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승엽)에게

진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치유형은 당시 북한군이 납북자들의 개인별 인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택에 직접 찾아와 납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납치장소는 자택(72.1%)과 자택인근(8.2%)에서 발생한 비율이 80.3%로 나타나, 당시 납북행위가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 납북자¹²의 대부분은 남성(98.1%)이었고, 납북자의 직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검찰간부, 국회의원, 언론인, 학생, 교수, 교원 등 지식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납북자 중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되었고, 이들 중 남자는 19명, 국적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었으며 6명이 성직자들이었다. 2007년 4월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해제 문서도 납북자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중요 인사들은 중국에 넘겨지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¹³

전쟁납북자들 중 귀환자는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 납북자 중 전쟁 이후 귀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북한체제에 불가피하게 적응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난 이후 탈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귀환 납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고연령이며 납북자 본인들이 북측가족들에게 전쟁납북자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951년 9월 1일 부산에서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납북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1954년 3월 1일 휴전협정에 따라 실향민 교환이 있었으나, 북한

보낸 문건이다. <<http://www.kwari.org>>.

12. 전쟁당시 납북자 유형은 월간조선사, 『6·25 납북자 82959명』 (서울: 월간조선사, 2003).

13. 1951년 8월 8일자 ‘만포진 포로에 대한 북한인들의 취급’ 보고서는 독립운동가인 박모씨가 1950년 9월 남측의 주요 인사 4,600명을 북한으로 집단 납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납북자가 10월 19일 만포진에 도착한 이후 대다수는 이곳 수용소에 수감됐으나 중요 인사들은 압록강너머로 이송돼 만주공안경찰에게 넘겨졌다고 기록했다.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은 외국인 19명만을 송환하고 납북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는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을 통한 가족송환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1956년 대한적십자사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7,034명의 납북자 신고를 접수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접수된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에 전달하고 북한적십자사와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57년 2월 26일 북한적십자사의 남북회담제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11월 7일 북한적십자사가 337명의 납북자 생존사실과 주소와 직업을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라는 제목으로 회신하여 왔다. 같은 해 12월 3일 북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월남 인사 14,132명의 행방조사를 요청하여 왔다.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회원들이 당시 납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던 휴전협정위원회를 3차례 방문하여 정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1960년 6월 30일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전쟁 시기 납북억류자의 문제는 남북 간 체제경쟁시기에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발생한 실종사유에 대해 월북과 납북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납북자의 ‘행방불명’이 가족 전체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에 이어 2008년 7월 23일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2010년 3월 2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2월 13에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 장관 등 정부위원(6명)과 전시납북자가족(3명), 민간위원(6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4년간 전국 시군구단위에서 납북피해신청을 접수하여 정부차원에서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⁴

전쟁납북자들의 문제는 2000년 11월 30일 ‘6·25사변납북자가족회’가 창립되고, 2001년 9월 6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로 개칭하면서 활발하게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동 단체는 2002년 3월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발굴하여, 이를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94,700명의 명부를 발간하였다. 또한 2005년 6월 납북자 명부를 수정·보완하여 동 단체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설립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납북사건목격자 증언을 채록하고, 이를 웹상으로도 공개하고 있다.¹⁵ 이러한 활동을 통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쟁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8년 8월 19일 납북자 문제가 “한국사회에서조차 여론화하기 어렵고 목격자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UCC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2006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권을 발간하고, 2009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권을 출판하였다.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한은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2005.6.24)에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공동보도문 3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6차 적십자회담(2005.8.23~2005.8.25)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9.13~2005.9.16)에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식 처음으로 전쟁납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4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

14_ 『매일경제』, 2010년 12월 13일.

15_ <<http://www.kwari.org>> 참조.

였지만, 납북당사자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이들 중 1명(이경찬)이 납북자(이경찬의 숙부)가 북한에서 형성한 가족들(숙모와 사촌동생)을 상봉하였다.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시에도 8명의 전쟁납북자 가족이 상봉신청을 하였으며, 북측이 1명(유정옥)의 부친(이봉우) 생존을 확인해 주었으나 2주일 후 다른 사람이라고 번복함으로써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봉을 신청한 8명 가족 모두 납북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 5월 제15차 이산가족 상봉시 전시 납북자 4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되었고, 1명 사망 확인, 3명 확인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사망 확인된 1가족이 북측가족을 상봉하였다. 201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어 6·25전쟁 납북억류자 가족의 5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¹⁶

나. 전후 납북억류자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최근 탈북하여 귀환한 8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517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 『내일신문』, 2010년 11월 4일.

17. 귀환 납북자 이재근에 따르면, 봉산 21호와 22호 선원 27명은 해주에서 평양으로 이관되어 어선이 간첩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건강하고 일정수준(고교종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부 7인을 선발하여 청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어부들은 귀환 조치하였다.

〈표 V-3〉 남북 및 억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어 부	KAL기	군·경	기 타	
					국내	해외
납 북	3,835	3,729	50	30	6	20
귀 환	3,318	3,271	39	-	-	8
억 류	517	458	11	30	6	12

출처: 통일부 남북피해자지원단

〈표 V-4〉 연도별 남북억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억류자 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1955	10	10	1973	8	430
1957	2	12	1974	30	460
1958	23	35	1975	28	488
1962	4	39	1977	4	492
1964	16	55	1978	4	496
1965	20	75	1980	1	497
1966	25	100	1985	3	500
1967	52	152	1987	13	513
1968	127	279	1992	1	514
1969	20	299	1995	1	515
1970	36	335	1999	1	516
1971	21	356	2000	1	517
1972	66	422			

출처: 통일부 남북피해자지원단

〈표 V-5〉 귀환 납북자 현황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이OO	1970.04.29	봉산22호 선원	2000.07.26
진OO	1967.04.12	천대1호 선원	2001.10.30
김OO	1973.11.24	대영호 기관장	2003.06.23
고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5.07.12
최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1.16
이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9.10
윤OO	1968.07.02	금용호 선원	2008.01.09
윤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9.02.26

출처: 통일부 납북피해지원단

북한당국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의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이후 총 3,721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63명을 돌려보내고, 8명이 자력으로 탈북 귀환하여 현재까지 458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납북어부들 중에는 선장이 주도하여 위장 납북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납북자들이 월북자로 간주되기도 하였던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1974년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수원 32호의 선원 14명은 납북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 구조하여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납북어선들의 경우 일부어부들이 기록 없이 승선하거나 승선자의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는 월북으로 처리되었던 군무원의 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납북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7급 군무원이던 조병욱은 1977년 10월 21일 경남 진해시 육군 제3정 비창에서 정비반장으로 일하다 2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조종사와 함께 월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민원제기로 인해 통일부가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군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따라

월북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1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옌지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함북 보위부 소속 공작원 4~5명과 중국 조선족 류○○ 등 4명 등 모두 8~9명의 납치전문 공작조에 의해 납북된 김동식 목사가 회령시 곡산공장(담배공장) 보위부장 ○○○에게 인계되었다. 피납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0년 11월 평양 만경대 초대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전향 및 협조를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다 각종 고문을 받았고, 폐쇄공포증과 영양실조 등으로 탈진상태에서 직장암 등이 악화되어 2001년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피납탈북인권연대 도희운 사무총장은 “외국의 정보 소식통을 통해 김 목사의 시신이 평양 상원리 소재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에 남파간첩 신문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납북억류자 김영남·홍진표·이명우·이민교·최승민 등 5명은 이전까지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김영남(당시 군산공고 재학)은 1978년 8월 5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홍진표(당시 천안상고 재학)·이명우(당시 천안농고 재학)는 1978년 8월 10일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이민교·최승민(당시 평택태광고 재학)은 1977년 8월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종되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 고교생으로서 방학 동안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북한으로 귀환하던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되었다.

귀환 납북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의 납북자관리카드

18. 『연합뉴스』, 2005년 1월 6일.

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생환 납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명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납북피해보상지원심의위원회의 피해위로금 심의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동 단체는 2005년 2월 1일 1971년과 1972년에 납북된 36명이 1974년 묘향산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으며, 2003년 귀환한 납북자 김○○는 1981년 원산에서의 3개월 재교육 시 정형래(오대양 62호), 김옥률, 박영중, 박양수(오대양 61호) 등을 만났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⁹ 2007년 12월 2일 납북자가족모임은 1972년 납북되었던 유봉호 선원 5명이 납북 5개월 뒤인 1972년 11월 9일 북한 모처에서 찍은 사진 등 사진 2점과 편지 2통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사진 뒷면에는 ‘1972.11.9 사회주의에로 진출하는 기념사진’이란 글과 ‘남정렬, 배민호, 리수석, 리원제, 김길정’이라고 쓰여 있다. 2008년에도 가족모임은 납북억류자들의 사진을 입수하여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1985년 강원도 원산에서 집단교육 기간 동안 함북 ‘나진혁명전적지’ 참관 기념사진에는 북한지도원 2명을 제외한 31명의 납북어부가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어부는 박시동(천왕호 선원)을 포함 23명(박영석, 정복식, 김용봉, 정철규, 최효길, 탁채용, 최영철, 윤중수, 이병기, 김의준, 김일만, 홍복동)인 것으로 알려졌다.²⁰ 귀환납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아래의 사진에서와 같이 북한억류 납북어부들을 정기적으로 집단 소집하여 사상교육과 평양 등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 『중앙일보』, 2005년 2월 3일; 원산시 송도원 소재 ‘장덕산 여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외사업부 62연락소)은 3층 규모의 본관 건물과 별도 건물(식당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북억류자들은 여기서 중앙당 파견 강사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납북자 ○○○은 62 연락소 사상교육 기간 동안 평양 등 북한유적지 견학(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만수대, 전승기념관, 만경대 고향집, 문화궁전, 지하철 등 시설물 견학, 집단체조 관람)을 3회 42일간에 참여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20. 『조선일보』, 2008년 5월 19일.

〈그림 V-1〉 남북자 사진



출처: 남북자가족모임 제공, 『중앙일보』, 2005년 2월 2일.

〈그림 V-2〉 남북자 사진



출처: 남북자가족모임 제공, 『조선일보』, 2008년 5월 19일.

2007년 11월 출범한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존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길용호 선원 14명(1966.1.22)과 남풍호 선원 6명(1967.12.21), 파월장병 2명, 무동력선 3명(1967.8.5), 육군 2사단(1962.7.14) 4명, 대한호(1968.1.11) 6명, 안흥호(1967.6.4), 진북호(1992.8.27), 덕성호(1968.7.12), 육군제3정비창(1967.10.12), 오대양 61호(1972.12.28) 각 1명을 포함 총 40명이 남북피해자로 인정 받게 되었다.

〈표 V-6〉 추가 확인된 납북역류자 명단

납북사건	납북년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육군2사단	1962.07.14	최제하	1939.03.04	경북 영양	육군 상병
육군제3정비창	1977.10.12	조병욱	1940.01.31	경남 진해	군무원
길용호	1966.01.22	박성만	1917.02.23	경남 통영	선장
"	"	김광섭	1918.10.09	"	기관장
"	"	양호근	1925.03.05	전남 완도	선원
"	"	정복식	1941.08.28	"	"
"	"	이덕환	1911.10.23	경남 통영	"
"	"	김두석	1931.01.19	경남 거제	"
"	"	남정식	1928.02.15	경남 산청	"
"	"	이생기	1919.12.	경남 남해	"
"	"	김경남	1935.	경남 통영	"
"	"	이수태	1935.	"	"
"	"	정의도	1938.08.10	부산 서구	"
"	"	서일용	1937.07.23	경북 영일	"
"	"	박장운	1937.07.18	경남 통영	"
"	"	박복금	1926.11.17	부산 영도	"
남풍호	1967.12.21	김영필	1935.05.18	강원 고성	기관장, 선주
"	"	백동현	1942.03.14	"	선원

납북사건	납북년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남풍호	1967.12.21	김승옥	1919.07.09	강원 고성	선원
"	"	이영준	1945.05.16	강원 양양	"
"	"	김봉래	1928.12.07	강원 고성	선장
"	"	최성문	1936.	"	선원
파월장병	1966.09.09	안학수	1943.09.23	경북 포항	육군 하사
무동력선	1967.08.05	배승윤	1929.02.10	인천 옹진	선주
"	"	배승구		"	선원
"	"	정철규	1943.05.05	"	"
"	"	안흥호	1967.06.04	"	"
"	"	황정순	1947.02.09	인천 옹진	"
파월장병	1965.11.03	박성렬	1943.10.19	충북 진천	병장
진복호	1992.08.27	이철진	1947.02.05	전남 신안	선주, 선장
덕성호	1968.07.12	이양진	1945.05.20	전남 신안	선원
오대양61호	1972.12.28	전옥표	1946.11.18	경남 거제	"
대한호	1968.01.11	장영찬	1938.02.23	강원 고성	선장
"	"	김구양	1933.	불상	기관장
"	"	김태순	1945.	불상	선원
"	"	윤영주	1933.10.20	강원 고성	"
"	"	이상기	1918.	불상	"
"	"	이국현	1943.12.29	광주 광산구	"
육군2사단	1962.07.14	우지원	1930.10.05	경남 창원	중위
"	"	이금섭	1934.07.19	충북 청원	상사
"	"	박기찬	1939.01.19	서울 영등포	병장

출처: 통일부 납북피해지원단

국제사면위원회(AI)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국제사면위원회(AI)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

(1994.8.11)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파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텐디스였던 성경희·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3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 납북억류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000년 6월에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 이재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어부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교육을 받은 후 대남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남간첩교육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²¹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면위원회(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사면위원회(AI)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21.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표 V-7〉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성명	입북년도	직업
이영훈	1992.04.	변호사 사무장
정락호	1991.07.	조광해운 선원
이재관	1989.12.	삼성전자 대리점 근무
조흥래	1992.08.	운동기구점 운영
최희창	1991.10.	조광해운 선원
이대식	1988.09.	파라과이 이민
신원식	1991.06.	美교량설계원
강광석	1992.12.	부동산 중개업
김성배	1983.05.	건설회사 임원
김순성	연도미상	서독 광부
이재환	1987.07.	재미유학생, 前민정당 이영욱의원 아들
최종석	1987.01.	동진 27호 납북선원
김원석	1990.02.	관광사대표
양철성	1988.09.	부동산 중개업
김성진	1984.09.	군인 이병
권오문		신원 미확인
조생구		신원 미확인
서학식		신원 미확인
박총신		신원 미확인
이찬수		신원 미확인
유재원		신원 미확인
김춘길		신원 미확인

출처: 『연합뉴스』, 1991년 1월 31일.

한편 북한당국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제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 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 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000.11.30~2000.12.2) 때에 평양에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1987.1.15) 동진호 선원 강희근과 제3차 상봉(2001.2.26~2001.2.28) 때에 역시 평양에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1969.12.11) KAL기 스튜어디스 성경희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거입북자’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납북억류자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2001년 초 북한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남측 후보자 200명의 재북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에서 1987년 납북된 이재환의 사망사실을 알려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납북자 가족단체는 북한당국에 대해 이재환의 사망 시기와 사망 원인을 밝히고 유해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002.9.13~2002.9.18)을 통해 납북(1968.4.17) 창영호 선원 정장백이 금강산에서 남측 어머니를 상봉하였다. 2003년에는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20~2.25),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6.27~7.2),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9.20~9.25)시, 납북(1972.12) 오대양 61호 선원 김태준, 납북(1967.5.23) 창성호 선원 윤경구, 납북(1987.1.15) 동진호 선원 김상섭이 각각 남측의 어머니를 상봉하였다.²² 2004년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3.29~4.3)시에 납북자 유성근이 남측의 형 유형근을 만났으며, 유성근은 납북 이후 “통일연구소

에서 20여 년간 연구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004.7.11~2004.7.16)에서도 남북자 3명이 남측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제12차 상봉(11.5~11.10)시 남북자 정일남이 가족들을 상봉하였다.

남북자가족모임이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남편 김철준이 1977~1978년에 납치된 한국인 고교생 5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정부에 신원확인을 요청하였다. 일본정부는 DNA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구미의 딸 김혜경이 1978년 선유도에서 납북된 김영남과의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고, 메구미 가족과 김영남 가족이 상봉하였다. 북한이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김영남을 포함시킴으로서, 김영남 모친과 누나가 김영남과 메구미의 딸을 상봉하게 되었다. 2006년 6월 29일 김영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납치도 자진월북도 아닌 대결시대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 입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당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이를 피해 바닷가에서 나무 쪽배를 탔다가 망망대해로 흘러 간 뒤 북측선박의 구조를 받아 북으로 가게 되었다고 입북과정을 설명하였다. 2000년 이래 17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에 전후 납북억류자 97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한 결과 15명 생존, 19명 사망, 63명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생존자 15명 중 14명이 남측가족과 상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어 상봉행사에 16가족 73명이 동반 참여하였다.

남북자가족모임은 2006년 7월 31일 납북 동진호선원(1987.1) 임국재가 세 차례 탈북을 시도하다, 청진 수성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납북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북한에 입국한

22.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주최 공청회, 2003년 12월 19일).

‘의거입북자’ 혹은 북한체류를 희망한 자라는 이유로, 납북억류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논의를 거부하여 왔다. 납북자문제는 ‘자국민 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가족들의 인권침해문제로서도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이다. 이러한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남북당국 간 협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북한당국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용어와 관련하여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실종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2005.6.24)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공동 보도문 3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6차 적십자회담(2005.8.23~2005.8.25)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9.13~2005.9.16)에서 남측은 시범생사확인사업 등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확인 대상을 군인, 민간인 구분 없이 ‘전쟁시기 행불자’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일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사확인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방식을 주장하였다. 즉 북한당국은 아직도 전후 납북억류자에 대한 생사확인에 대해서는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2.21~2006.2.23)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전후 납북자문제가 남북 간 공식 의제로 다루어

23. 『로동신문』(2008년 11월 29일)은 <빠라살포사태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라는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이 북한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질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납북자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납북자가족모임이 납북자의 명단을 대북전단에 담아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자 북한당국은 크게 반발하였다.²³ 2009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정부는 납북자문제 등 남북 간 인도주의사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전후 납북자 11명의 생사확인이 북측에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²⁴

2007년 4월 2일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납북피해자가 귀환하는 경우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인과 가족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이 2007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7년 11월 30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11년 2월 현재 25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및 보상금 심의를 결정하여 왔다.

〈표 V-8〉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단위: 건)

어부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상금	합계
	I-2정	KAL기	기타	소계			
377	11	11	29	428	8	12	448

출처: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

24. 『내일신문』, 2010년 11월 4일.

〈표 V-9〉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구분	신청(건)	지원 결정(건)	지원액(천원)	비 고
합계	448	401	13,869,499	지원액은 지급 결정액 기준임
피해위로금	428	392	12,273,575	지급인정 378건 지급액 0원 7건 불인정 7건
정착금· 주거지원금	8	8	1,528,320	정착금 1,017,767천 원 주거지원금 510,553천 원
보상금· 의료지원금	12	1	67,604	보상금 51,491천 원 의료지원금 16,113천 원 불인정 8건

출처: 통일부 남북피해자지원단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4만 1,971명이며, 이중 유가족 신고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2만 2,562명, 이들을 제외한 1만 9,409명으로 추정된다.²⁵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포로송환 협상에서 귀환하지 못한 대상자들로 정전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명이었으나,²⁶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실종자는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10〉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총인원	전사처리	실종자
41,971	22,562	19,409

출처: 국방부

25_ 정부는 1994년까지 유가족 신고 및 증언을 토대로 실종국군포로의 군적과 대조하고 이중등록자를 제외하는 등 수차례 행방불명자 심사과정을 거쳐 1998년 최종실종자 19,409명으로 규모를 산출하였다.

26_ 6·25전쟁 당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 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2,000명으로 추정하였다.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51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투 중 행방불명자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모든 미귀환 국군포로는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기준 국군포로 본인 80명, 가족이 211명에 이르고 있다.

〈표 V-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년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포로	1	1	4	2	9	6	6	5
가족	-	2	5	8	9	12	9	10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포로	14	11	7	4	6	3	1	80
가족	34	18	32	23	9	26	14	211

출처: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전쟁 시기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 집단배치 되어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 12일 발표된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²⁷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이 1951년 11월~1952년 4월 오후츠크 등 소련 극동항구로 이

27.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 여부 확인 및 유해 발굴,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만든 '미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조사활동 결과의 하나로 1993년 8월 26일, 작성한 것이다.

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⁸ 추크치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만 2천 명에 달하고 도로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 12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 문서 작성자를 비롯 국군포로 소련이송을 주장한 구소련 장성 강상호의 아들,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전 참전 고려인 10여 명, 귀환 국군포로, 러시아 체류 탈북자 100여 명의 증언,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국군포로 이송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²⁹을 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사실규명을 위해 구소련 강제수용소가 위치했던 시베리아 마가단지역을 방문조사하고, 6·25전쟁 중 미군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미·러 합동연구조사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용역에서 국군포로 소련 이송 관련 사실에 부합하는 탈북자의 증언을 일부 수집하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안화식, 우광윤,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³⁰ 무산탄광(리갑도, 강영호, 리희근),³¹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³² 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8_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29_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박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30_ NKHR2008000021 2008-09-23.

31_ NKHR2008000016 2008-09-02.

32_ NKHR2008000011 2008-08-12.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공민증을 받고 집단수용소에서 사회로 배치되었으나, 대부분이 집단수용소 시절 생활하였던 탄광에 배치받음으로써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출신성분 때문에 북한 생활과정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거주지역과 직장 선택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의 출신성분이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군포로들의 자녀들도 입당과 진학, 직장 선택에 차별을 받게 되었다. 국군포로들을 북한주민들은 ‘괴뢰군(포로병)’이라고 호칭하였다.³³

1990년대 이후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연로보장자에 해당하나,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사회서비스의 유료화 및 실질물가 폭등으로 인해 연로보장에 의존해서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경지역 거주자들의 탈북 증가 및 한국의 국군포로 귀환정책 등을 포함한 외부정보유입으로 일부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또한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송환활동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 입국한 국군포로가족은 국군포로와 동반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재북가족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국군포로 한만택이 탈북하여 한국입국을 시도하다가 중국에 체포되어 복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8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탈북 국군포로가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엔지 인민병원에 억류되기도 하였다. 국군포로들의 탈북증가에 관여하다가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³⁴

이제까지 2~18차 남북적십자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

33_ 위의 증언.

34_ 새별군 안원리 거주 고○○과 군보위부 원천지도원 황○○이 단속되어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6월 14일 서울에서 면담; 2006년 7월 온성군 삼봉구 엄○○이 국군포로를 넘겨주다 체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담.

로 126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9명 생존확인, 14명 사망확인, 93명 확인불가, 17명 상봉이 성사되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관련 26 가족(남북 총 119명)이 상봉에 참여하였다.³⁵

귀환한 국군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의거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9년 6월과 9월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베트남전 실종군인 안○○과 박○○을 국군포로에 추가하였다.

35_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서필환(82세)의 사망확인이 이루어졌고, 전사로 처리되었던 4명(이원직 77세, 이종렬 90세, 윤태영 79세, 방영원 81세)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가. 재외 탈북자 현황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 실태 파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이동경로인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합법적인 해외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³⁶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탈북자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었으며, 2000년 경에는 7만 5천 명~12만 5천 명 선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³⁷ 좋은벗들이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km 반

36_러시아 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 등을 이탈하여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탈북주민의 규모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다.

경에 있는 동북3성 농촌지역에 대한 중국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탈북자 규모가 5만 명 선인 것으로 발표하였다.³⁸ 2006년에는 동북삼성 서북쪽 오지 한족마을(약 2만 명)과 선양, 파렌, 칭따오 등 대도시 근교지역(약 3만 명)을 조사하여 탈북자 10만 명, 탈북자가 출산한 어린이들이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재추정하였다.³⁹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의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⁰ 이후 탈북자 체류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중국 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되어 2~4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되었다.⁴¹ 다만 중국내 탈북자들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의 한족 마을 혹은 대도시 지역체류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존스 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 코트랜드 로빈슨 교수는 2009년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여성,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각각 5,688명(최소 3,305~최대 9,109명), 4,737명(최소 2,741~최대 7,599명), 6,913명(최소 3,606~최대 11,063명) 선으로 추정하였다.⁴²

37.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m*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February, 2005).

38. 『연합뉴스』, 2005년 8월 21일.

39. 좋은벗들은 2006년 1월 국경주변 135개 마을을 표본조사하였고, 이들 마을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267명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 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계산하고, 당시 북한 여성 탈북자 규모 225,000명을 감안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가 49,500명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산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들이 있다. 탈북여성들이 강제송환 이후 재탈북 혹은 중국내 이동을 통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도 파악되고 있다.

40.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 (October, 2006).

41.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rch, 2008).

42. Courtland Robinson, "Population Esti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Migrants

1990년대 후반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동북삼성지역의 조선족 거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국 측의 단속이 강화되고 탈북자들의 현지어 습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족마을 및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⁴³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⁴⁴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당국에 의한 국경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2009년 이래 국가보위부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2010년에도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⁴⁵ 사상교양 강화,⁴⁶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 검열,⁴⁷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 탈북현상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기존 탈북자가족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⁴⁸

and Children Born to North Korean Women in Northeast China,” May, 2010. 통일연구원 자료회의, 2010.12.7. 본 조사는 동북3성의 무작위로 선정한 108개 지역에서 324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43.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0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0082지침을 변경지역 군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44. 국경지역통행증 발급을 위해 뇌물을 지급해야 하기는 하지만, 발급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77호 (2010.11.17).
45. 통일관(보위부, 보안서, 검찰 등)도 친인척 중 탈북자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 해임, 철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1호 (2010.1.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4호 (2010.3.2);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2010년 5월 호구조사와 함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중검열'을 실시한 이후 탈북자 가족들을 오지에 '추방촌'을 조성하여 강제추방하였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인민보안부가 전국 시군구역단위별로 '타격대'를 조직하여 탈북자 및 행불자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2010.8.16)하였다. NK지식인연대도 2010년 4월 지시에 따라 6월에 조직된 타격대가 2010년 무산군에서 열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2010.7.7)하였다.
46. 중앙당은 2010년 1월 27일에 2월을 국경연선 집중숙박 검열기간으로 지정하였다.(2010.1.27) 또한 탈북자 발생시 기업소 당비서와 행정책임자 등 상급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2호 (2010.2.18).
47. 좋은벗들에 따르면 2010년 초 국경연선지역에서는 친인척도 무단숙박이 신고되면 처벌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6호 (2010.1.19).
48. NKHR2011000026 2010-04-27: NK지식인연대도 북한 중앙당과 보위부가 6월 초부터 합

또한 탈북자들의 주요 한국 입국경로인 중국 윈난성 및 산둥성에 탈북자 체포조를 대거투입하였던 것으로 보도된다. 2010년 6월 4일 압록강에서 중국 단둥시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무역거래를 하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방북하여 북한 인민보안부와 ‘경찰물자 기증서’에 서명(2010.8.12)하고 국경지역 범죄 및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⁴⁹ 2010년 6월 자살로 위장하여 탈북한 여성이 강제송환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래 자살을 위장하여 탈북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경경비대에 ‘행불자 수색전담반’이 등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해상을 통한 탈북이 이루어지자, 국방위원회 지시로 어선 등록 등 운영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회가 특수기관(군부와 당 기관)과 수산부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위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함경북도회의에서 개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선정박장과 군부 및 당 연락소 등 특수기관들이 해안경비초소의 검열 없이 무단으로 출항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⁵⁰ 이와 같이 탈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 등 탈북(도강)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⁵¹ 또한 탈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국경수비대들이 도강자로부터 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⁵² 또한 탈북을 도와주는 군인 등 중개인들이 금품을 받고 사후 밀고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⁵³ 사전에 국경지

동으로 탈북협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십명을 체포하여 처벌하였다고 밝혔다.

49. 좋은벗들, 『오른손잡이』, 평성 국경경비사령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야시경 1,200개를 분배하여 사용 방법을 강습하여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4호 (2010.7.16).

50. NK지식인연대, 2009.10.1

51. 윤○○,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 (2010.6.14).

5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3호 (2010.7.14).

53. 국경경비총국사령부가 2010년 2월부터 비법월경단속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면서, 도강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상급단위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66호 (2010.9.15).

역 경비상황 등을 숙지한 후 단독으로 탈북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⁴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단속될 위험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탈북주민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조선족 및 한족 등 중국인들의 불법이주지역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이스라엘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여 왔다. 2005년 이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기 위해 태국에 밀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89명, 2006년 729명, 2007년 1,7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이에 따라 태국에 불법입국하다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이민국 감호소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농성도 이루어짐에 따라, 입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탈북자를 위장한 조선족 등 중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류주민이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로 망명신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근무지를 이탈한 북한주민, 자금력을 보유한 극소수 등을 제외하고는 서방국가 망명신청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국에 위장망명을 신청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감액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4. 황해남도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은 국경경비대 출신 제대군인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후 2008년 단독으로 탈북하였다. NKHR2011000028 2011-01-25.

55. 『미국의 소리방송』, 2008년 3월 26일.

나. 재외 탈북자 체류 유형

탈북사태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십여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체류실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국경지역 북한주민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아서 곧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친척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지 않은 북한주민들도 생존을 위해 무작정 국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들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인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거나 그들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서도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미혼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성들은 소개로 만나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있으나,⁵⁶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 강제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⁷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거생활

56_ NKHR2010000027 2010-11-26; NKHR2010000084 2010-03-30.

57_ NKHR2010000001 2010-05-25; NKHR2010000002 2010-08-10; NKHR2010000004 2010-05-25;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09 2010-08-10; NKHR2010000021 2010-10-12; NKHR2010000030 2010-11-23;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0000033 2010-11-09; NKHR2010000037 2010-11-16; NKHR2010000039 2010-11-16; NKHR2010000043 2010-11-02; NKHR2010000048 2010-07-27; NKHR2010000049 2010-11-30; NKHR2010000050 2010-07-13; NKHR2010000052 2010-06-29; NKHR2010000053 2010-06-29;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0000059 2010-11-30;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0000063 2010-05-18; NKHR2010000065 2010-10-12; NKHR2010000067 2010-04-27; NKHR2010000068 2010-04-27; NKHR2010000070 2010-04-27; NKHR2010000072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⁵⁸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여성이 매매형태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강을 넘은 북한 여성이 중국 내에서 남성과의 동거생활 이외의 다른 체류방식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중국 내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강을 넘은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체포위협성 등 자신들의 불가피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⁵⁹ 중국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⁶⁰ 또한 중국 남성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⁶¹ 일부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들은 중국호구를 취득한 것으

2010-10-19; NKHR2010000076 2010-04-20; NKHR2010000079 2010-04-20; NKHR2010000085 2010-04-06; NKHR2010000086 2010-06-22; NKHR2010000087 2010-08-03; NKHR2010000088 2010-08-03; NKHR2010000095 2010-03-23; NKHR2010000098 2010-03-23; NKHR201000002 2010-03-16; NKHR201000003 2010-03-16; NKHR201000005 2010-08-10; NKHR201000010 2010-06-08; NKHR201000015 2011-01-04; NKHR201000024 2010-08-31; NKHR201000008 2010-08-10; NKHR201000012 2010-12-07; NKHR201000020 2010-05-19; NKHR201000022 2010-06-24.

58_NKHR2010000060 2010-05-18.

59_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60_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0000063 2010-05-18; NKHR2010000095 2010-03-23; NKHR201000005 2010-08-10.

61_NKHR2010000001 2010-05-25; NKHR2010000002 2010-08-10; NKHR2010000004 2010-05-25;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09 2010-08-10; NKHR2010000030 2010-11-23;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0000033 2010-11-09; NKHR2010000037 2010-11-16; NKHR2010000048 2010-07-27; NKHR2010000049 2010-11-30; NKHR2010000050 2010-07-13; NKHR2010000052 2010-06-29;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0000059 2010-11-30;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0000063 2010-05-18; NKHR2010000065 2010-10-12; NKHR2010000067 2010-04-27; NKHR2010000070 2010-04-27; NKHR2010000076 2010-04-20; NKHR2010000087 2010-08-03; NKHR2010000088 2010-08-03; NKHR2010000095 2010-03-23; NKHR2010000102 2010-07-13; NKHR201000010 2010-06-08; NKHR201000012 2010-12-07; NKHR201000014 2011-01-04.

로 파악된다.⁶²

친척이 없이 무작정 넘어온 북한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체류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탈북주민들은 친척이나 조선족들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한족 등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주민들이 중국어를 익히고, 취업을 하는 등 중국 내에서의 적응능력을 높게 되는 경우에는 셋집을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중국 체류과정에서 마련한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등 나름대로 체류방식을 체득하게 되었다.⁶³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탈북여성이 중국 체류 중인 한국 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거남성이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혜택을 알고 중국체류 탈북여성에게 한국입국을 권유하여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족 동거남성과 위조 중국여권으로 한국 취업비자를 받아 동시에 입국하였다가 정착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0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던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을 서두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 국내입국자 중 일부는

62_ NKHR2010000001 2010-05-25; 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09 2010-08-10; NKHR2010000030 2010-11-23;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0000048 2010-07-27; NKHR2010000052 2010-06-29;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0000063 2010-05-18; NKHR2010000065 2010-10-12; NKHR2010000067 2010-04-27; NKHR2010000070 2010-04-27; NKHR2010000076 2010-04-20; NKHR2010000087 2010-08-03; NKHR2010000088 2010-08-03; NKHR2010000095 2010-03-23; NKHR2011000010 2010-06-08; NKHR2011000012 2010-12-07; NKHR2010000014 2010-10-05

63_ NKHR2011000030 2011-01-04.

중국체류 10년 이상을 근거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와 탈북자들의 농성으로 인해 2009년 1월 관련 법률 일부 재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⁶⁴ 이에 따라 중국 내 장기체류자들이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⁶⁵

다. 인신매매 유형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반인권을 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인신매매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다. 여기서 착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는 “매춘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밀입국매매(human smuggling)와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⁶⁶

6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2009년 1월 30일 신설.

65_NKHR2010000065 2010-10-12. 일부는 중국 내 출산아동 친부의 동의 없이 아이와 함께 입국하기도 하며, 특히 아동이 여아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남아인 경우 중국 부친 혹은 조부모의 양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으나, 여아인 경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보고서들은 이들 여성들의 강제결혼 혹은 매춘 등을 부각시키면서, 심각한 인신매매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알제리, 오만, 카타르 등 16개국과 같이 제3군으로 분류하면서, 상업적 성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성인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및 인신매매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와 기타 다른 형태의 불법밀입국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⁷

탈북자의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기별 유형변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의 처벌양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도강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외모가 좋은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유인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 1997~1998년에는 가족 중 한 명의 입이라도 더는 것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 전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북한주민의 불법국경이동과 관련 알선행위가 실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밀입국 알선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즉 중국으로의 불법이동을 주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북한주민들 자신이나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며, 이러한 경우에 북한알선자가 북한주민을 중국 조선족에게 인계하면서 금품을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66.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

67.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07).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images/KvT6tA2qzNuoSxuRtB5Qpw/TraffickingInPersonsReportNK.pdf>).

북한 내에서의 도강중개인들은 중국 조선족과의 밀접한 연계를 갖고, 북한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사례에서는 탈북경험이 있는 이웃주민이나 도강안내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웃이나 친척과 동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어 왔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중국 조선족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 도움을 준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상당수가 전문안내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하였다. 당시 단신으로 강을 건너왔으나 중국에서 별다른 친척이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북한주민들은 강변에서 이들의 불법 국경이동을 목격한 중국 조선족들이 호의를 보일 경우 이들을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주민을 다른 조선족들에게 인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 국경지역에서의 장기체류는 위험하니, 단속의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북한주민이 이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북한주민의 불법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쟁기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여자를 모아서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 강변에서 인계받는 사람, 그리고 일정장소에서 북한 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비용은 상승하게 되었다. 인신매매 조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여성을 납치하여 거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국

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까지 북한주민들이 거래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지역으로의 거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인신매매사례는 크게 근절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중국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주민들이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선족 등 중국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 여성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 등 중개인들은 탈북여성들을 한족남성들에게 넘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연락 하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다시 연계시키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은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결혼대상자 혹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잠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서 거래되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도강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강을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⁸ 탈북여성들이 국경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68. NKHR2010000031 2010-11-09.

소개되는 과정에서 중국 중개인들의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⁹

인신매매는 중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북한 여성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으로부터 인신매매자로 경계대상이 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변방대대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에도 중국 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적 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동거남성을 찾지 않게 된다. 중국 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하게 되면, 유산 혹은 출산을 동거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거남성이 북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출산을 선호하게 되며, 북한 여성에게 호구를 구입해줘 불법적인 신분을 면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호구구입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도 북한 여성과의 동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 여성 본인 및 가족들에게 도강 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여성 본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난 이후 스스로 생활방편으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실제 강제결혼과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중국에서 현지어를 못하는 북한 여성이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69. NKHR2011000003 2010-03-16. 중개인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한 상태에서 입국하였다.

안전한 체류를 위해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면서 강제결혼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즉 강제결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남성과 동거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족남성과의 강제결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상당 비율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 비율의 한족남성들은 북한 여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출산을 종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출산아동을 둔 탈북여성들도 중국 내 혹은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지 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동거를 수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즉 현지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중국조선족 혹은 한국 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증언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송금 혹은 북한 내 가족들의 국경이동 주선 등 적극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북한 여성이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어도, 재탈북하여 동거남성을 찾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⁷⁰ 일부에서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업주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명분하에 착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⁷¹ 북한 여성들을 활용하여 중국에

70_ NKHR2011000030 2011-01-04.

71_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4월 6일, 서울에서 면접.

서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² 또한 한국인 대상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⁷³

라.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북한은 1992년 헌법 제86조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하였다. 1987년 형법 제47조는 탈북을 조국반역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1999년 형법은 탈북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단순월경행위 즉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117조)고 규정하고, 공화국전복목적탈출행위는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⁴ 2004년 형법은 구형법의 단순월경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 자의 규정을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하였다.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를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72_NKHR2010000006 2010-05-25;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80 2010-06-15; NKHR2010000082 2010-06-22.

73_NKHR2011000029 2011-01-18.

74_한인섭, “2004년 북한 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통권 134호 (2005.3).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1992. 12.28 채택, 2005.7.26 수정보충)과 행정처벌법(2004.7.14 채택, 2008. 5.20 수정보충)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 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에는 위반자에 대해 직접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민보안단속법은 직접적으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되게 된다. 행정처벌법 제123조는 국경검사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 3개월이하 무보수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 <려행질서를 어긴 행위>는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부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⁷⁵

형법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의 처리원칙)는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탈북자 집단입국 이후 조국전선편지에서 남한입국 탈북자들이 납치유인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⁷⁶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 준 국경출입협

75. 행정처벌법 제17조는 노동교양, 무보수 교양을 5일 이상 6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것은 행정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6.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남조선당국자와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조죄(1999년 형법 제118조)를 ‘2년 이상 7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형법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제234조 비법국경출입협조죄)’으로 대폭완화하였다. 이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국경수비대 등이 북한주민의 ‘도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⁷⁷ 탈북자들은 비법월경죄 이외에도 외국화폐매매죄(제104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106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제107조), ‘력사유적 밀수, 밀매죄’(제198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은 공민이 국경지역여행증명서 없이 “출입국을 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출입국법 제45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에 대한 처벌에서 정치적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였다.

중국에서 단속된 북한주민들은 변방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보위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송환지역 노동단련대, 도집결소를 거쳐 지역기관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곧바로 지역기관(인민보안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지역기관으로 넘겨지게 되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면 처벌 없이 곧바로 석방되거나, 가정으로 보내져 매일 인민보안부에 출두하여 비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송환 이후 처벌절차는 최초 구금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최초 구금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경우 혹은 근거리인 경우에는 보다 단기간에 형이 결정되며, 형량도 본인의 가족들의 영향력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크게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⁷⁸ 그러나 본인의 거주지가 국경지역 보위부와 거리가 먼 경우, 지역 인민

77. 탈북 초기와는 달리 북한과 중국 양측의 국경경비대 등 간에 사전 약속을 통해 연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도강’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78. NKHR2009000023 2009-04-16.

보안부에 신변인수를 위해 출석하여야 하고, 이송과정에서의 도주우려, 운송수단의 확보, 가족에 대한 연락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의 수위도 2000년 이후에는 정치범수용소로 이관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단련대에서 1~6개월 정도의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송환 이후 최종 석방까지 구금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한국인 접촉 등을 근거로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던 사례들도 보고된다.⁷⁹ 그러나 2009년에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국경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실제 탈북 장소도 온성, 회령, 무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의 지역에서 이동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함경북도 국경단속이 강화되면서, 양강도 해산지역에서의 탈북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송환지역도 대부분 두만강 교두를 통해 온성, 회령, 무산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지나 단둥으로부터 이송되는 경우 신의주를 거치게 된다.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송환지역 국가보위부 구류장은 주로 온성, 무산, 회령, 신의주가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알몸수색,⁸⁰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를 거친 후 수용하게 된다. 구류장에서 남 녀는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몸수색과정에서 북

79.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1년 강제송환 이후 '인기부사람 접촉'이라고 기재하면 조기 석방해 준다는 회유에 요덕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어 2004년부터는 여자 소대장을 맡았다. 2004년 입소한 3년형의 수감자로는 조00(단천), 김00(은덕), 최00(혜산), 강00(무산)이 있었으며, 요덕 혁명화구역은 제0000군부대로 표시되었다. 탈북자를 수감하던 혁명화구역은 1999년에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8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80. NKHR2009000023 2009-04-16.

한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증언된다. 그러나 북한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자궁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시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개인 신상품들을 압수하였으나, 일정시점부터는 소지했던 물건을 석방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소지한 돈으로 조사과정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노동단련대 등에서의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담당 보위원을 설득하여 국경지역으로 동반이동하여 중국에서 동거하던 남성과 전화연락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련 법일꾼들에게 뇌물을 주고 조사 문건을 조작하여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국경지역 보위부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회수, 도강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국경지역의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뒤 ‘안전부 구류장’이나 국경지역의 ‘도집결소’로 보내진다.

북한의 형사소추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소 또는 사건기각을 위한 예심절차를 거쳐야 한다.⁸¹ 예심은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확정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불법국경이동에 대해서는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소지품 등이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검증 및 검진할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강의 목적과 중국 내에서의 행적에

81.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p. 180.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다른 송환자를 통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한다. 예심기간은 2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04년 형법에서 노동단련형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내로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경우 검사의 승인에 따라 구류를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의 예심은 취조하여 넘긴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종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탈북죄로 체포구금 되더라도, 형기 없이 풀려나가나 515상무로 넘겨지는 것으로 보인다.⁸²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106조)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류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⁸³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3년 10월 온성군 보위부에서 송환여성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태유도 및 영아방치 사망사태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강제송환자에 대한 처벌기록을 보면 1999년 이후에는 대부분 노동

82_북한이탈주민 장○○은 강제송환 이후 2006년 미성년자로 형기없이 풀려났다.

NKHR2011000003 2010-03-16.

83_NKHR2009000010 2009-02-26; NKHR2009000048 2009-07-30; NKHR2009000078 2009-12-10.

단련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노동단련형은 1999년 형법에는 규정되지 않고, 2004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2004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동단련형은 행정처벌법 등에 명시된 노동단련 및 무보수 노동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V-12〉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 본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시기	장소	내용	증언
2002.여름	해산시 체육대학/ 농림대학 중간 미공개시설	구타로 인한 유산유도	NKHR2011000005 2010.08.10
2003.1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임신 막달이라 분만허용, 아이양육	NKHR2011000011 2010.12.07
2004.1	길주군 보안서 구류장	김○○(31세), 약물투입	NKHR2010000102 2010.07.13
2004.4	신의주 집결소	낙태주사(본인)	NKHR2010000033 2010.11.09
2004.4	해산시 보위부	약물투입	NKHR2010000019 2010.10.12
2005.1	개천교회소	임신 8개월 여성, 병보석 석방	NKHR2011000008 2010.08.10
2005.5	청진 라남구역 농포도 집결소	5월 13일 임신 4개월 여성이 라남구역 어대진 농사일에 동원되었다가, 허약으로 일을 못하자 보안원이 발로 차고 구타, 5월 14일 수용자들이 보안원의 단체처벌을 두려워하여 강제로 일터로 데려갔으며, 총화시간에 비판, 5월 15일 일하러 갔다 점심시간에 쓰러져 사망	2007.03.10
2005.5	신의주 집결소	임신 8개월(26세, 무산), 임신초기(20세 여성) 병원낙태	2008.08.13
2005.5	평북도 보위부 집결소	중국에서 임신하여 송환된 여성이 구류장 출산하였으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아사망	2007.04.07

시기	장소	내용	증언
2005~6	○○구류장	병원낙태	NKHR2009000032 2009.05.19
2005.8	회령시 보위부	병원낙태	2008.06.12
2005.가을	청진도 집결소(농포)	30대 여성이 해산하였으나, 아이방치 사망	2007.05.19
2005.	온성 보위부	영아방치 살해	NKHR2009000019 2009.03.31
2006.1	경원(새별) 보위부	태아방치 사망	NKHR2010000034 2010.11.02
2006.1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	새별출신, 낙태(임신 24주 이후)	NKHR2011000003 2010.03.11
2006.	자강도 만포 보위부 구류장	자강도 출신 38세 여성 병원낙태	2008.07.08
2006.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	중국아이는 무조건 낙태 유도, 주○○은 조선남자와 동거했다고 우겨 무사	2008.09.02
2006.7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	34세 삼봉출신 여성을 발과 몽둥이로 구타, 유산	2008.07.02
2007.1	회령시 안전부 구류장	낙태수술	NKHR2010000092 2010.06.22
2007.4	함북도 집결소	병원낙태	NKHR2008000004 2008.07.17
2007.4	신의주 도 집결소	청진출신(30대중반) 병원 수술	NKHR2010000016 2010.10.05
2007.5	회령시 안전부 조사실	최○○(24세) 배를 구타하여 조산되었으나,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	2008.06.25
2007.7	회령시 보위부	병원낙태	NKHR2009000073 2009.12.02
2008.1	양강도 집결소(해산)	청진출신(20세), 병원수술	NKHR2010000043 2010.11.02
2008.3	신의주 도 집결소	병원수술	NKHR2010000089 2010.06.08

시기	장소	내용	증언
2008.7	함북도 집결소(청진)	단천출신(27세), 집결소장 태이방치 지시, 해산일 3일후부터 강제노동	NKHR2010000071 2010.11.09
2008.7.15.	자강도 집결소(만포)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사실 확인 - 병원낙태(본인)	NKHR2010000054 2010.06.22
2009.1	신의주 도 집결소	함흥출신(21세), 병원수술	NKHR2010000096 2010.06.22
2009.9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태이방치 질식사망	NKHR2010000031 2010.11.19
2010.5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	단천출신 허○○, 임신24주 이후 낙태수술, 수술 후 심한 구타를 당하였으며 영양실조(허약)	NKHR2010000031 2011.01.18.

1차 조사를 통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주지역 노동단련대에서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대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격한 생활관리를 실시하고 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기는 최초 구류시점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송환자들은 노동단련형이 선고된 이후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의 정확한 죄목과 형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지역 보위부와 인근 노동단련대에 이감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출신지역 안전원이 신속한 호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집결소의 수감자가 많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집결소의 수감기간도 지역호송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황해도 및 강원도 등 내륙지역 출신 탈북자의 경우 도집결소 수감이 장기화되면서 영양부족이나 불결한 수감시설로 인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⁸⁴

84_ NKHR2009000011 2009-03-03.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판결판정집행법 제18조 3항)”를 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면담결과를 보면,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중병(결핵, 탈수증, 허약 등) 혹은 전염병인 경우에는 형이 중지되고,⁸⁵ 거주지역의 안전원에게 호송해 가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7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경우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⁸⁶ 오히려 형 집행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 노동을 시키거나⁸⁷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산한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망하도록 유기하는 조치들을 안전원들이 직접하거나 혹은 조기석방을 명분으로 동료 수감자가 영아유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강제송환 탈북여성이 임신한 상태인 경우에도 탈북이전에 임신한 것이 입증되거나 남편이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와 다르게 낙태 혹은 영아살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⁸⁸ 극히 드문 경우로 2006년 강제 송환된 임신여성이 뇌물을 주고 혜산집결소에서 석방되기도 하였다.⁸⁹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송환되었을 경우 혹은 보위부, 도집결소 등 구류시설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의 남성가족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데려가도록 한다는 증언도 있다.⁹⁰

85_NKHR2011000019 2011-01-18.

86_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04년 4월 임신상태에서 강제송환되었으며, 보위부에서 6일 동안 조사후 가정으로 풀려났다.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당시 김정일 방침이 하달되어 소지한 물품도 압수하지 않고 다만 돈만 뺏은 것으로 증언하였다. NKHR2008000003 2008-07-09.

87_NKHR2009000025 2009-03-30.

88_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임신 8개월로 강제송환되었으나, 탈북이전 임신 사실이 입증되어 낙태 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NKHR2008000003 2008-07-09; 북한 남성의 아이인 경우에는 낙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NKHR2009000032 2009-05-19.

89_NKHR2009000023 2009-04-16.

노동단련형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해명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장기간 구금이 필요한 경우, 도단위 집결소에 재수용된다.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후, 해당 지역 보위부나 인민보안부으로 넘겨져 처벌을 받는다. 도강자에 대한 처벌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지역 노동단련대 혹은 인민보안부에 이관되어 수용되게 된다.

북한당국이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왔으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¹ 2004년 이후 탈북하다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탈북하려다 단속된 경우에는 한국행 기도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2004년 이후에도 지역 및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⁹² 2008년 2월 20일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에서 탈북자 본인 및 도강알선자 15명(남자 2명, 여자 13명)을 공개처형하였던 것으로 보고된다.⁹³ 탈북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문건에 기재된 형기보다 연장되는 사례도 발견된다.⁹⁴ 반면 실제 형기가 노동단련형에서 노동교화형으로 강화되었으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병보석으로 석방되거나 대사령으로 형기 집행도중에 석방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다.⁹⁵ 식량난으로 인해 국경지역 주민들

90. 북한이탈주민 000,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91. 2007년 3월 1일부터 탈북하려면 붙잡혔거나,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형기가 최고 5~7년까지 높아졌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4호 (2008.3.5).

92. 이는 송환족시 가족들이 담당기관에 뇌물을 공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형이 크게 경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8월 김○○ 등 4명은 탈북 재범이라는 명목으로 교화 3년형을 받아 함흥9교화소에 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9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14호 (2008.3.5).

94.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3년 10월 초 비법월경죄로 단련대 1년형을 선고받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11호(중산) 단련대에서 1년 4개월간 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북한이탈주민 000의 경우에도 본인과 자매가 2004년 3월 평북 의주군 읍에서 도강죄로 11호 교양소 1년형을 구형받았으나, 실제로는 1년 이상 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6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95.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5년 청도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개인(탈북자 출신 한국적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13명이 집단송환 되었으며, 교화 3년형을 받고 전거리교화소에서 대사로 1년

의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완화되었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새로운 추세이다. 즉 국경지역에 거주하던 탈북자 가족을 국경과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된다.⁹⁶ 아주 드물게는 공개재판으로 결정된 가족추방이 신소로 추방이 취소되기도 하나,⁹⁷ 대부분은 추방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언된다. 지역주민의 탈북으로 지역책임일꾼들이 철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⁹⁸ 따라서 지역책임자가 초기에 탈북자 가족이 뇌물을 공여하고 처벌완화를 요구할 경우 문건을 폐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3〉 탈북자 처벌 사례

시기	처벌 내용(지역)	증언자	특이사항
2003.11.12	노동단련대 1개월	NKHR2010000013 2010.09.14	-
2003.11.28	노동단련대 6개월(온성)	NKHR2011000011 2010.12.07	-

반만에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8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6년 부인과 탈북하여 부인이 체포되자 자진귀환하였으나, 가족 탈북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오로단련대에서 수감되었다가 6개월만에 대사로 석방되었다. 먼저 송환된 부인 000은 1년 6개월 형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사로 5개월만에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9월 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은 귀국자 출신으로 한국기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하여 기본조사 문건을 태우고 노동단련형(4개월)을 받아, 택강 업무(단련대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데려오는 업무를 맡았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7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96_ 2004년 4월 온성군 온탄구에서 강00 도강으로 가족추방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회령시 계림동 한00·김00 가족추방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7월 8일, 서울에서 면접; 2007년 11월 김00의 한국행 기도로 본인은 교화형에 처해지고 가족은 온성에서 함남 장진으로 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7월 2일, 서울에서 면접; 2004년 무산읍에서 20~30세대의 도강자 가족이 강원도로 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6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2004년 8월 김00의 도강으로 가족이 함북 회령시 세천군에서 함남 농촌지역으로 추방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97_ 2005년 1월 탈북을 시도하다 신의주에서 공개재판을 받아, 가족추방이 내려졌으나 신소로 추방을 면하였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0월 21일, 서울에서 면접.

98_ NKHR2008000011 2008-08-12.

시기	처벌 내용(지역)	증언자	특이사항
2004.6.1	노동교양 6개월(회령)	NKHR2010000010 2010.09.14	-
2004.12.18	노동단련형 2년(증산)	NKHR2010000102 2010.09.14	1년 대사(감형)
2005.1	노동교화형 9년(회령)	NKHR2011000021 2010.06.07	2차 송환, 한국행 기도, 대사 2번으로 5년 감형 (실제 4년 수감)
2005.1	노동교화형 8년(평양)	NKHR2011000022 2010.06.24	형산리교화소
2005.6	노동교화형 2년(개천)	NKHR2010000045 2010.09.07	한국행 기도
2005.7	구호소 3일(온성)	NKHR2010000077 2010.06.01	미성년자(14세)
2006.1	노동단련형 2년 (회령 성단련대)	NKHR2010000053 2010.06.29	-
2006.3	석방	NKHR2011000003 2010.03.16	미성년자(16세)
2006.5	노동교화형(증산)	NKHR2010000098 2010.03.23	7개월 수감
2006.8.6	노동단련대 3개월(온성)	NKHR2010000051 2010.07.13	-
2006.11	노동교화형 3년 (회령 전거리)	NKHR2010000010 2010.09.14	2차 송환
2007.1.15	노동단련형 6개월(온성)	NKHR2011000020 2010.05.19	구류장 3개월, 실제 단련대 수감되지 않음, 재판
2007.5	노동단련형 6개월(회령)	NKHR2010000092 2010.06.22	-
2007.10.26	노동단련형 1년 6개월 (증산)	NKHR2010000095 2010.03.23	성단련대에 수감되어야 하나, 구역단련대 이송
2007.11.13	교화형 2년 6개월	김○○	6차 송환
2007.12	노동단련대 1개월(해산사)	NKHR2010000082 2010.06.22	-

시기	처벌 내용(지역)	증언자	특이사항
2008.3	석방	NKHR2010000071 2010.11.09	고령(67세), 뇌물 지급후 석방
2008.3	노동단련형 6개월	NKHR2011000018 2011.1.18	자발적 귀환
2008.3	노동단련형 1년(혜산)	NKHR2010000089 2010.06.08	-
2008.3.14	노동단련대 6개월(혜산)	NKHR2011000018 2011.01.18	-
2008.5.15	노동교화형	김○○	도주
2008.5.20	특수감옥(‘강철 3’) 5개월(청진 신암구역)	NKHR2011000013 2010.06.08	-
2008.7.2	도집결소 2개월(만포)	NKHR2010000054 2010.06.22	-
2008.7	노동단련대 1개월(온성)	NKHR2010000086 2010.06.22	-
2008.8.18	도집결소(농포)	NKHR2010000007 2010.03.16	도주
2009.2.1	노동단련대 6개월 (후창군)	NKHR2010000017 2010.10.05	-
2009.2.13	노동단련대 5개월	NKHR2010000043 2010.11.02	2차 송환
2009.7.18	노동단련대 6개월	NKHR2010000021 2010.10.12	실제구금 20일
2009.8.5	도집결소 1개월	NKHR2010000067 2010.04.27	2차 송환
2009.8.20	노동단련대 2개월(혜산)	NKHR2010000097 2010.06.15	-
2010.5.28	도집결소 구류 1개월 10일(혜산)	NKHR2011000018 2011.01.18	2차 송환
2010.3.18	구금 중 조기퇴소(뇌물)	허○○	6차 송환

〈표 V-14〉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 강제추방 사례

시기	지역	증언자	특이 사항
2004.1	무산 → 단천	NKHR2010000028 2010.11.16	-
2005.1	회령시 → 원산리	NKHR2010000033 2010.11.09	-
2005.1	해산 → 풍서군	NKHR2010000062 2010.10.12	탈북 2회 이상 가족전체
2005.1	무산 주초구 →	NKHR2010000064 2010.05.11	황○○
2005.1	함북 은덕군 → 함북 어랑군	NKHR2010000022 2010.10.19	-
2005.1.10	회령시 → 함남 수동구	NKHR2010000026 2010.10.26	10세대 동시 추방 (남궁○, 김○○, 허○○ 외)
2005.8	무산 → 함남 덕성군 상리리(골안)	NKHR2010000041	중앙검열 전○○, 양○○ 가족 2명 탈북
2006.1	무산읍 → 무산군 오령리	NKHR2010000044	
2006.1	온성군 풍인구 → 평남	NKHR2010000077	4명
2008.3	회령시 → 회령 공심	NKHR2010000069	공개재판, 리○○
2009.1	해산시 위연동 → 양강도 삼수군	NKHR2010000089	○○별
2009.여름	무산군 강선구 → 오봉리	NKHR2010000041	-
2009.여름	회령시 강안동 →	NKHR2010000101	탈북자 4명

마.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서,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였다. 북 한 여성을 중국에 매매한 개인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인신 매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지속하였다.

〈표 V-15〉 인신매매관련 처벌기록

처벌 시기	처벌형태	처벌 장소	인신매매범 신상
2004.1	공개처형	함북 회령 장마당	남자 3명 NKHR2010000006 2010.05.25
2005.	공개처형	함북 유선 버력산	한○○ (29세, 남성, 회령, 교도대 군인)
2005.1	공개재판, 인민보안서 처형	무산광산회관	남녀 각 1명
2005.1	공개처형	회령시 장마당	6명(국경경비대 포함) NKHR2010000053 2010.06.29
2005.1	교회형(11년), 강제주방	동중 오로교회소 회령시 → 함남 수동구	본인, 가족 NKHR2010000026 2010.10.26
2005.5	공개처형, 교회 종신형	무산읍	리○○(73년생, 남성, 무산 강선구) 리○○(47년생, 여성, 무산읍)
2005.여름	공개처형	해산시 송봉2동 발공장	남자 1명 NKHR2011000005 2010.08.10
2005.8	교회형(11년)	함북 온성	유○○(39세, 온성군 종성)
2005.8	교회형(1년 6개월)	함북 온성	김○○(52세, 도보위부 가족)
2005.10	군중심판 후 총살	온성단련대	이○○(37세, 주운)
2005.11	공개처형	청진 포항구역	여성 1명
2005.11	교회형	청진 포항구역	여성 2명
2006.4	비밀처형	무산 구류장	-
2006.8	공개처형	함북 온성군 남산리	김○○(55세, 온성군 창평리)
2007.4	공개처형	회령시 강안장마당	NKHR2010000013 2010.09.14
2008.5	공개처형	해산시	한○○(해산시) NKHR2009000023 2009.04.16

처벌 시기	처벌형태	처벌 장소	인신매매범 신상
2008.여름	공개처형	해산시 봉흥중학교 뒤산	남자 2명 NKHR2010000097 2010.06.15
2009.7	공개처형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	남자 5명, 여자 3명 NKHR2010000069 2010.10.26
2009.가을	공개처형	무산군 강변쓰레기장	남자 1명 NKHR2010000011 2010.09.14

〈표 V-15〉에서와 같이,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해 공개처형과 같은 극형을 실시하였다. 물론 단순 도강안내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와 국경지역에서 마약 및 골동품 밀매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산, 회령, 청진, 온성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도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나름대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처형의 빈도로 볼 때, 1998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 관여자는 공개처형의 대상으로 규정될 만큼 북한당국은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중앙검열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행불자로 취급하던 경우도 적발하여 가족들(부모 및 형제자매)을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⁹⁹ 2010년도에

99_2007년 12월 27일 해산시 비사그루빠 총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행불자와 인신매매 관련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도 국내입국한 딸을 ‘팔아먹었다’는 사유로 2008년 1월 양강도 갑산군 탄광지역으로 추방되었다. NKHR2008000020 2008-09-17.

도 탈북자의 가족을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하여 강제추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39명,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는 1,89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1,383명이 입국하여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등 현지국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국내입국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6년 2,019명, 2007년 2,553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이 입국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입국자가 다소 감소하여 2,423명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도에도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혹은 북한에 체류하던 가족이 입국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¹⁰⁰ 중국 내 외교공관 및 관련시설을 활용한 기획입국 시도는 2004년 이후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을 통한 국내입국 대기 시간이 최대 2년여까지 장기화되면서, 태국 등 동남아국가를 통한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10년 국내입국자중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0%에 다다르고 있다.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에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추세와 동일하게 여성 단독 입국비율(75%)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

¹⁰⁰ 가족동반 입국자의 비율은 2009년 12%에서 2010년 상반기 40%로 증가하였으며, 이미 한 국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비율은 2009년 23%에서 40%로 증가하였다.

(85%)이고,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95%)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전마선 등을 이용해 해상으로 입국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이미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2009년 이래 2010년에 지속적인 특성으로는 한국에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중개인 역할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 출신 입국 중개인의 상당수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입국 중개인 수수료는 대개 한화 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입국 중개인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개인 간의 유치경쟁 등이 나타나 일부 중개인은 탈북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한족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입국을 설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¹

가족단위의 탈북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시킨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 남겨 둔 자녀와 부모를 데려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해졌다. 고위 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 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각

101. 중국 오지에 위치한 한족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한국입국관련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지역에서는 중국 내 탈북여성 보호 역할을 하는 교회 관계자들과 입국중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된다. 윤○○,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 (2010.6.14).

층을 망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과 정착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등 제3국으로 재이동하여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밀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하다 재탈출하여 국내입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2010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전국 하나센터 배치
- 1.9 한국교육개발원산하 탈북청소년지원센터, 교사출신 탈북자 양성 프로그램 추진
- 1.11~14 로버트 킹(Robert R. King) 북한인권특사 방한
- 1.12 중국 정부, 베트남 국경서 잡힌 탈북자 5명 강제복송
- 1.12 프리덤하우스 2010년 보고서, 2010 북한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 국가그룹 포함
- 1.14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북한 개성지구 사랑의 연탄 10만 장 전달
- 1.14 정부, 대북물자 반출 승인
- 1.20 정부, 북한 옥수수 1만 톤 지원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 결정
- 1.21 국가인권위원회, ‘남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존 여부를 북한이 발표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의 진정 모두 기각
- 1.21 휴먼라이츠워치 2010 세계인권보고서, “북한인권 상황 끔찍”
- 2.4 미국 민주주의재단(NED)·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 공동 주최
- 2.10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이의제기
- 2.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안」 통과(주요내용: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 기구 설치 및 대북인권단체 지원)
- 2.18 대한변호사협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북한인권법안」 수정 권고 성명 발표

- 2.22 정부, 북한에 신종인플루엔자 손 소독제 지원
- 2.22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결과 인용, 여성인권침해 고려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시행 필요성 발표
- 2.26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제2차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개최
- 2.27 민족사랑나눔, 8억 3천만 원 상당 추동의류 대북지원

- 3.2 국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가결
- 3.9 북한 벌목공 2명,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진입 미국 망명 요구
- 3.10 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
- 3.11 미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북한의 인권상황 여전히 개탄”
- 3.17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 3.18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 채택
- 3.24 태국 경찰, 탈북자 16명 체포
- 3.25 미 의회, 「탈북고아입양법」 발의
- 3.25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13차 회의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3.26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10. 9. 27 발효)
- 3.30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북한 국가인권보고서(UPR) 평가 토론회 개최

- 4.6 구호단체 JTS, 북한 어린이 지원 물품 선적식 개최
- 4.7 유럽의회,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4.17 국경없는인권(HRWF) 주최, 유럽의회서 영화 '김정일리아' 상영
- 4.25~5.1 미국 북한자유연합(NKFC), 제7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 (서울)
- 4.27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결서 발표
- 4.29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2010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 북한을 종교자유탄압 특별우려국(CPC)으로 지목
- 4.30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을 "공포의 국가(State of Fear)"로 규정
- 4.30 프리덤하우스, 북한 언론자유 평가 보고서 발표

- 5.19 통일부, 정부부처 대북지원 보류 요청
- 5.27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5.31 정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 산하 설치 합의

- 6.4 국방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6.9 통일부,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첫 북한 영·유아 지원 승인
- 6.14 (사)열린북한·국회인권포럼·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 반인도·반평화 범죄 중단 촉구 국제회의 개최
- 6.14 미 국무부 '2010년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2003년부터 8년 연속 북한을 최하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

- 6.15~24 통일부·대한적십자사, '2010 상반기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총 3회)
- 6.16 '유럽 조선인총연합회' 출범(영국 런던)
- 6.18 제14차 유엔 인권이사회,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임으로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前)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 6.22 포린폴리시(FP), 최악의 독재자 세계 1위에 김정일 선정
- 6.24 통일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 신청 대북 말라리아 방역 지원물자 반출 허용
- 6.2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6·25전쟁 참전용사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가결
- 6.26 북한주민 2명, 무동력 목선인 전마선타고 동해상(속초 동쪽 40Km 해상) 귀순
- 7.2 통일부, 북한 취약계층 지원위한 물품 반출 승인
- 7.6 통일부-현대차미소금융재단, 북한이탈주민 창업자금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7.8 유럽의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7.13 국제형사재판소(ICC), 한국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발장 접수
- 7.13~14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 연합(KCC), 북한인권 개선 위한 햇불대회 개최(미국 워싱턴 D.C.)
- 7.21 통일부-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8.3 대북지원단체 함께나누는세상·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평화민들레, 북한우유보내기 희망 출항식 행사 개최

- 8.12 중국정부, 북한에 경찰장비 지원 서명식
- 8.13 통일부,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지원 단체 첫 방북 승인
- 8.19~22 (사)북한인권시민연합·한보이스(Han Voice), 제10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캐나다 토론토)
- 8.25 제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북한 인권개선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8.27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前) 미국 대통령, 석방된 아이 잘론 말리 고클(Aijalon Mahli Gomes)와 귀국

- 9.2 미국 정부, 북한 홍수 구호품 제공용 의약품 구매자금 75만 달러 지원
- 9.8 국가인권위원회, 제7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미국 워싱턴 피터슨경제연구소)
- 9.10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137개 시민단체 참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 9.14 통일부, 6·25 납북자 피해신청 접수
- 9.17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개성)
- 9.23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탈북자현황 청문회 개최
- 9.25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서 인권억압국가로 북한 지목
- 9.29 통일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에 남북협력기금 86억 원 지원

- 10.1 남북적십자 3차 실무 접촉, 이산가족 상봉 일정 및 장소 합의
- 10.5 통일부 ‘납북자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미귀환 납북자 517명 집계

- 10.6 창원지법 제1행정부, 월북 오인 납북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 10.10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전 노동당 비서) 사망
- 10.18 전 세계 30여 개국 대표 참석, 북한 등 인권 취약국들의 문제 관련 국제회의 개최(브라질 상파울로)
- 10.19 국경없는 기자회(RSF), 북한을 중국·시리아 등과 함께 '세계10대 언론탄압국가' 지목
- 10.20 유엔 연례 보고서, "북한인권 상황 악화 지속"
- 10.21 북한민주화네트워크·세종연구소·NED, 2010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미국 워싱턴 D.C.)
- 10.21 에머슨퍼시픽그룹·(사)평화3000, 수해지원용 밀가루 100톤 북한 전달
- 10.29 러시아 별목공 출신 탈북자, 한국 영사관 진입
- 10.29 통일부, 탈북자 의료급여 5년간 보장
- 10.30~11.5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
- 11.11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인권 토론회 개최
- 11.15 통일부, 국내입국 탈북자 2만 명 돌파
- 11.18 제6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및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 11.21 유엔총회, 북한 인권침해 비난 결의안 채택
- 11.22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11.2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범식 개최
- 11.23 통일부, 연평도 도발로 남북 적십자회담 무기한 연기
- 11.24 통일부, 연평도 도발로 대북 수해지원 유보
- 11.25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연평도 포격 반인도적 행위로 비판

- 11.25 한기총,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 식량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중단 선언

- 12.6 국제형사재판소(ICC),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침몰사건을 ICC 관할대상인 전쟁범죄에 해당여부 예비조사 착수

- 12.10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무산

- 12.13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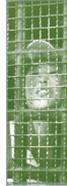
- 12.13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출범회의 개최 및 공식 활동 착수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총 52명)

날짜	대상자	명수	장소	죄목
2009년 12월	함북 남양 국경경비대 소대장	1명	함북 남양	○ 마약밀매, 기밀누출 ○ 인신매매
	시위자(名·性別미상)	2명	함북 함흥	○ 화폐개혁 관련 시위
	시위자(名·性別미상)	2명	함북 청진	○ 화폐개혁 관련 시위
	일반범죄자 (남 8명, 여 2명)	10명	평양시 형제산구역 인근공터	○ 강도·간간·소매치기· 매춘 등
1월	함북 연사 국경경비대원	1명	함북 연사	○ 일가족 6명 탈북 지원
	함북 함흥 군수공장 노동자(남)	1명	함북 함흥	○ 재남 탈북친구에게 휴대폰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2월	재북화교(名·性別미상)	2명	함북 청진	○ 내부정보 유출 혐의
3월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및 리태일 부부장	2명	평양시 강건군관학교	○ 화폐개혁 실패책임 ○ 한국과 연계한 간첩혐의
	리기웅(38세, 남)· 오종일(24세, 남)	2명	평양시 낙랑구역 인근공터	○ 신권화폐 37만 6천원 위조·유통
	김승필 중앙은행 양강도지점 지배인(남)	1명	양강도 혜산	○ 대규모 횡령혐의 ○ 6명의 여자와 불륜관계
4월	함북 회령 국경경비대 소대장	1명	함북 회령 신암구역 사격장	○ 인신매매, 탈북목인 ○ 국가·군사비밀 유출
	소매치기 일당	17명	평양시	○ 소매치기 범조직 결성 ○ 김정일 비난
5월	평남 평성시 지하교인 (名·性別미상)	3명	평남 평성시 구월동	○ 기독교 전파
6월	일반범죄자 (名·性別미상)	3명	함북 온성	○ 살인죄 2명 ○ 인신매매 1명
7월	함북 회령 양정사업소 노동자(25세, 남) 및 남동생	2명	함북 회령시 종합경기장	○ 탈북자 여동생 통화 적발 ○ 보위부원 살해
	함북 청진 주민 (名·性別미상)	2명	함북 청진시 청년공원	○ 김정일 형상 패러디 ○ 화폐개혁불만 삐라 살포 * 동조자 3명은 무기징역

부록 2. 최근 5년간 공개처형된 주요인물

성명·나이	직책	주요 경력 및 공개처형 경위
오문혁 (40대 중반)	능라888 무역회사 함북 연사군 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통나무 무역 등으로 외화벌이 사업 수행 ○ 2007년 7월경 지나친 벌목에 따른 산림파괴, 김정일 구호목을 포함한 무차별 목재 밀매 혐의 등으로 함북 연사군 공설 운동장에서 처형
전철수 (57년생)	동양무역 신민주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7월경 비사회주의의 현상 집중검열시 외화환령, 금속 물자 밀매, 한국 연계 간첩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평북 영주군 인근 사격장에서 처형
차인건 (40대 중반)	장생무역 (군소속)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철 전(前)인민무력부장의 지원으로 장생무역 사장 승진 ○ 2008년 8월경 군 산하 무역회사 집중 검열시 부패혐의로 구속된 후 비자금 형성, 외화불법 은닉죄로 처형
김용삼 (41년생)	전 철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의회 대의원(82.2)·철도상(98.8~08.11)· 개천철도국 국장(08.11~09.9) 등 역임 ○ 2008년 11월 국제열차 지연사고 등으로 철도상에서 해임되어 개천철도국장으로 좌천되었다가, 2009년 9월경 용천역 폭발(04.4)시 비밀누설 등 간첩혐의로 처형
서남신 (30년생)	철도성 제1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성 운수국장(61년)·철도성 제1부상 (05.12~09.4) 등 철도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기술관료 ○ 2009년 9월경 용천역 폭발(04.4)시 비밀누설 등 간첩혐의로 김용삼 전철도상과 함께 처형
박남기 (34년생)	당 계획재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공업성 부상(72.3)·국가계획위원장(98.3)· 당계획재정부장(05.7~10.1)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주도 ○ 화폐개혁에 따른 부작용 등 혼란이 심화되자 2010년 3월 화폐개혁 실패, 지주이들 출신으로 한국연계 간첩행위 혐의 등을 이유로 평양시 강건군관학교에서 처형
리태일 (34년생)	당 계획재정부 부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대초부터 국가계획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박남기의 천거로 당계획재정부 부부장에 기용 ○ 금년 3월 화폐개혁 실패책임 등으로 박남기 당계획재정 부장과 함께 평양시 강건군관학교에서 처형



2011



북한인권백서

KINU 통일연구원



9 788984 796003 93340
ISBN 978-89-8479-600-3